

발 간 등 록 번 호

57-6310000-000794-10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새로만드는 위대한 울산

202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



이 보고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1. 1.~12. 31.)
위원회 운영상황을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발간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2023년 한해 활동한 운영성과와 시민 고충 결정 사례를 담은 운영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23년에는 시민의 고충을 보다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하여 따뜻한 시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들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여 위원회 역할과 고충민원 처리 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앙정부의 고충민원 교육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정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행정기관으로부터 야기되는 다양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 시민의 권익기구로서 본분을 다하고, 행정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시청은 물론 구·군, 유관기관 등에도 배부해 시민고충 사례 해결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울산시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CONTENTS

I. 총평 9

II. 위원회 운영 현황

1. 2023년 주요 활동	13
2. 위원회 구성 현황	14
3. 위원 자격 및 현황	15
4. 위원회 직무권한 및 기능	16
5. 고충민원 처리절차	19

III. 위원회 운영 성과

1. 고충민원 해소율 향상, 처리기간 단축으로 시민만족도 제고	29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체계 구축·확립	29
3.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 강화	30
4. 옴부즈만 역량강화 및 국내·외 권익구제기관과 교류·협력	30
5. 고충민원 실적 제고 노력	30

IV. 고충민원 처리현황

1. 고충민원 처리실적	33
2. 주요 처리실적	39

V. 기타 활동 분야 실적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상담실 운영	55
2. 현장 중심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56
3. 권익구제기구로서 대외활동을 통한 위상제고	60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강화	61

VI. 주요 고충민원 처리사례

1. 시정권고	65
2. 의견표명	69
3. 합의·조정	119
4. 조사중 해결	142

202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





I.

총평

1 총평

1. 고충민원 해소율 향상, 처리기간 단축으로 시민만족도 제고

- 민선 8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재편하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까지 126건을 접수하여 41건 해결, 해소율 32.5%를 달성하여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
- 2023년 고충민원 처리기간은 평균 24일로 기존 43일 대비 19일 단축, 신속한 처리로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체계 구축·확립

- 2022년 9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개편하여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 및 조사체계를 구축·확립하여 운영
 - 직접조사 과정에 합동 현장간담회·3자간 협의·조정 단계 추가로 고충민원 해결률 제고

3.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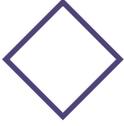
- 현장 중심의 옴부즈만 서비스로 접근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고충상담으로 시민에게 든든한 고충해결사로 자리매김
 - 구·군별, 분기별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 고충상담소 운영 : 총 6회, 79건 상담·처리

4. 옴부즈만 역량강화 및 국내·외 권익구제기관과 교류·협력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를 통한 고충민원 처리기법 교육 2회 실시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및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선진 권익구제기관과의 교류·협력, 세계옴부즈만협회 정회원 활동으로 국제 위상을 제고하고 발전방안을 적극 모색

5. 고충민원 실적 제고 노력

- 2023년 고충민원 접수·처리는 93건(직접조사 59)으로 2022년보다는 19%정도 증가하였으나, 그간의 실적과 비교하면 다소 저조
-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 등 현장 상담을 강화하여 고충민원 실적 제고 노력



II.

위원회 운영 현황

1. 2023년 주요 활동
2. 위원회 구성 현황
3. 위원 자격 및 현황
4. 위원회 직무권한 및 기능
5. 고충민원 처리절차

1 2023년 주요 활동

1월

1. 27. 민선8기 시정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처리교육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현황

2월

2. 3. 울산·경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3월

3. 29. 제1회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개최
(동구 전하2동)

5월

5. 15. ~ 5. 18. 옴부즈맨 해외(일본) 선진도시 견학

6월

6. 8. 제2회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개최
(울주군 언양읍)

9월

9. 18. 제3회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개최
(북구 농소2동)
9. 25. ~ 9. 26. 2023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강릉)

10월

10. 4. 시민고충처리위원 2명 사직
10. 18. 국민신문고 · 고충민원 담당자 워크숍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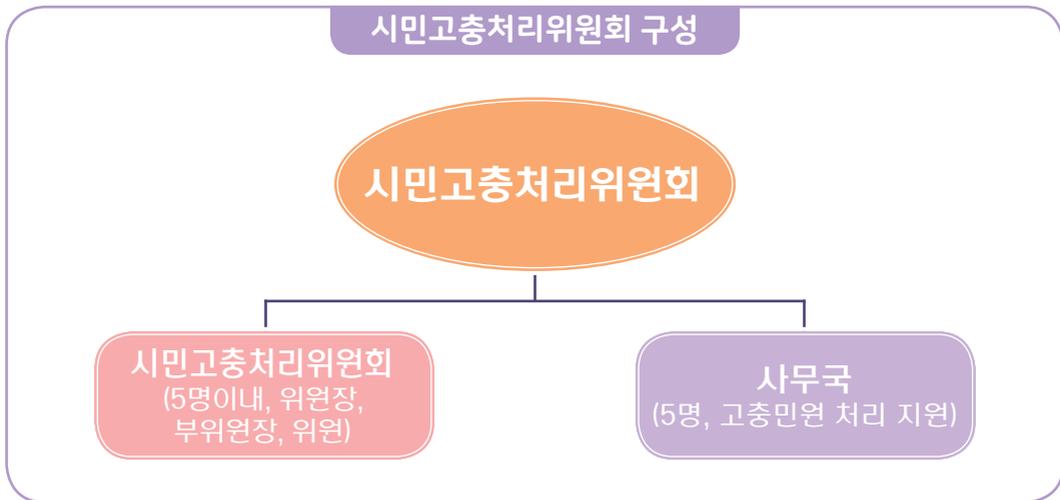
11월

11. 7. 불편제로!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 고충민원상담부스 운영
(중구 울산종합운동장)
11. 14. 불편제로!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 고충민원상담부스 운영
(북구청 광장)
11. 21. 시민고충처리위원 신규 위촉(1명)
11. 23. 불편제로!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 고충민원상담부스 운영
(남구 달동문화공원)

2 위원회 구성 현황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되어 있으며, 시민고충처리위원이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와 심의·의결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사무기구 직원은 위원회 업무를 지원한다(조례 제12조(사무기구)). 현재 권익인권담당관에 고충민원지원팀을 두어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인력: 정원 5명 / 현원 5명 ※ 민간 전문위원 5명 이내

(2023. 12. 31. 현재)

구분	일반직					※ 민간 전문위원
	소계	4급	5급	6급	7급	
정원	5	1	1	2	1	5
현원	5	1	1	2	1	4

3 위원 자격 및 현황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기관 추천을 통해, 시의회 동의를 받아 위촉하였다.

위원현황



위원장
이 채 홍

-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 울산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 울산 상안중학교 교장



부위원장
윤 정 록

- 7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 울주군청 삼남면장
- 울주군청 총무과장
- 울주군청 언양읍장



위원
박 호 수

- 남구청 복지경제국장
- 울산시 체육회 우수협회 부회장
- 남구고래문화재단 인사위원회위원



위원
권 귀 원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수사과장
-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울산지방검찰청 공안과장 직무대리

4 위원회 직무권한 및 기능

1. 기능 / 범위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및 그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이다.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울산광역시 및 그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8조(조사대상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1. 시 신청 및 그 소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2. 구·군(시의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4. 시의 사무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2. 주요기능

1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 위원회는 ‘관할권 내에 있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을 고충민원(다수인민원 포함)으로 접수하여 조사한다.
- 조사 결과 이러한 행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게 하도록 시정권고 할 수 있으며,
- 행정기관 등의 행위가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민원요구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을 한다.

2 불합리한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민원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관할권 내 법령(조례, 조례 시행규칙 등) 및 제도나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계 행정기관에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법령과 제도·정책을 현실에 맞게 추진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3 홍보·교육 및 교류·협력

-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 운영, 전광판 영상표출, 울산광역시 공식유튜브 채널 등재 등 홍보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주요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홍보자료 배포로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알리고 있다.
- 이와 함께 위원 및 조사관, 인·허가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처리 관련 워크숍 및 전문 교육과정에 참석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한 기법·사례 등을 습득·공유하고 있다.

3. 주요 권한

1 민원 조사

- 위원회에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실시된다. 위원회에서는 정확한 민원 조사를 위해 관련 부서에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관련 부서의 장은 자료 등의 제출 요구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2조(조사의 방법)

-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2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또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경우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이에 대한 취소·변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 행정기관의 행위가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구제하고 있다.

3 조사결과 보고 및 공표 권한

-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현황,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한 내용, 관련 부서의 처리 결과 등에 대해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한다.

5 고충민원 처리절차

1. 고충민원 신청 및 조사

1 고충민원 신청

- 민원인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인은 고충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한다.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 민원체계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2 민원의 조사

-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법령 · 조례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 ① 법 제3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고충 민원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지 등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등)

-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민원처리 예외 대상(민원의 이송, 각하 등)

- 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 ③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④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⑤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⑥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⑦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⑧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⑨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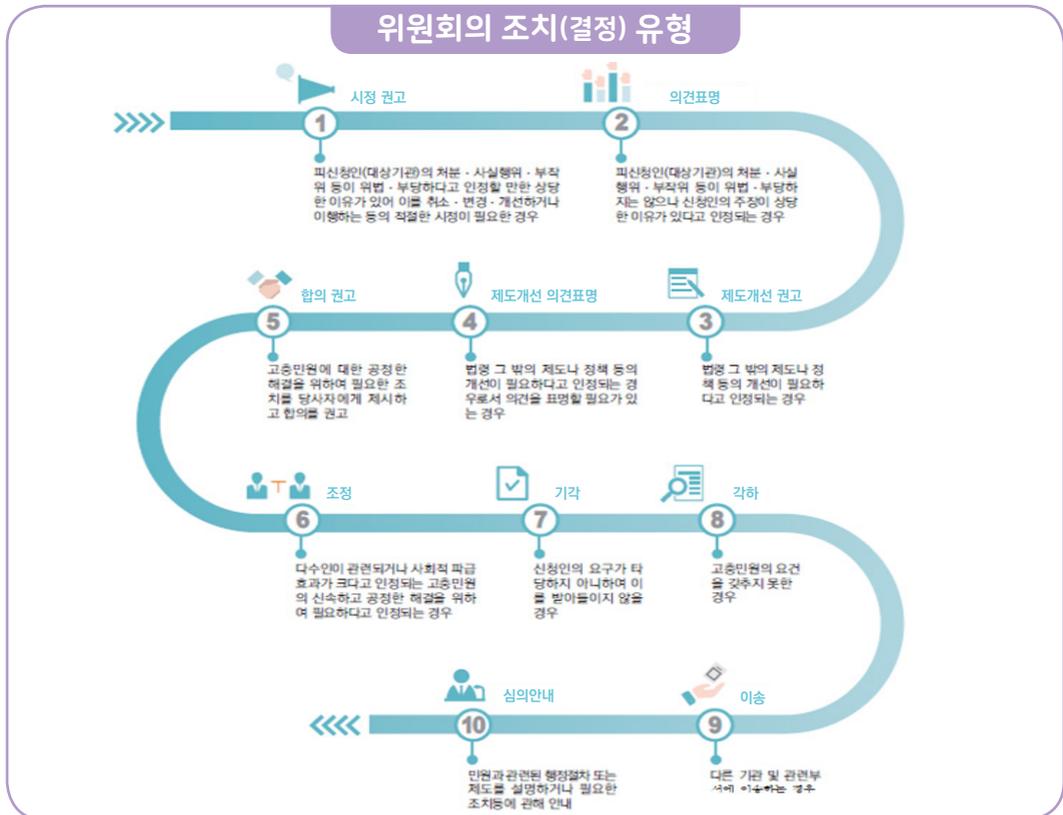
2. 심의·의결 / 조사결과 통지

1 심의·의결

- 조사가 완료된 민원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의한다. 위원회 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이 원칙이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회의의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사결과 통지

- 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 관계기관·관계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사후관리

- 위원회는 권고 등 위원회의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에 관계 서류의 제출,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조례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52조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②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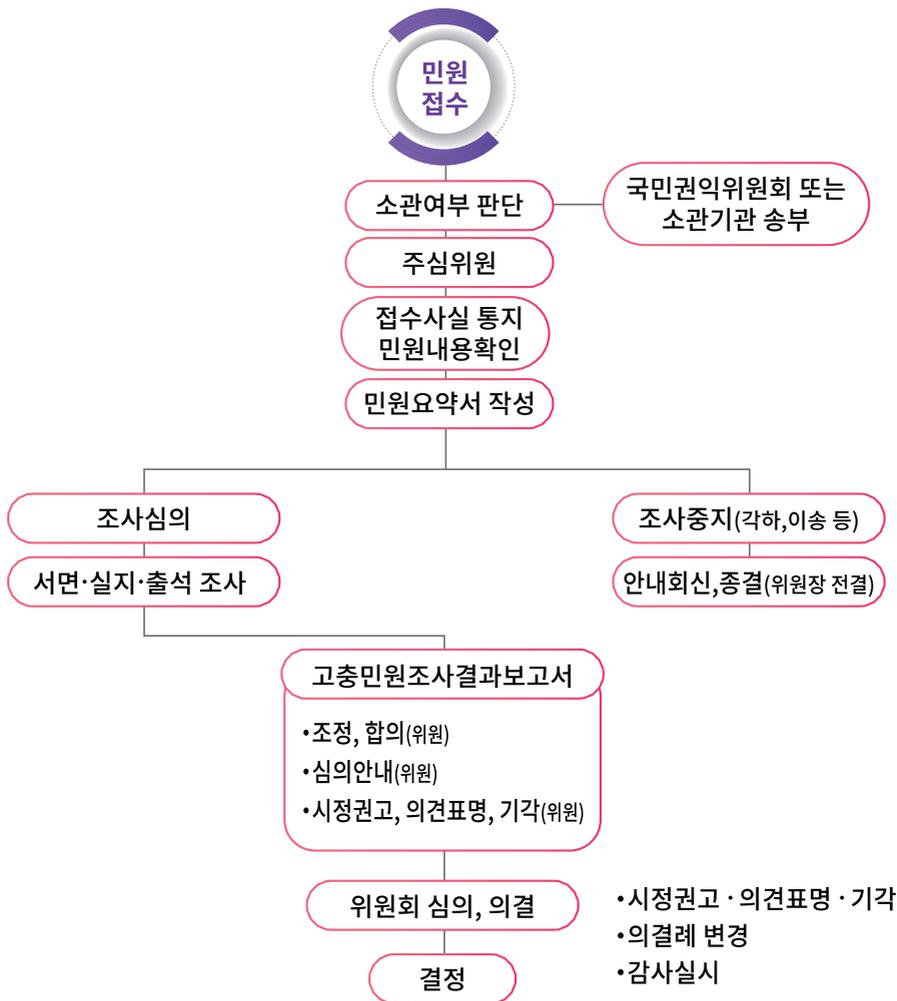
제12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대책 등을 기재한 시장의 방침을 받은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고충민원 처리 흐름도

1 처리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

2 처리절차



• 각 기관 및 신청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위원회의 조치(결정) 유형

구분	고충민원	일반민원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고충민원의 정의)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고충민원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일반민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민원에 대한 2차 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 포함), 부작위 → 소극적 행정행위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 ※ 법령·제도·절차 등의 질의 및 상담, 제도개선 건의는 개인의 권리·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민원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제기는 민원처리법 35조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처리

202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





III.

위원회 운영 성과

1. 고충민원 해소율 향상, 처리기간 단축으로 시민만족도 제고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체계 구축·확립
3.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 강화
4. ombudsman 역량강화 및 국내·외 권익구제기관과 교류·협력
5. 고충민원 실적제고 노력

1 위원회 운영 성과

1. 고충민원 해소율 향상, 처리기간 단축으로 시민만족도 제고

- '18년에서 '22년까지 4년간 고충민원 해소율* 21.0% 대비 2022년 9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재편 이후 126건 중 41건을 해결(의견표명, 합의, 조사중 해결), 해소율을 32.5%로 높여 민원 해소율을 1.5배 향상,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함
* 의견표명 + 합의 · 조정 + 조사중 해결

☑ 고충민원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고충민원 해소					고충민원 미해소				비고
		소계	권고	합의 조정	조사중 해결	제도 개선	소계	기각	심의 안내	이송, 취하등	
계	126	41	21	3	17		85	7	29	49	
'22년 (10~12월)	33	10	6		4		23	3	5	15	
'23년	93	31	15	3	13		62	4	24	34	

- 신속한 처리로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하는 고충민원 처리기간 60일을 30일 이내에서 처리토록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
 - 2023년 고충민원 평균 24일처리로 기존 43일 대비 19일 단축 해결
 - '22. 9 ~ '23. 12. : 평균 처리기간 24일
 - ※ '18. 9 ~ '22. 8. : 평균 처리기간 43일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체계 구축 · 확립

- 2022년 9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개편하여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 및 조사체계를 구축·확립하여 운영
 - 고충상담으로 직접조사 결정된 민원은 ① 피신청기관의 처리사항 및 의견에 대한 검토,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권익인권담당관, 민원인, 피신청기관간 현장간담회로 고충민원을 합동으로 다시 검토하고 ③ 3자간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④ 위원회 심의·의결 토록 처리시스템을 정립, 고충민원 해결률 제고

3.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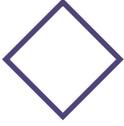
- (현장 행정) 현장 중심의 옴부즈만 서비스로 접근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고충상담으로 시민에게 든든한 고충해결사로 자리매김
 - 구·군별, 분기별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 고충상담 창구 운영 : 총 6회, 79건
 - * 3회, 59건, **3회 20건 생활민원, 고충민원 접수·처리
 - 태화강 국가하천 내 이용자 불편 등 24건*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현장조사·법률을 검토하여 고충을 해결, 의견표명 등으로 시민불편 해소
 - * (해결) 14건(의견표명7, 조사중 해결6, 합의1), (안내) 10건(심의안내3, 이송6, 기각1)

4. 옴부즈만 역량강화 및 국내·외 권익구제기관과 교류·협력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를 통한 고충민원 처리기법 교육 등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및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권익구제기관과의 교류·협력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모색
 - 민원처리 법령·고충민원 처리제도 연찬을 위한 워크숍 2회 실시
 - 지방옴부즈만 해외 선진도시인 일본의 가와사키, 니가타, 오사카를 방문하여 옴부즈맨간 간담회로 국외 권익구제기관과 교류·협력
 - 강릉 특화거리를 방문, 현장간담회 등으로 장기발전방안 모색

5. 고충민원 실적 제고 노력

- 2023년 고충민원 접수·처리는 93건(직접조사 59)으로 2022년보다는 19%정도 증가하였으나, 그간의 실적과 비교하면 다소 저조함
 - ('21년) 접수 224건(직접조사 135) / ('22년) 접수 78건(직접조사 53)
- 현장 중심의 분기별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 상담 운영 등으로 실적 향상
 - 2023년은 6회 79건 처리로 현장상담은 그간 실적 대비 2.4배 이상 향상
 - 2024년에는 현장 상담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 횟수를 늘려 고충민원 상담·처리율이 향상되도록 노력



IV.

고충민원 처리현황

1. 고충민원 처리실적
2. 주요 처리실적

1 고충민원 처리실적

1.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2023년도 접수된 총 93건의 고충민원 중 직접조사 처리하기로 한 민원은 59건(63.4%)으로 월평균 4.9건을 직접조사 하였으며, 이송·단순안내, 취하 등으로 종결한 민원은 34건(36.6%)임

☑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단위 : 건)

계	직접처리			간접처리			
	소계	완료	처리중	소계	이송	각하	취하
93	59	59	-	34	29	3	2

- 직접조사하여 심의·의결한 고충민원에 대해 결정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정권고 1건, 의견표명 14건, 합의·조정 3건, 조사중 해결 13건, 심의안내 24건, 기각 4건으로 의결

☑ 직접조사 결정유형별 현황

(단위 : 건)

합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조정	조사중 해결	심의안내	기각
59	1	14	3	13	24	4

2. 위원회 인용 및 부서수용 현황

- 직접 조사한 고충민원 중 신청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어 위원회가 이를 인용한 건수*는 31건(52.5%)이고, 심의안내, 기각 등으로 위원회가 미인용한 건수는 28건(47.5%)으로 직접조사 건에 대하여는 50% 이상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집계됨

*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조정, 조사중 해결의 합산한 건수

☑ 위원회 인용현황

(단위 : 건)

합계		위원회 인용		위원회 미인용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59	100	31	52.5	28	47.5

-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인용결정에 대해서는 피신청기관(부서)으로부터 최종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제출받아 분기별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용결정한 민원에 대해 피신청기관(부서)이 수용한 건수는 전체 15건, 조정·합의와 조사중 해결은 16건이며 불수용은 없어 100% 수용처리 되었음

☑ 부서 수용현황

(단위 : 건)

건수 (a+b)	수용			불수용 (b)	수용률 (%)	비고
	계(a)	수용	자체해결*			
31	31	15	16	0	100	*자체해결: 중재, 조정, 합의, 조사중 해결

※ 수용률 = a/(a+b) x 100

3. 창구별 접수 건수 및 처리기간

- 직·간접 처리한 고충민원 총 93건에 대한 접수창구별 현황을 보면 방문접수가 5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현장상담·접수 25건, 홈페이지 7건, 우편 2건 순으로 접수됨
- 직접조사·처리한 고충민원 59건 중 평균 처리기간은 24일이었으며, 최장기간은 58일, 최단기간은 5일로 나타남

☑ 창구별 접수 현황 및 처리기간

합계	창구별 현황(건)				처리기간(일)		
	방문	현장	홈페이지*	우편	평균	최장	최단
93	59	25	7	2	24	58	5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접수 335건 중 7건에 대하여 고충민원 직접조사·처리, 328건은 처리기관에서 검토·답변

4. 피신청기관별 고충민원 현황

- 접수된 고충민원을 피신청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총 93건 중 5개 구·군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 본청 29건, 시, 구·군 산하 공공기관 3건, 기타 6건으로 집계됨

☑ 피신청기관별 고충민원 접수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시본청	구·군별						공공기관	기타
			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		
건수	93	29	55	6	10	3	17	19	3	6
비중	100	31.1	59.2	6.5	10.8	3.2	18.3	20.4	3.2	6.5

※ 기타 :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기업 등

5. 분야별 민원접수 현황

- 고충민원을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교통건설 관련 민원이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녹지 15건, 문화·산업 13건, 건축주택 11건 순으로 접수됨

☑ 분야별 민원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교통건설	환경녹지	문화·산업	건축주택	복지·보건	도시계획
건수	93	38	15	13	11	8	8
비중(%)	100	40.9	16.1	14.0	11.8	8.6	8.6

6. 직접조사 민원 현황

연번	민원요지	처리기간		주심 위원	처리결과
		접수일	의결일		
1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요청	2023. 1. 3.	2023. 1. 9.	박호수	조사중해결
2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및 반환청구	2023. 1. 12.	2023. 2. 21.	박호수	의견표명
3	태풍피해 농지 원상복구 및 추가발생 방지 요청	2023. 1. 26.	2023. 2. 21.	윤정록	조사중해결
4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확인 및 지정 요청	2023. 1. 27.	2023. 3. 6.	박호수	심의안내
5	회야담 편입부지 보상금 부당지급 시정 요구	2023. 2. 7.	2023. 3. 6.	윤정록	심의안내
6	국유재산(도로) 용도폐지 요청	2023. 2. 8.	2023. 2. 27.	이상일	조사중해결
7	서동 회전교차로 바닥표지선 수정 요청	2023. 2. 22.	2023. 3. 20.	강승모	심의안내
8	○○○○○○○○(○○○)의 제출서류 진위여부 등 확인 및 행정처분 요청	2023. 2. 22.	2023. 4. 4.	박호수	기각
9	시유지 부분 철거 요청 부당	2023. 2. 24.	2023. 3. 20.	이상일	기각
10	무단방치 쓰레기 청소 요청	2023. 3. 8.	2023. 4. 17.	박호수	심의안내
11	앞집 상가 연기 발생 불편 해소 요청	2023. 3. 8.	2023. 4. 11.	윤정록	조사중해결
12	농민수당 등 미지급 부당	2023. 3. 22.	2023. 4. 17.	이상일	심의안내
13	○○○ ○○○○체험관건립에 따른 민원	2023. 3. 22.	2023. 4. 24.	윤정록	심의안내
14	허리수술 검사비용 청구	2023. 3. 22.	2023. 4. 11.	강승모	조사중해결
15	○○리 오수관로 연결 허가 관련 민원	2023. 3. 27.	2023. 6. 19.	이상일	기각
16	공원조성부지 유실수 보상 요청	2023. 3. 30.	2023. 4. 24.	윤정록	심의안내
17	버스정류장 전열의자 수리 및 돌레길 청소 요청	2023. 3. 30.	2023. 5. 1.	박호수	조사중해결

연번	민원요지	처리기간		주심 위원	처리결과
		접수일	의결일		
18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휴게시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2023. 3. 30.	2023. 6. 5.	강승모	기 각
19	상·하수관, 오수관 매립 사용료 지급 및 간이화장실 설치 신고 수리 요청	2023. 4. 3.	2023. 5. 1.	이상일	심 의 안 내
20	태화강역 앞 버스승강장 재설치 요청	2023. 4. 13.	2023. 5. 12.	윤정록	의 견 표 명
21	울산대공원내 토지구매 요청 및 생계 지원 요청	2023. 4. 13.	2023. 5. 12.	박호수	심 의 안 내
22	(○○읍 ○○리, ○○마을) 도시가스 공급 요청	2023. 4. 20.	2023. 5. 25.	윤정록	의 견 표 명
23	유원시설업 신고 행정처리 절차하차 피해대책 마련 진정	2023. 4. 20.	2023. 5. 25.	박호수	심 의 안 내
24	울산○○ 행복주택내 공영주차장 운영 요청	2023. 4. 21.	2023. 6. 1.	이상일	심 의 안 내
25	хин남노 태풍시 유실된 논 시설보수 공사 요청	2023. 5. 11.	2023. 6. 12.	이상일	의 견 표 명
26	○○○○체육센터 문제점 수정 요청	2023. 5. 31.	2023. 7. 10.	강승모	조사중해결
27	두서면 ○○○마을 상수도 공급요청	2023. 6. 1.	2023. 6. 19.	윤정록	의 견 표 명
28	울산축협가축시장 농로 확장 요청	2023. 6. 12.	2023. 7. 17.	윤정록	의 견 표 명
29	반천현대아파트앞 자전거도로 벚꽃나무 토사 유실 보완 요청	2023. 6. 12.	2023. 7. 20.	강승모	의 견 표 명
30	반천현대아파트앞 자전거도로 가로등 추가 설치 요청	2023. 6. 12.	2023. 7. 20.	이상일	의 견 표 명
31	공중화장실 설치 요청	2023. 6. 12.	2023. 7. 24.	박호수	의 견 표 명
32	반천현대아파트 앞 유실된 징검다리 복구 요청	2023. 6. 12.	2023. 7. 17.	윤정록	의 견 표 명
33	봉안당 설치 신고수리 취소 시정 요구	2023. 6. 12.	2023. 7. 17.	윤정록	시 정 권 고
34	버스정류장 전열의자 수리 및 돌레길 청소 요청	2023. 6. 27.	2023. 8. 7.	강승모	심 의 안 내
35	건축허가 요청	2023. 7. 5.	2023. 8. 11.	박호수	심 의 안 내

연번	민원요지	처리기간		주심 위원	처리결과
		접수일	의결일		
36	○○ 주거환경 개선지구 시설 변경 및 취소 요청	2023. 7. 10.	2023. 8. 21.	이상일	심 의 안 내
37	○구 ○○공영주차장 이륜차 출입 요청	2023. 7. 20.	2023. 8. 28.	윤정록	의 견 표 명
38	현행 도로에 상수도 관로 매설 요청	2023. 8. 3.	2023. 9. 11.	박호수	심 의 안 내
39	○○○ 주차장 공사로 인한 우수 피해방지 요청	2023. 8. 4.	2023. 9. 4.	윤정록	합 의 조 정
40	산전마루 공용 전기세 변제 요청	2023. 8. 22.	2023. 10. 5.	박호수	심 의 안 내
41	중구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설계변경으로 인한 피해 구제	2023. 8. 22.	2023. 9. 21.	이상일	심 의 안 내
42	거주지 앞 벤치 철거 요구	2023. 8. 23.	2023. 9. 11.	이상일	조사중해결
43	개발제한구역내 대체목 식재 및 경작 가능한 토지로 변경 요청	2023. 8. 31.	2023. 10. 10.	윤정록	심 의 안 내
44	북구 ○○동 도로포장 요청	2023. 9. 1.	2023. 10. 10.	박호수	심 의 안 내
45	○○○○아파트~국도○호선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마을진입로 구조개선 요청	2023. 9. 27.	2023. 11. 13.	윤정록	합 의 조 정
46	도심지내 쓰레기 불법소각방지 및 교육을 통한 계도 요청	2023. 9. 27.	2023. 10. 30.	박호수	조사중해결
47	○○○동 ○○○○○에서 ○○못으로 가는 산책로 및 가로등 설치	2023. 9. 27.	2023. 11. 13.	박호수	심 의 안 내
48	○○○○ 일원 동천 준설 요청	2023. 10. 10.	2023. 11. 20.	윤정록	의 견 표 명
49	○○○동 행정복지센터앞 교차로 관로 정비 요청	2023. 10. 10.	2023. 11. 13.	박호수	조사중해결
50	구 토지대장 소유자 한자 및 주소 정정 요청	2023. 10. 23.	2023. 11. 27.	윤정록	심 의 안 내
51	중구 ○○○길 집앞 보안등 설치 요청	2023. 11. 8.	2023. 12. 19.	박호수	조사중해결
52	북구 ○○동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산책로 정비 요청	2023. 11. 15.	2023. 12. 27.	박호수	조사중해결
53	북구 ○○동 장마철 대비 우수관로 개설 요청	2023. 11. 15.	2023. 12. 27.	윤정록	의 견 표 명

연번	민원요지	처리기간		주심 위원	처리결과
		접수일	의결일		
54	청량읍 ○○마을 ○○○○번 리무진 버스 정차 요청	2023. 11. 23.	2023. 12. 18.	윤정록	심 의 안 내
55	남구 번영로○○○번길 상습 침수 시정	2023. 11. 23.	2023. 12. 18.	박호수	심 의 안 내
56	남구 팔등로○○번길 관로 침범 나무뿌리 제거 요청	2023. 11. 23.	2023. 12. 18.	권귀원	조사중해결
57	남구 삼산로 ○○○ 건물 유지보수 및 긴급차량 진입로 확보 요청	2023. 12. 18.	2024. 1. 15.	윤정록	의 견 표 명
58	버스노선 신설 또는 마을버스 배차 간격 조정 요청	2023. 12. 18.	2024. 1. 30.	권귀원	심 의 안 내
59	○○면 ○○마을 상수도 인입 요청	2023. 12. 18.	2024. 1. 22.	윤정록	합 의 조 정

2 주요 처리실적

☑ 【시정권고】: 1건

연번	민원내용	심의·의결	분야
1	<p>봉안당 설치 신고수리 취소 시정 요구 (2023-고-0052)</p> <p>▶울주군 ○○면 ○○○(○, ○○○) 봉안당이 2020년에 설치 신고 수리를 받았으나, 이후 소유권이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되어 있어서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았음</p> <p>▶'23. ○월에 ○○○로 소유권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처분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시정해 주기 바람</p>	<p>【시정권고, 2023. 7. 17.】</p> <p>▶최초 신고수리 당시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으로 소유권을 확인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확인하지 않고 신고 수리하였으며,</p> <p>▶이후, 최초 신고수리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취소를 통보하여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사실이 있으므로,</p> <p>▶현재 요건을 충족한 ○○○ 봉안당에 대해 신고 수리 취소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p>	사회복지

☑ 【의견표명】: 14건

연번	민원내용	심의·의결	분야
1	<p>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및 반환 청구 (2023-고-0003)</p> <p>▶자동차 사고처리 중에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므로, 납부한 과태료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함</p> <p>▶과태료 납부 전에 의견진술을 먼저 해야함에도 과태료를 먼저 납부한 뒤에 의견을 제출한 상태로, 반환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거부당함</p> <p>※ 과태료 32,000원</p>	<p>[의견표명, 2023. 2. 21.]</p> <p>▶신청인의 주정차 위반은 타 차량과 접촉사고로 자동차사고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주정차를 한 것으로,</p> <p>▶보험회사 신고확인서를 통해 사고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주정차를 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반환해 줄 것을 의견표명</p>	교통건설
2	<p>태화강역 앞 버스승강장 재설치 (2023-고-0029)</p> <p>▶2021년 태화강역 동해남부선 전철 개통에 따라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태화강역 앞 삼산방향 버스승강장을 폐지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함</p> <p>▶기존 승강장을 폐지하면서 40m이상의 8차선 도로를 건너 신설된 태화강역 통합승강장을 이용해야 하므로 위험하고 불편함</p> <p>※ 기존 승강장 : 2021년 기준 208,003명 이용</p>	<p>[의견표명, 2023. 5. 12.]</p> <p>▶태화강역 통합승강장을 경유하는 46개 노선 중 일부 노선을 곧바로 삼산방향으로 조정하더라도 철도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광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p> <p>▶따라서, 태화강역 전철 개통에 따라 폐지한 태화강역 앞 삼산방향 버스 승강장을 재설치하고, 노선버스를 운영할 것을 의견표명</p>	교통건설

연번	민원내용	심의·의결	분야
3	<p>○○읍 ○○리, ○○○○ 도시가스 공급 요청 (2023-고-0031)</p> <p>▶울주군 ○○읍에서 ○○○ 방향으로 도시가스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읍 ○○○(○○○ ○○, ○○○)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나, ○○읍 ○○리, ○○○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서 불편함</p> <p>▶경동도시가스에서는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면 도시가스를 공급해 준다고 하나 비용부담없이 공급해 주기를 요청함</p> <p>*442만원~435만원 정도</p> <p>※ ○○○(214세대 388명), ○○(116세대 206명) 거주</p>	<p>[의견표명, 2023. 5. 25.]</p> <p>▶2021년부터 (주)경동도시가스에서 ‘○○○ 일원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읍 ○○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음</p> <p>▶○○읍 ○○리, ○○○은 ○○○과 인접지역이고, 이미 평리마을을 지나 도시가스 배관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연장하여 공급하는 데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p> <p>▶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취지에 따라 기존 공사구간에 ○○읍 ○○리, ○○마을을 포함하여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의견표명</p>	교통건설
4	<p>한남노 태풍시 유실된 논 등 피해복구 요청 (2023-고-0037)</p> <p>▶2022. 9월 한남노 태풍 때 유실된 ○○면 ○○리 농지와 ○○(○○○)을 조속히 복구해 주기 바람</p> <p>※ ○○○ ○○○ ○-○번지 일원 농지 및 ○○천</p>	<p>[의견표명, 2023. 6. 12.]</p> <p>▶한남노 태풍시 지방하천인 ○○천의 석축이 무너져 신청인의 농지가 유실된 사실이 확인됨</p> <p>▶재난이 발생한 농지 및 ○○○에 대해 조속히 피해복구할 것을 의견표명</p>	재해재난

연번	민원내용	심의·의결	분야
5	<p>두서면 ○○○마을 상수도 공급 요청 (2023-고-0043)</p> <p>▶2021년부터 상수도 공급을 신청하였으나 예산사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상수도를 공급해 주기 바람</p>	<p>[의견표명, 2023. 6. 19.]</p> <p>▶인근 지역인 두서면 대리, 월부, 양지마을에는 2020년도에 상수도를 공급함</p> <p>▶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를 공급할 것을 의견표명</p>	환경복지
6	<p>울산축협가축시장 앞 농로 확장 요청 (2023-고-0046)</p> <p>▶울산축협가축시장 앞 진입로가 좁아 가축시장 이용 차량과 농기계 등이 얽혀 복잡하기 때문에, 구거 일부를 복개해서 농로를 확장해 주기 바람</p> <p>▶진입로가 좁고, 급회전하는 선형으로 되어 있어, 가축시장이 열릴 때마다 가축시장 대형트럭, 이용자 차량, 인근 농지 경작자의 농기계 등이 서로 영켜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통행에 불편함</p>	<p>[의견표명, 2023. 7. 17.]</p> <p>▶농로의 관리주체가 피신청인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가축시장에 대한 지원 사례가 있는 점,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책무 등으로 미뤄볼 때,</p> <p>▶인근 농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거 일부를 복개하여 농로를 확장할 것을 의견표명</p>	도로관리

연번	민원내용	심의·의결	분야
7	<p>반천현대아파트앞 자전거도로 벚꽃 나무 토사 유실 보완 요청 (2023-고-0047)</p> <p>▶울주군 반천현대아파트 앞 자전거도로에 벚꽃나무가 있는데, 힌남노 태풍 때 토사가 유실되어, 산책하는 주민이나 자전거가 빠질 위험이 있으니 조치해 주기 바람</p>	<p>[의견표명, 2023. 7. 20.]</p> <p>▶벚꽃나무 가로수 아래에 유실된 토사를 보충하거나 그 외의 방법 등으로 보완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p>	환경녹지
8	<p>반천현대아파트앞 자전거도로가로등 추가 설치 요청 (2023-고-0048)</p> <p>▶울주군 반천현대아파트 102동 앞에서 대암교까지 자전거 도로에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해 주기 바람</p> <p>▶2021년 상반기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일원에 가로등 8주를 신설한 사례가 있으나 상기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음</p>	<p>[의견표명, 2023. 7. 20.]</p> <p>▶야간 산책이나 운동 등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나 가로등이 없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p> <p>▶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의견표명</p>	도로관리
9	<p>공중화장실 설치 요청 (2023-고-0049)</p> <p>▶울주군 상북면 울산면허시험장에서 산전교까지 백리대숲길이 1.9km 정도 있는데, 평일과 주말에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근처에 화장실이 없으므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주기 바람</p>	<p>[의견표명, 2023. 7. 24.]</p> <p>▶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상북면 산전교 인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의견표명</p>	보건위생

연번	민원내용	심의·의결	분야
10	<p>반천현대아파트앞 유실된 징검 다리 복구 요청 (2023-고-0050)</p> <p>▶울주군 반천현대아파트 앞 태화강에 있던 징검다리가 홍수로 유실되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해 주기 바람</p> <p>▶징검다리는 2016년 태풍 차바 이후 만들어졌으며, 2022년 복구공사를 하다 중단되어 불편함</p> <p>▶반천현대아파트~총골마을까지 2km를 우회해야 됨</p>	<p>[의견표명, 2023. 7. 17.]</p> <p>▶반천현대아파트~총골마을까지 징검 다리를 이용해 왔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므로,</p> <p>▶유실된 징검다리를 빠른 시일내 복구할 것을 의견표명</p>	교통건설
11	<p>○구 ○○공영주차장 이륜차출입 요청 (2023-고-0060)</p> <p>▶○구 ○○공영주차장 내 이륜차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니 출입을 가능하게 해 달라</p> <p>▶이륜차 전용 주차공간 부재와 번호판 인식 불가능을 이유로 출입을 금지해 불편함</p>	<p>[의견표명, 2023. 8. 28.]</p> <p>▶공영주차장의 이륜차 주차 시스템 미비의 사유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며, 정당한 조치로 보기 어려움</p> <p>▶○구 ○○공영주차장 이륜자동차 출입 금지를 해제할 것을 의견표명</p>	교통건설

연번	민원내용	심의·의결	분야
12	<p>○○○○ 일원 동천 준설 요청 (2023-고-0080)</p> <p>▶북구 ○○동 ○○○○아파트 일원 매곡천과 동천 합류부에 토사가 많이 쌓여 태풍, 집중호우 시에 천곡천 범람으로 ○○○○아파트 침수가 우려되니 동천 준설을 해 달라</p>	<p>[의견표명, 2023. 11. 20.]</p> <p>▶○○○과 ○○○ 합류부 주변의 하류 방향에 쌓인 퇴적으로 인하여 매곡천의 물이 동천강 하류로 자연스럽게 흘러 내려가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어 하상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p> <p>▶북구 ○○동 ○○○○아파트 일원 동천 하상정비로 하천범람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의견표명</p>	교통건설
13	<p>북구 ○○동 장마철 대비 우수관로 개설 요청 (2023-고-0086)</p> <p>▶ 북구 ○○동 신청인의 주거지가 집중호우시 배수가 되지 않아 불편하니 해결해 달라</p>	<p>[의견표명, 2023. 12. 11.]</p> <p>▶신청인 주거지는 인근 빌라 뒤편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배수가 불량하고,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침수가 우려된다.</p> <p>▶북구 ○○동 신청지 일원에 물막이판 또는 우수관을 설치하여 주택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p>	교통건설
14	<p>남구 ○○로○○○ 전면부 건물 유지보수 및 긴급차량 진입로 확보 요청 (2023-고-0091)</p> <p>▶남구 ○○로 신청 건물 앞에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이 설치되어, 건물 유지보수 차량과 긴급 차량 진입이 어려워짐. 차량 진입 통로 확보 요구</p>	<p>[의견표명, 2024. 1. 15.]</p> <p>▶신청 건물과 주변 현황, 긴급상황 대처를 고려할 때, 건물 앞에 설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재배치가 필요함</p> <p>▶신청 건물 유지보수 및 긴급차량 진입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재배치할 것을 의견표명</p>	교통건설

☑ 【합의·조정】: 3건

연번	민원내용	심의·의결	분야
1	<p>○○○ 주차장 공사로 인한 우수 피해방지 요청 (2023-고-0065)</p> <p>▶○○면 ○○리 ○○○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신청인 영업장으로 우수가 흘러 침수가 우려되니 배수개선 및 침수방지 대책을 요구</p>	<p>[합의, 2023. 9. 4.]</p> <p>▶울주군에서 ○○○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배수관로를 설치하였으며, 저지대인 신청인 영업장으로 주변 우수가 흘러들어 침수 우려가 있음. 배수개선을 위한 관로 설치를 위해서 신청인 사유지가 필요함</p> <p>▶울주군은 배수관로 공사를 추진하고, 신청인은 사유지에 배수관로 설치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상방 합의</p>	환경녹지
2	<p>○○○○아파트~국도○호선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마을진입로 구조개선 요청 (2023-고-0075)</p> <p>▶○○○○아파트 ~ 국도○호선 연결도로 개설 시 기존 ○○○○ 진입이 불가하므로 회전교차로 설치,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도로 개설 등 마을진입로 구조개선을 요청</p>	<p>[합의, 2023. 11. 13.]</p> <p>▶○○○○아파트~국도○호선 연결도로 개설 시 기존 ○○○○ 진입이 어려워 주민들은 계획 조정 등으로 마을진입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p> <p>▶울산광역시는 토지확보가 가능한 경우 원활한 진출입이 되도록 노력하고, 신청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합의</p>	교통건설
3	<p>○○면 ○○○○ 상수도 인입 요청 (2023-고-0093)</p> <p>▶○○면 ○○○○은 지하수를 생활 용수로 이용하고 있어 불편하니 상수도 공급 요청</p>	<p>[조정, 2024. 1. 22.]</p> <p>▶○○면 ○○○○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고, 지하수 고갈 등의 우려로 상수도 공급을 요청하고 있음.</p> <p>- ○○○○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사유지 도로보상 또는 동의를 필요한 사항임</p> <p>▶상수도사업본부는 예산확보 및 공사, 울주군은 도로 미불용지 보상, 신청인과 주민은 사유지 동의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조정</p>	환경녹지

☑ 【조사중 해결】: 13건

연번	민원내용	심의·의결	분야
1	<p>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요청 (2023-고-0002)</p> <p>▶ 신청인은 울주군 ○○○ 소재 대형마트 내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2개월 정도 하였으며, 일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임금을 받지 못하여 초과 임금 지급 요청</p>	<p>[조사중 해결, 2023. 1. 9.]</p> <p>▶ 신청인의 고용노동청 진정신청에 대하여 고용주의 법령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건이나</p> <p>▶ 위원회에서 대형마트 관계자, 마트내 매장 관계자와 중재를 시도하여 고용주의 초과임금 지급에 대한 의무는 없으나, 신청인의 고충을 고려하여 초과 임금을 조사중 지급하여 해결</p>	사회복지
2	<p>태풍피해 농지 원상복구 및 추가발생 방지 요청 (2023-고-0006)</p> <p>▶ ○○○면 ○○○리 신청인의 농지에 대해 2022년 한남노 태풍으로 하천 퇴적토와 유수가 사유지를 덮쳐 농사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복구를 요청</p> <p>▶ 2023년 1월까지 조치가 되지 않아 피해 원상복구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재차 요청</p>	<p>[조사중 해결, 2023. 2. 21.]</p> <p>▶ 신청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울주군에서 유선으로 2023년 상반기 하상정비 공사에 포함하여 진행하겠다고 안내</p> <p>▶ 현장간담회를 통해 농지로 유입된 토사 제거, 하상정비 및 피해방지 공사를 2023년 상반기 중 추진하는 것을 조사중 확인하여 해결</p>	재해재난

연번	민원내용	심의·의결	분야
3	<p>국유재산(도로) 용도폐지 요청 (2023-고-0011)</p> <p>▶신청인은 신청인의 토지와 연접한 북구 ○○동 소재 국유재산에 대하여 기능을 상실하여 '20년도에 용도폐지를 신청하였으나 공익사업과 연접하다는 사유로 불가 통보. 현재까지 활용계획 없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 불편함.</p> <p>▶기능을 상실한 국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요청</p>	<p>[조사중 해결, 2023. 2. 27.]</p> <p>▶용도폐지를 신청한 토지에 대한 20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현황을 확인한 바,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보고되었으며,</p> <p>▶재산관리청에서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사중 제출하여, 해결</p>	도시계획
4	<p>앞집 상가 연기 발생 불편 해소 요청 (2023-고-0018)</p> <p>▶울주군 ○○읍에 위치한 신청인 거주지 인근 음식점에서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 냄새를 배출하기 위한 환풍구를 신청인 집 앞에 설치하여 악취 등으로 불편하니 조치 요청</p>	<p>[조사중 해결, 2023. 4. 11.]</p> <p>▶영업장과 조리장은 연기 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환기가 불량하여 주변 주거시설이 불편을 겪고 있음.</p> <p>▶음식점 영업주와 민원 불편사항 공유, 피신청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환풍구 위치를 조사중 조정하기로 하여 해결</p>	보건위생

연번	민원내용	심의·의결	분야
5	<p>허리수술 검사비용 청구 (2023-고-0021)</p> <p>▶ 신청인은 ○구 긴급복지지원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안내받고, 허리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를 받고 60만원 정도를 지출하였으며, 수술비 등 지원외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수술전 검사 비용 지원을 요청</p>	<p>[조사중 해결, 2023. 4. 17.]</p> <p>▶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사전 검사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지원을 불가하나, 피신청기관은 신청인의 여러 정황(고령, 안내 오해, 생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모금회 생계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검사비 50만원을 조사중 지원하여 조사중 해결</p>	사회복지
6	<p>버스정류장 전열의자 수리 및 둘레길 청소 요청 (2023-고-0024)</p> <p>▶ 신청인은 ○○○○○ 버스정류장 온열 의자 수리와 ○○○○○과 ○○를 연결하는 둘레길 주변이 지저분하여 정비를 요구</p>	<p>[조사중 해결, 2023. 5. 1.]</p> <p>▶신청인이 요청한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수리는 조사중 정비하여 정상 작동하고 있으며</p> <p>▶○○○공원과 ○○주변은 관광지로 피신청기관에서 환경정비 인력으로 주기적인 정비를 실시하겠음을 답변하여 조사중 해결</p>	교통건설
7	<p>○○○○체육센터 문제점 수정 요청 (2023-고-0040)</p> <p>▶신청인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로 방문접수만 할 수 있는데 ○○○○체육센터 회원 모집은 인터넷 접수로 인원이 마감되는 경우 접수가 불가하여 불편</p> <p>▶헬스장 입구에 오픈형 공용 신발장 설치 요구</p>	<p>[조사중 해결, 2023. 7. 10.]</p> <p>▶피신청기관은 인터넷 결제가 어려운 고객에 대하여는 안내데스크에서 접수를 지원하고 있고, 헬스장 내 공용 신발장은 충분히 비치되어 있어 불필요함</p> <p>▶회원 모집방법은 고충민원 조사중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인터넷 접수와 방문 접수를 병행 실시하여 해결</p>	문화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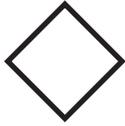
연번	민원내용	심의·의결	분야
8	<p>거주지 앞 벤치 철거 요구 (2023-고-0070)</p> <p>▶ 남구 ○○동 일원 신청인의 거주지 창가에 피신청기관이 벤치를 설치하여 사생활 침해 등으로 생활 불편을 호소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아 철거 요청</p>	<p>[조사중 해결, 2023. 9. 11.]</p> <p>▶ 신청인의 거주지 앞으로 벤치가 설치되어 사생활 침해, 주차자 소란 및 쓰레기 투기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해짐</p> <p>▶ 위원회와 피신청기관, 신청인의 현장간담회 등으로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조사중 벤치를 9월에 철거 하는 것으로 해결</p>	도시계획
9	<p>도심지내 쓰레기 불법소각방지 및 교육을 통한 계도 요청 (2023-고-0076)</p> <p>▶ 북구 ○○동 일원 아파트 인근에서 쓰레기를 간헐적으로 소각하여 악취 등으로 불편하여 단속, 홍보 등으로 행정지도 요청</p>	<p>[조사중 해결, 2023. 10. 30.]</p> <p>▶ 신청인은 아파트 단지 인근 주택에서 쓰레기를 소각하여 악취로 생활이 불편함을 호소</p> <p>▶ 피신청기관에 불법소각 단속 및 행정지도를 요청한바, 조사중 불법 소각 예방을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배부 하는 등 단속, 홍보로 행정지도하여 해결</p>	환경녹지
10	<p>○○○동 ○○○○○○앞 교차로 관로 정비 요청 (2023-고-0081)</p> <p>▶ ○○○동 ○○○○○○앞 교차로가 태풍이나 강우시 상습 침수되어 사고 위험이 있어 관로 정비를 요청</p>	<p>[조사중 해결, 2023. 11. 13.]</p> <p>▶ 피신청기관은 민원 제기에 따라 7월 우수받이 준설을 실시하였으며, 재점검한바 관로공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p> <p>▶ 고충민원 조사중 10월에 우수관로를 정비하여 해결</p>	교통건설

연번	민원내용	심의·의결	분야
11	<p>중구 ○○○○ 집앞 보안등 설치 요청 (2023-고-0084)</p> <p>▶연립주택 앞에 있던 5~6년 전보안등이 철거된 후 재설치되지 않아 주변이 어두워 안전에 취약하므로 보안등 설치를 요청</p>	<p>[조사중 해결, 2023. 12. 11.]</p> <p>▶연립주택 일원에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간격이 50m 정도로 어두워 보안등 설치가 필요함</p> <p>▶조사중 필요성을 고려, 보안등을 설치하였으나 주거지 눈부심과 수면장애 등 불편을 야기하는 다른 민원이 발생하여 보안등에 차광막을 설치하여 눈부심 예방과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해결</p>	교통건설
12	<p>북구 ○○동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산책로 정비 요청 (2023-고-0085)</p> <p>▶북구 ○○동 소공원 산책로가 울퉁불퉁하여 장애인 휠체어 이동이 불편하므로, 이용이 원활한 산책로로 정비 요청</p>	<p>[조사중 해결, 2023. 12. 11.]</p> <p>▶산책로 중 일부만 판석으로 포장되어 평탄하지 않음</p> <p>▶피신청기관은 도시숲 관리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에는 신청인이 요청한 장애인 휠체어 이용이 편리한 산책로 마감 계획이 반영되어 있어 고충을 해결</p>	환경녹지
13	<p>남구 팔등로 ○○번길 관로 침범 나무뿌리 제거 요청 (2023-고-0089)</p> <p>▶집중호우 시 남구 팔등로 ○○번길이 배수가 불량하여 침수되므로 관로를 침범한 나무뿌리 제거 요청</p>	<p>[조사중 해결, 2023. 12. 18.]</p> <p>▶신청인의 고충에 따라 피신청기관이 현장을 확인한 바, 관로를 침범한 나무뿌리는 없었으며 조사중 피신청기관은 신청지 주변 배수관로를 준설하여 낙엽 등을 제거하여 해결</p>	교통건설

202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





V.

기타 활동 분야 실적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상담실 운영
2. 현장 중심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3. 권익구제기구로서 대외활동을 통한 위상제고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강화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상담실 운영

운영배경

- 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받은 권익침해 및 불편·부담 사항에 대해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독립공간 필요
- 신청인이 다른 사람의 시선·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상담 가능

운영방법

- (상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상담실에서 위원 1명이 순번으로 1대1로 집중 상담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제공
 - 상담시간 : 평일 09시~18시
- (처리) 내용에 따라 단순안내 사항은 행정절차나 처리기관을 안내하고, 위원회의 직접조사가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으로 접수·처리

기대효과

-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신청인과 직접 상담하여 보다 깊게 듣고, 이해하여 공감대 형성, 충분한 소통으로 고충민원 처리 만족도 제고

2 현장 중심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운영목적

- 시민을 직접 찾아가 시민의 다양한 고충·생활민원 청취, 상담으로 접근성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고충뿐만 아니라 생활민원(법률, 건축, 세무 등) 등 시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시정만족도 제고

운영현황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년차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자 분기별 현장 활동 계획에 따라
 - 1~3분기는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여 3회 60건을 상담하고, 19건은 고충민원으로 직접조사·처리
 - 4분기는 “불편제로!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운영에 발맞추어 현장 고충상담 부스를 운영, 3회 19건을 상담하고 5건은 고충민원으로 직접조사·처리
- 시민을 찾아가서 분야별 민원상담과 고충민원 직접조사·처리로 따뜻한 시정구현

고충민원 처리현황 : 총 24건

- (해결) 14건 : 의견표명 7, 조사중 해결 6, 합의 1
- (안내) 10건 : 심의안내 3, 이송 6, 기각 1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동구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2023. 3. 29.)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울주군 언양읍 행정복지센터(2023. 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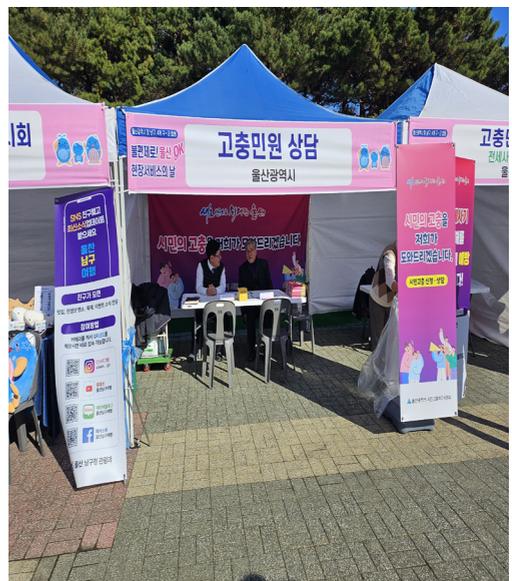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2023. 9. 18.)



(울산 OK현장서비스의 날) 중구 울산종합운동장 보조구장(2023. 11. 7.)



(울산 OK현장서비스의 날) 북구청 광장(2023. 11. 14.)



(울산 OK현장서비스의 날) 남구 달동문화공원(2023. 11. 22.)

3 권익구제기구로서 대외활동을 통한 위상제고

추진배경

- 권익보호기구로서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상 제고
- 국내·외 우수 옴부즈만 기관과 교류협력을 통해 우수한 제도 및 사례 교류, 벤치마킹으로 역량강화

활동현황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정회원 활동 전개
 - *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 2021. 3. 2. : 가입 신청 ※ (사무국) 오스트리아
 - 2021. 5. 19. : 정회원(투표권 및 입후보권을 가짐)
- 권익위 주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 개최
 - (일시) 2023. 2. 3.(금) 13:30 ~ 15:30
 - (장소) 울산광역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
 - (주관) 국민권익위원회
 - (참석) 20여 명
 - 권익위 : 김태규부위원장, 고충처리국장, 민원조사과장 등
 - 울산시 : 권익인권담당관, 시민고충처리위원(시, 남구·북구·울주군)
 - 양산시 : 시민고충처리위원
 - 주요내용 : 울산·경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 해외 세계옴부즈만 도시와 교류·협력
 - (일시) 2023. 5. 15. ~ 5. 18.
 - (장소) 일본(가와사키시, 니가타시, 오사카부)
 - (내용) 옴부즈맨 제도 및 사례 교류·협력, 공개공지 시찰 등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강화

추진배경

- 고충민원 조사·처리 절차, 우수사례 조사 등으로 역량을 강화
-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고충민원 관련 각종 법규, 지침 연찬으로 시민고충 해결력 제고, 따뜻한 시정 구현

추진실적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교육 참석
 - (일시) 5. 3. / 7. 26. ※ 5월 4명, 7월 1명 / (장소) 서울 등
 - (내용) 고충민원 처리제도·대응기법, 보고서 작성 방법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일시) 9. 25. ~ 9. 26. / (장소) 강릉
 - (참석) 8명(시민고충처리위원, 고충민원지원팀)
 - (내용) 고충민원 상담·처리기법 특강, 특화거리 견학 등
- 국민신문고·고충민원 담당자 워크숍 개최
 - (일시) 10. 18. / (장소) 울산 북구 산하동
 - (참석) 44명(시민고충처리위원, 국민신문고·고충민원 담당자 등)
 - (내용) 민원처리법령 및 고충민원 처리사례 교육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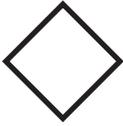
- 고충민원 처리능력 배양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연찬 지속 추진
 - 중앙정부 교육, 자체 워크숍·선진지 견학, 민원처리 사례 조사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2023. 9.)



국면신문고 · 고충민원 담당자 워크숍(2023. 10.)



VI.

주요 고충민원 처리사례

1. 시정권고
2. 의견표명
3. 합의·조정
4. 조사중 해결

1. 시정권고

1 봉안당 설치 신고수리 취소 시정 요구

민원표시/의결일자	2023-고-0052 봉안당 설치 신고수리 취소 시정 요구 / 2023. 7. 17.
신청인 / 피신청인	○○○(○. ○○○) (울산 울주군) / 울주군수 (노인장애인과장)
결정결과	시정권고(주심위원 : 윤정록)

■ 신청취지 및 이유

- 가. 2020년 ○월 ○○일 울주군 ○○면 ○○리 ○○○-○ 종교용지에 ○○○(○. ○○○) 명의 로 봉안당 설치 신고가 수리(이하 '이 민원 신고'라 한다)되었으나,
- 나. 2022년 ○○월경 변경신고 관련 문의 중 울주군에서 당시 신고 수리에 하자를 발견하자, 2023년 ○월경 신고사항 이행통지에 대한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통보받았다.
- 다. 이에, 2023년 ○월 ○○일자로 ○○○ 명의로 소유권 변경하였고, 의견제출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취소처분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니 처리하여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 가. 2020년 봉안당 설치 신고 수리 당시, 해당 사찰의 소유자는 개인(신청인 및 신청인의 자녀)의 명의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수리가 되었다.
- 나. 이후, 2022년 ○○월 경 신청인과 변경신고 관련 상담 중 “가 항목”에 대해 발견하여, 몇 차례의 설명 후 2023년 ○월 신고사항 이행통지에 대한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이 이루어졌고, 의견제출 기간은 하자의 치유기간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 다. 신고에 있어서 보완의 경우는 행정처분 이전, 신고 신청 당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해당 사안은 수리 이후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취소 이후 새로운 신고가 필요하다.
- 라.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359 판결 참조). 이에, 민원인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고, 신청인에게 해당 신고사항 이행통지(수리) 취소 후에 요건을 갖춘 새로운 신고로 신청할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관련 개요

- 신고명 : 화장시설(봉안당) 설치 신고[종교단체 봉안당]
- 소재지 : 울주군 ○○면 ○○리 ○○○-○
- 건축면적 : ○,○○○.○○㎡(봉안당 면적 ○○○.○○㎡, 봉안안치구 수 ○,○○○)
- 수리일자 : 2020. ○. ○○.

나. 이 민원 관련 그간 추진 상황

- 2020. ○. ○. :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신고 접수
- 2020. ○. ○○. :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신고 수리(이행사항) 통지
- 2022. ○○. : ○○사에서 종교단체 봉안당 변경신고 관련 문의 중 수리(이행사항) 하자 발견
- 2023. ○. ○○. :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에 대한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2023. ○. ○○. : 의견 제출(신청인 →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
 - 종교단체명 변경으로 단체명 변경
 - 부동산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보완 중
 -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에 대한 취소가 아닌 변경 및 보완사항 이행통지로 변경 요청
- 2023. ○. ○○. : ○○○(○. ○○○)로 소유권 변경 등기 완료

■ 쟁점

이 민원 신고 수리 후 하자를 치유하였으나, 수리 취소 대상 여부

■ 판단

가. 「민원처리법」 제22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

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 처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이 민원 신고는 최초 신고 당시 피신청인 측에서 신고의 하자를 지적하고 보완 요청을 해야 했으며, 만약 보완하지 않았으면 관련 법에 따라 반려가 되어야 했을 사항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이 민원 신고의 처리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신고 하자를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하거나 안내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 이 민원 신고서 서식에 신고인 제출서류 란에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신고 당시 제출이 되었는지 피신청인에게 최초 신고 당시 제출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등기부등본은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사찰 고유번호증, 지적도, 건축물대장만 첨부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신고서 양식에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으로 토지등기부 등본이 되어 있음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소유권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예상이 되어, 피신청인측에 ① 등기부등본 확인 여부 ② 종교단체 대표인 ○○○ ○○ 스님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소유주로 해석하여 인정하고 수리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이 민원 신고 수리 관련 내부 검토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해당 자료의 부재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적인 사실 확인에는 한계가 있었다.

라. 또한 신청인이 2023년 ○월 ○○일 ‘불안당 신고수리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통보받은 후 문제점을 인지하고 2023년 ○월 ○○일 ○○○(○. ○○○)로 시설물 명의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전술한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해당 사안은 수리 이후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취소 후에 요건을 갖춘 새로운 신고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마. 법원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 1359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고,

바.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사. 「행정절차법」 제4조는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하고,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민원 신고 수리 후 봉안당 설치를 위해 약 〇〇,000,000원 이상을 투자하여 설계도 및 조감도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고,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로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이 민원 신고의 경우 취소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신청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하므로 행정청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시정권고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신청인은 2023. 〇. 〇〇. 신청인에게 행한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에 대한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〇. 〇〇〇)’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조치결과 ⇒ 수용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에 대한 취소처분 사전통지’ 처분 취소)

2. 의견표명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및 반환 청구

민원표시/의결일자	2023-고-0003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및 반환 청구 / 2023. 2. 21.
신청인 / 피신청인	○○○의 대리인 ○○○ (울산 울주군) /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결정결과	의견표명(주심위원 : 박호수)

신청취지 및 이유

- 가. 자차 사고 처리 중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려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고지서를 받았는데, 실수로 의견 제출 전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었다.
- 나. 의견 제출을 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남구청에 납부한 과태료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납부한 이상 과태료가 확정되어 반환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는 부당하니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 주고, 납부한 과태료는 반환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위 신청인은 ○○ ○ ○○○○ 차량 운전자로, 2022년 ○○월 ○○일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가 되었으며, 자진 납부내역이 확인된다.
- 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는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위반일 이후 7일 내로 발송되고 있다. 신청인은 위 절차를 몰라 과태료를 납부하였다고 하지만, 발송 고지서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납처리가 완료된 건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고,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나 반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는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자진납부와 동시에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종료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의 자진 납부시기에 관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제출 하도록 한 것 외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자진 납부가 완료되었다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는 종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뒤편에 의견 진술 사항이 안내되어 있지만, 사전고지기간 내 최초 과태료 부과에 관해 민원응대 시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22. 00. 00. 12:15경 단속 지점인 울산시 남구 옥현로 000000 앞
서, 커브를 돌면서 직진하던 타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자차사고를 처리하던 중 지나가
던 행인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정차 위반 신고를 하여 단속(이하 '이 민원 단속'이라 한다)
되었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2022. 00. 00. 12:47 및 같은 날
12:49경 2분 간격으로 질서위반행위(주정차금지구역에서 신청인 소유의 차량을 주정차한
행위)를 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피신청인은 2023. 0. 0.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전 사전통지 고지서(과태료 40,000
원, 감경납부액 32,000원, 의견제출기한 2023. 0. 00.)를 신청인의 주소지에 발송을
하였고, 같은 해 0. 0. 사전통지서가 우편함에 수취되었고, 같은 해 0. 0. 신청인은 사전
통지 고지서에 따른 감경납부액 32,000원을 납부하였다.

■ 쟁점

이 민원 처분 취소 및 기 납부한 과태료 반환 가능 여부

■ 판단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신청인이 단속을 당한 시점에 타
차량과의 사고가 일어난 후, 자차 사고 처리를 위해 주정차를 했다는 점이 명확한 바, 당시
피신청인이 행한 이 민원 단속 과태료 처분이 이유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통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의견 진술 대상이 명시되
어 있는데, 그 중 6번 항목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첨부 서류로 고장차량, 사고차량 보험회사신고확인서가 제시되어 있는 바, 신청인이 기존
절차대로 의견 제출을 하였다면, 이 민원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나. 피신청인은 위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이 민원 단속에 대한 처분 취소 및 반환은 불가하다고 안내를 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며칠 뒤 바로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점을 보았을 때, 이 민원 처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 납부의사를 가지고 자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과태료 납부의 법적 의미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 다. 대법원은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701 판결 참조). 그리고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과오납된 과태료를 반환하는 절차에 대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로 규정하는 바는 없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8조는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해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6조 또는 국고금관리법 제15조의 과오납금의 반환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신청인이 자차 사고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주정차위반 구역에 주차를 한 것이 명확한 점 ②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이 과태료 납부의 법적 의미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진정 자진 납부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납부를 한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신청인 측이 적극행정을 통해 신청인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의견표명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보고,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호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신청인은 2023. ○. ○. 신청인에게 행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이 같은 해 ○. ○. 납부한 과태료(32,000원)를 반환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조치결과 ⇒ 수용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처분 취소 및 과태료 반환)

2 태화강역 앞 버스승강장 재설치

민원표시/의결일자	2023-고-0029 태화강역 앞 버스승강장 재설치 / 2023. 5. 12.
신청인 / 피신청인	○○○(울산 남구) / 울산광역시장(버스택시과장)
결정결과	의견표명(주심위원 : 윤정록)

신청원인

2021년 동해선 태화강역 전철이 개통되면서 울산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존 태화강역 일원에 설치된 삼산방향 버스승강장(이하 “이 민원 승강장”이라 한다)이 폐지되면서 인근지역 주민·노약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바, 폐지한 이 민원 승강장을 다시 설치하여 주기 바란다.

피신청인 등 주장

- 가. 삼산로 일원은 대형유통시설, 아파트 단지, 교육·서비스 등의 생활·상업기반시설과 인구의 밀집도가 높으며, 각 지역으로의 유동인구 운송을 위한 일반차량과 대중교통 노선이 집중되고 있다.
- 나. 산업로 일원은 산업 물동 차량과 유동인구 운송차량이 혼재·집중되어 차량 운행 속도가 느린 반면, 도로 여건상 대중교통 몰림 현상과 시내버스 정차로 인한 차량 대기열이 길어지며 무리한 차선변경 시도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 다. 특히, 태화강역 통합 승강장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 이용객 대부분은 삼산로에서 승·하차 하고 있으나, 이 민원 승강장을 이용하는 소수 이용객 지원을 위한 시내버스 정차와 대형버스 몰림 현상은 교통체증 병목현상의 주된 요인이 되어 도로·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 라. 산업로와 삼산로 교차지점은 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 확장과 시내버스 전용차로 설치 등 물리적 개선이 불가하고 신호체계 개선만으로는 교통분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동해남부선 개통에 따른 광역전철 이용객 증가는 향후 교통 혼잡도와 안전사고 발생을 가중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마. 또한, 삼산동 일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대부분은 삼산로를 중복 운행하는 장거리 노선으로, 남구 일원 교통 혼잡도 개선과 시내버스 운행 효율성 제고 계획에 따라 노선별 중복 운행구간을 정비·단축하여 실수요에 부합하는 버스운행 확대와 환승체계 강화를 위한 주요 거점 공간 구축이 필요하다.

바. 태화강역 중심의 시내버스 운행체계는 산업로와 삼산로 일원의 교통량 분산과 혼잡도를 개선하고 광역교통과 시내버스 이용객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위한 버스운행 확대와 환승편의 제고 등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노선체계 전면 개편의 핵심으로 이 민원 승강장 철거는 타당하다.

■ 사실 관계

가. 그 간 이 민원 승강장 관련 민원처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22. ○. ○. :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 ○○. 회신)
 - 신축 역사 앞 도로개통 및 진출입 체계 변경으로 추진된 사항이며 산업로 상 정류소의 경우 태화강역 내 시내버스 회차시설의 이전으로 폐지가 불가피하여 태화강역 정류소 통합 운영을 결정하였다고 답변
- 2023. ○. ○○.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고충접수 동일 민원인, ○.○○. 회신)
 - 철도 연계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한 태화강역 2단계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3년 하반기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향후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 2023. ○. ○○. : 남구 옴부즈만 민원 진달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2023. ○. ○○. : 태화강역 현장 간담회
 - 참석 : 시고위 3, 남구 감사관 2, 시 버스택시과 3, 버스노조위원장·위원 10

나. 태화강역 광역전철 개통에 따른 기존 태화강역 승강장 폐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승강장 운영현황 : 태화강역 앞 산업로변 기존 버스승강장 2개소(삼산 방향 1, 명촌교 방향 1) 폐지, 태화강역사 정류소 통합운영
- 폐지 시행 : 2022. ○. ○○.
- 승강장 이용현황 : 표1, 표2 참조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사진1, 2, 위치도1, 2 참조

☑ <표1> 폐지전 기존 승강장 이용현황

정류소 이름	정류소 번호	방면	노선번호	이용객 현황(명)	
				2021년	2022.1.1~2.25
계	2개소	23개노선		208,003	27,733
태화강역	40343 (이 민원 승강장)	삼산 방향 (11개 노선)	108	2,621	254
			124	5,710	529
			126	4,225	344
			133	6,703	709
			134	1,237	95
			401	14,625	1,177
			482	3,538	313
			492	3,642	328
			712	3,365	294
			916	476	83
			5001	6,264	436
태화강역	40344	명촌 방향 (12개 노선)	108	8,441	1,132
			124	29,887	5,324
			126	10,325	1,161
			133	28,971	3,357
			134	4,090	576
			401	42,991	5,176
			482	8,761	1,904
			492	8,280	1,523
			712	7,741	1,813
			808	2,837	491
			916	1,259	327
			5001	2,014	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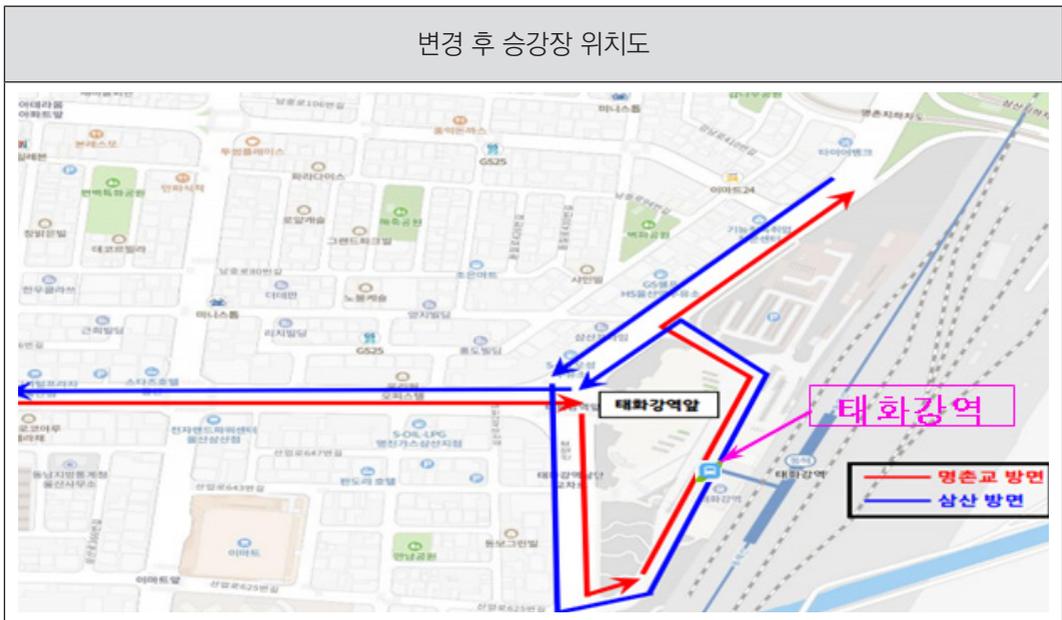
☑ <표2> 신설 태화강역 통합 승강장 운영 현황(46개 노선)

구분	방향	이동경로	
		변경 전	변경 후
태화강역 경유 (11개 노선)	삼산 ↔ 명촌교	이마트앞~태화강역~ 평창리비에르 아파트앞	이마트앞~태화강역정문교차로~ 태화강역~태화강역 출구 교차로
	울산도서관 ↔ 명촌교	울산도서관~태화강역~대산빌라	울산도서관~태화강역정문교차로 ~태화강역~태화강역 출구교차로
태화강역 기종점 (35개 노선)	태화강역앞 ↔ 태화강역	이마트앞~태화강역앞~태화강역	이마트앞~태화강역앞~태화강역
	태화강역앞 ↔ 태화강역 남단 교차로	이마트앞~태화강역앞~ 태화강역 남단교차로~태화강역	이마트앞~태화강역앞~ 태화강역 정문교차로~태화강역

☒ <사진1> 이 민원 승강장 변경 전·후 전경



 <위치도 1> 이 민원 승강장 변경 전·후 위치도



다. 이 민원 승강장과 신설 태화강역 및 주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승강장 ~ 신설 태화강역 길이(L=542m)



 이 민원 승강장 주변 버스승강장 위치도



판단

가. 피신청인은 산업로 상 이 민원 승강장으로 인해 ①동구와 북구에서 출발한 노선버스들이 이 민원 승강장 청차 후 태화강역사 진입하는 경우 급격한 차로변경에 따른 안전한 운행이 어렵다는 버스업체와 승무원의 의견과 급격한 차로변경에 따른 산업로 상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점, ②이 민원 정류소를 이용하는 승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양청구아파트 주변에는 태화강역까지 연계되는 버스노선이 다수 있고, ③ 이용객도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민원 승강장을 폐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신청인은 2021년 동해선 태화강역 광역전철이 개통되면서 기존 태화강역 일원에 설치되어 있던 삼산 방향의 이 민원 승강장이 없어져 해당지역 버스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노약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승강장을 다시 설치하여 주기를 호소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태화강역 전철이 개통되면서 갑작스럽게 늘어난 철도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울산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교통체계를 개선하면서 일반 시내버스 노선 114개 중 46개의 노선(40%)을 집중 투입하여 태화강역 이용객들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으나, 버스노선 개편에 있어 태화강역을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또 다른 부분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되어 왔다.

태화강역 통합 승강장이 신설되고 이 민원 승강장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폐지된 승강장을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불편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했으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민원 승강장의 폐지로 기존 이용자가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도로폭 40m 이상의 8차선 도로를 건너고 1km 정도를 더 걸어가서 태화강역 통합 승강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와 같이, 이 민원 승강장의 기존 이용자들은 새로운 통합 승강장을 이용하기에는 접근이 어렵고 거리상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 2021년 기준으로 연간 20여만명 이상이 이 민원 승강장을 이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태화강역 통합 승강장까지 가서 버스를 이용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넉넉히 짐작된다.

나아가 이 민원 승강장을 경유하여 삼산방향으로 운행되던 모든 노선버스가 태화강역 통합 승강장을 거쳐 운행하는 것으로 개편되면서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여 분 더 늘어난다는 점에서 기존 버스 이용객보다는 태화강 전철이 개통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노선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라. 그렇다면, 동해선 태화강역 광역전철이 개통된 지도 1년 6개월이나 지났고 철도 이용객은 개통 초기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폐지된 이 민원 주차장을 재설치하여 46개의 노선 중 일부 노선을 태화강역을 경유하지 않고 삼산으로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철도 이용객에 대한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인다.

무엇보다 버스노선 개편 계획으로 다수 기존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 민원 승강장을 재설치하여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태화강역 통합 승강장을 경유하지 않고 삼산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 : 의견표명

따라서, 신청인의 민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신청인은 2021년 동해선 태화강역 전철 개통에 따라 폐지한 태화강역 앞 삼산방향 버스 승강장을 재설치하고 노선버스를 운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조치결과 ⇒ 수용(버스승장강 재설치 및 노선버스 운영)

3 | 전남도 태풍시 유실된 논 등 피해복구 요청

민원표시/의결일자	2023-고-0037 전남도 태풍시 유실된 논 등 피해복구 요청 / 2023. 6. 12
신청인 / 피신청인	○○○(울산 울주군) / 울주군수(농업정책과, 건설과)
결정결과	의견표명(주심위원 : 윤정록)

■ 신청원인

신청인은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내습시 태풍으로 유실된 신청인 소유의 ○○면 ○○리 ○-○번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논 100㎡ 정도에 대해 피해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어떤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신청인의 농지와 하천이 유실되어 피해 신고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보수되지 아니하여 시간과 관리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으므로 조속히 보수하여 주기 바란다.

■ 피신청인 등 주장

가. 농업정책과

- 신청인의 농지는 재난지수 97.75이며, 재난지수 100 미만으로 국비 또는 군비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재난지수 97.75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재난지수 300 미만은 경미한 피해로 보아 국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재난지수 100 미만에 대하여 제4조에 불구하고 군비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 건설과

- 2022년 ○월경 ○○면에서 해당 민원이 포함된 내용의 태풍 힌남노 피해내역을 피신청인 건설과로 전달하였으나, 해당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건설과 내부 업무분장 변경 등의 사정으로 민원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유선 전화로 해당 민원에 대해 2023년 ○월 초에 접수를 받아 현장 확인을 하였고, 2023년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추경 예산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에 대해 2022. ○. ○. 민원접수 및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2022. ○. ○. ○.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였는데, 신청인은 재난지수 100 미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표1> 태풍피해신고 현황 (농경지 피해)

대상농지	농지면적(㎡)	피해면적(㎡)	피해종류	재난지수
합계	2,000	475		97.75
울주군 ○○면 ○○리○-○	1,000	475	벼 도복	29.75
울주군 ○○면 ○○리 ○○○	1,000	50	농경지 매몰	68

나. 피신청인은 2023년 ○월에 이 민원 토지 일원이 2022년 ○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하천 석축, 농경지 일부가 유실되어 피해를 보았으니 복구를 해달라는 전화민원을 접수하였다.

다. 2023. ○. ○○. 피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천의 석축(L=70m, H=2.0~3.5m)이 유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민원 토지 위치 및 유실부분



이 민원 현장사진



판단

가. 울산지역에 2022. 9월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힌남노의 내습으로 울주군은 인명사고, 침수, 붕괴, 유실 등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2022. 9. 28.자로 울주군 등을 포함한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울주군은 ○○읍, ○○면이 여기에 포함된다. 신청인은 이 민원 농지와 같은 리 ○○○번지 2필지 475㎡에 대해 농경지 매몰 등 피해를 입었다.

나. 신청인은 태풍피해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어떤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농업정책과)은 당시 신청인이 2022. ○. ○. ○○면사무소에 접수한 사항을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이 입력한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자료에 대하여 같은 해 ○○. ○.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결과, 신청인의 재난지수는 97.75로 산정되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8호에 따라 재난지수 300 미만은 재난 복구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제4, 5, 6조에 따르면, 군수는 사유시설피해에 대해서 가구당 재난지수가 100 이상 300 미만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0 미만은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은 재난지수가 100 미만에 해당하므로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자가 아니며, 피신청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사항이 아니다.

라. 또한,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와 ○○천의 유실에 따른 원상복구를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신청인(건설과)은 2022년 태풍 힌남노 내습에 따른 공공시설(○○천)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가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3년 ○월 신청인이 유선으로 피해신고를 하여 피신청인이 2023. ○. ○○. 피해지역을 확인한 결과, ○○천 석축 유실(L=70m, H=2.0~3.5m)에 따라 신청인의 농지가 유실된 사실을 확인한 점이 인정된다.

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재난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은 지방하천으로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피신청인은 하천관리청으로서 “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

사. 따라서, 피신청인은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피해복구와 하천의 정상적 기능유지를 위한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 의견표명

따라서, 신청인의 민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신청인은 한남노 태풍 시 유실된 ○○면 ○○리 ○-○번지 일원 농지 및 ○○천에 대하여 조속히 피해복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조치결과 ⇒ 수용(태풍 피해복구 완료)

4 두서면 수정내마을 상수도 공급요청

민원표시/의결일자	2023-고-0043 두서면 ○○○마을 상수도 공급요청 / 2023. 6. 19.
신청인 / 피신청인	○○○(울산 울주군) / 상수도사업본부장(울주사업소장)
결정결과	의견표명(주심위원 : 윤정록)

■ 신청원인

신청인은 2021년부터 울주군 두서면 ○○○마을(이하 “이 사건 민원마을”이라 한다)에 지방상수도 공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예산사정 등으로 상수도 공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왔으며,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를 공급하여 주기를 바란다.

■ 피신청인 주장

가. 두서면 일원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에 따라 이 사건 민원마을 인근에 있는 두서면 전읍리 대리, 월부, 양지마을에는 2020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였다.

나. 2021년도 다수인 민원, 2022년도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이 사건 민원마을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예산상의 사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각각 회신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23년도 당초예산에 “두서면 전읍리 ○○○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사업비를 반영하여, 같은 해 ○. ○○.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같은 해 ○. ○.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다.

라. 공사 발주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심의, 계약심사 등 절차 이행 중으로 2023년 ○ 월 공사 착공할 계획이다.

※ 배수관 부설구간 내 사유지는 토지사용승낙서를 공사와 병행하여 확보하여 추진

■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울주군에서 설치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지하수를 개발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나. 2020년경에 두서면 전읍리 대리, 월부, 양지마을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었다. 이에 따라 2021. ○. ○. 다수인 민원과 2022. ○. ○.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이 사건 민원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예산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두서면 전읍리 ○○○마을 배수관 부설공사”에 대해 2023년 당초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23년 ○월 ○○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같은 해 ○월 ○일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수도공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이 사건 민원마을 상수도 공사계획

- 사업명 : 두서면 전읍리 ○○○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 사업내용 : 배수관부설 (D100mm, L=2,304km), 가압장 (1개소)
- 사업비 : 1,040백만원

🗺 이 사건 민원마을 지방상수도 공급 관로 계획



판단

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등은 지하수·계곡수를 수원으로 이용하는 특성상 수질관리에 취약하고, 기후와 계절에 따라 유량 변동성이 커서 안정적인 급수를 어렵게 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지역의 급수 여건을 신중하게 점검하고 검토하여 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도법」제2조 제4항에 따라

-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나. 2020년에 울주군 두서면 중 대리, 월부, 양지마을에는 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민원마을은 이 지역의 인근임에도 불구하고 고지대에 위치하고 가압장 설치 등 추가시설 설치가 필요하여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도공급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마을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면서 여러 차례 상수도 공급을 요구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여 왔다.
- 다. 비록 신청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민원마을의 주민들은 마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거나 신청인 등과 같은 외지에서 이주해 온 대다수 주민은 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지 못하고 지하수를 개발하여 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신청인에 의하면,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가구 수는 전체 60가구 중에 50가구이고, 2016년도 발생한 경주지진 이후에 지하수가 감소하고 수질이 나빠졌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진과 지하수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인근 지하수도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민원마을의 다수의 주민들이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민원마을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예산을 2023년도 당초 예산에 10억원 정도를 확보하였고, ○월 ○일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라는 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민원마을 주민의 생존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추진 중인 배수관 부설공사에 대해, 조속한 발주와 공사추진에 있어 일련의 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속도를 더하여, 빠른 시일 내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결론 : 의견표명

따라서, 신청인의 민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울주군 두서면 ○○○마을에 빠른 시일 내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조치결과 ⇒ 수용(상수도 공사 완료)

5 울산축협가축시장 앞 농로 확장 요청

민원표시/의결일자	2023-고-0046 울산축협가축시장 앞 농로 확장 요청 / 2023. 7. 17.
신청인 / 피신청인	○○○(울산 울주군) / 울주군수(농업정책과장)
결정결과	의견표명(주심위원 : 윤정록)

■ 신청취지 및 이유

- 가. 울산축협가축시장 앞 위치한 울주군 상북면 ○○리 ○○○ 구거 637㎡(이하 '이 민원 농로'라 한다)는 울산축협가축시장과 인근 농지 경작자들이 다수 이용하는 곳으로,
- 나. 이 민원 농로는 진입로가 좁고, 급회전하는 선형으로 되어 있어 가축시장이 열릴 때마다 가축시장 진출입 차량, 이용자 차량, 인근 농지 경작자의 농기계 등이 서로 엉켜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 다. 이에, 진입 부분인 이 민원 농로 중 일부 상부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길을 넓혀 달라.

■ 피신청인 주장

- 가. 우리 군(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는 농업기반시설인 농로는 영농을 위한 농기계의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로의 폭은 4m 정도로 개설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도로는 현황상 폭이 7~8m 정도로 차량 교행 및 회전 반경에 문제가 없다.
- 나. 신청인이 요구하고 있는 구거 복개 및 도로 개설은 호우 시 막힘 등 재해 우려로 인해 불가능하며, 기존 도로가 충분한 폭을 가지고 있어, 농로의 기능(농기계 진출입)이 충분함에 따라 우리 군(농업정책과)에서 농로 확장 개념으로 구거를 복개할 이유는 없다.
- 다. 또한, 구거 덮개(그레이팅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를 득하여, 울산축협가축시장에서 설치해야 될 사항이며, 재해 우려가 없고 시설 기준에 맞게 시설물 설치 계획이 있다면, 울산축협가축시장 이용자 편의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사용 허가 검토가 가능하다.

■ 사실관계

가. 울산축협가축시장 현황

- 소재지 :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 540-2번지 일원
- 규모 : 대지 12,210 m², 건물 2,306 m²
- 거래능력 : 소(牛) 일/150두, 연/10,800두
- 이용차량 : 연간 12,000대(축산인 및 농업용 차량, 농기계 등)

나. 이 민원 관련 그간 추진 상황

- 2010. 00. 00. : 도시계획시설(가축시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주군 고시 제2010-0000호)
- 2011. 00. 00. : 도시계획시설(가축시장)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울주군 고시 제2011-00호)
- 2012. 00. 00. : 도시계획시설(가축시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울주군 공고 제2012-00000호)
- 2022. 00. 00. : 다수인민원 접수(울산축협 → 울주군청)
- 2022. 00. 00. : 현장 확인
- 2022. 00. 00. : 다수인 민원 검토 및 처리계획 보고(울주군청 농업정책과)
- 2022. 00. 00. : 다수인 민원 회신

다. 울산축협가축시장은 기존 가축시장이 KTX 역세권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2011년 현재 위치인 상북면 지내리 540-2번지 일원에 면적 12,210m²규모로, 울산시 축산 농가들의 축산경영에 보탬이 되고, 지역의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울산축협에서 조성하였다.

라. 신청인 측에서 제시한 사진에 따르면 가축시장이 열릴 때마다 이 민원 농로가 가축시장 진입 차량, 주정차 차량으로 뒤엉킴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민원 농로 차량 혼잡 현황



이 민원 농로 구거 복개 요청 구역도



쟁점

이 민원 농로 중 일부 상부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장 가능 여부

판단

가. 우리 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해 본 결과, 울산축협가축시장이 조성된 이후 이 민원 농로 일부 구간을 복개하여 농로가 확장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세월이 흘러 울산축협가축시장을 이용하는 차량 및 인원이 증가하고, 구제역 등 각종 가축 질병 발생 빈도 증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장기간 대유행 등으로 울산축협가축시장 내부는 GPS 부착 차량이 아니면 진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진입로로 쓰이던 이 민원 농로 구간이 주정차 공간이 되어 버리고, 가축시장 진입을 위한 차량이 방역 절차 강화로 장기간 대기함에 따라, 기존 진입로인 이 민원 농로가 좁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에 울산축협에서는 위와 같은 불편을 해소코자 2022년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농로의 복개를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보이나, 피신청인은 기존 도로가 충분한 폭을 가지고 있어, 농로 확장 개념으로 구거 복개는 불가능하다고 회신을 하였다.

다. 다만, 2012년 도시계획시설(가축시장) 인가 조건에 건축협의 사항으로 도로 확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사진3 참조) 피신청인 측에서도 울산축협가축시장 설립 허가 당시 가축시장 이용 차량과 인근 경작자들의 농기계 등으로 인해 진입로가 혼잡해질 것으로 예측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준공 당시 도로 확장에 대한 인가 조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서류나 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위의 문제가 해소되었는지 파악이 어려우며, 도로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피신청인과 울산축협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미룸으로써 애꿎은 지역 농축산인들과 인근 농지 경작자들에게 큰 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에 내몰리게 하고 있는 현실이다.

라. 또한, 도시계획시설(가축시장)이 2012년 준공이 됨으로써 이 민원 농로 일대의 관리주체가 피신청인으로 변경되었음이 명확하고, 이에 피신청인은 농로 관리주체로서 이 민원 농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축산법」제3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법」제103조에는 “지역축협은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9조 제2항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 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같은법 제9조 제3항 “중앙회의 회장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축산법」과 「농업협동조합법」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시장에 지원을 해준 사례에 비추어볼 때(표1 참조), 지방자치단체는 축협과 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 되는 소규모 사업도 외면하고 축협과 서로 떠넘기기식 책임 공방만 하고 있고, 결국 농축산인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바.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농로 폭이 농로 개설기준에 따라 개설이 되었으므로 농로로서 좁지 않고,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그 구간은 대형 곡각 특이 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대형트럭의 진입로와 농로가 겹치는 복합기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② “대형차의 원활한 회전반경 확보와 통행안전성 향상을 위해 농로의 부분 확장(배수로 복개 또는 스틸그레이팅 설치, 용지 매입 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도로교통공단의 전문가 검토의견이 있었고(첨부2 참조), 이에 기존 복개 구간의 좌우를 연장하여 기존 복개 구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형 차량 회전 반경 부족



☑ 타 시도 가축시장 지원 사례

시·도명 (지원 연도)	가축시장	사업명	세부내역	지원액
전남 화순군 (2022년)	화순축협가축시장	가축유통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계류장, 최첨단 전자 경매 시스템, 사무 실, 참관실, 주차장 등	도·군비 136,000천원 자부담 59,900천원
충북 옥천군 (2017년)	옥천가축시장	가축시장운송비 지 원	송아지 두당 5만원 지원	군비 50,000천원
충남 예산군 (2023년)	예산가축시장	스마트가축시장	전자경매시스템 등	도비 500,000천원 군비 1,000,000천원 자부담 8,500,000천원
파주 연천군 (2022년)	파주연천가축시장	스마트가축시장	스마트 가축시장 플 랫폼 시설	도비 10,000천원 군비 150,000천원 자부담 2,550,000천원
전남 (2017년~)	함평, 영암, 보성, 영광, 해남, 장흥 축협가축시장	가축시장현대화 사 업	계류장, 경매장, 주 차장, 소독조	도비 매년 17억원

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울산축협가축시장 설립 허가 당시 피신청인 측에서 가축시장 이용 차량 도로와 인근 농경지 경작자들의 농로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점, ② 이 민원 농로의 관리주체가 피신청인임이 명확한 점, ③ 「농업협동조합법」 및 「축산법」에 축협과 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협력하도록 명시된 점, ④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가축시장에 대한 지원 사례가 있는 점, ⑤ 도로교통공단 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기존 복개구간의 활용도 제고, ⑥ 축산업의 발전, 지역 축산인과 인근 농지 경작인들의 안전 도모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이 적극 행정 차원에서 구거를 복개하여 이 민원 농로를 확장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민원 농로 구거 복개 위치도



결론 : 의견표명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제1항 제3호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신청인은 울산축협가축시장 인근 농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울주군 상북면 ○○리 ○○○ 구거 일부를 복개, 농로를 확장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조치결과 ⇒ 수용(2024년 당초예산 반영 및 2024년 내 공사추진 계획)

6 반천현대아파트 앞 자전거도로 가로등 추가 설치 요청

민원표시/의결일자	2023-고-0048 반천현대아파트 앞 자전거도로 가로등 추가 설치 요청 / 2023. 7. 20.
신청인 / 피신청인	○○○(울산 울주군) / 울주군수(건설과장)
결정결과	의견표명(주심위원 : 이상일)

■ 신청원인

언양 반천현대아파트와 대암교 사이 자전거도로(이하 '이 민원 지역'이라 한다)에 가로등이 부족해 시민 불편 및 범죄 발생 등 우려가 있으니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2020년 1월부터 태화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국가하천 내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 중이며, 2021년 상반기에 반천현대아파트 뒤편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일원에 가로등을 8주 신설하는 등 이 민원 지역 일원에 가로등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

나. 국가하천 내 점용시설(가로등)에 대해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지원이 불가하므로 가로등 미설치 구간 중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2024년 군 자체 예산 확보 또는 지방하천 유지관리비(시 보조금) 예산 활용 가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 아울러, 친수시설물 설치에 대해 국가하천 점용허가(울주군청 → 낙동강유역환경청)를 신청하여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설치 검토 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관련 그간 추진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023. ○○. ○○. : 고충민원 접수
- 2023. ○○. ○○. : 고충민원 의견 제출 협조 요청(시고위 → 울주군청 건설과)
- 2023. ○○. ○○. : 고충민원 이송(울주군청 건설과 → 언양읍)
- 2023. ○○. ○○. : 고충민원 의견 제출(언양읍 → 시고위)

- 하반기 보안등 신규 설치(1주)를 울주군청 도로과에 요청 예정
- 2023. 00. 00.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현장 확인
 - 참석자 : 신청인, 연양읍행정복지센터 담당팀장, 담당자
 - 내 용 : 구간 현장 확인, 가로등 1주 추가설치로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 울주군 건설과에 의견 제출 재요청
- 2023. 00. 00. : 고충민원 의견 제출(울주군청 건설과 → 시고위)

나. 이 민원 관련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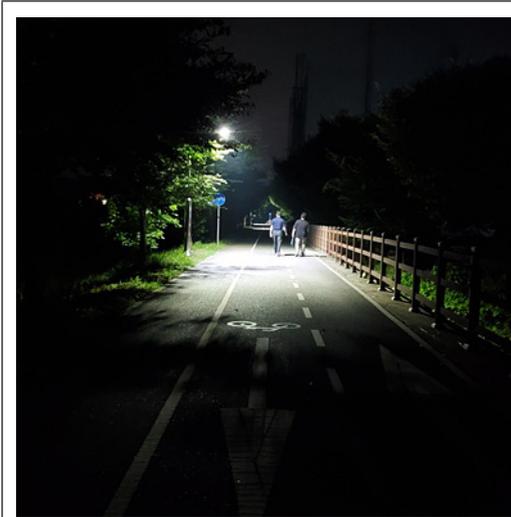
- 사업 명 :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 사업기간 : 2023. 3. ~ 12.(매년 시행)
- 총사업비 : 730백만원(2023년)
- 주요내용 :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L=29.74km

다. 2023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집행 조건 제6항 다목에는 “하천시설물 신규 설치,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 및 기타 우리 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보조금 교부기관에 제출하여 사업 타당성에 대한 협의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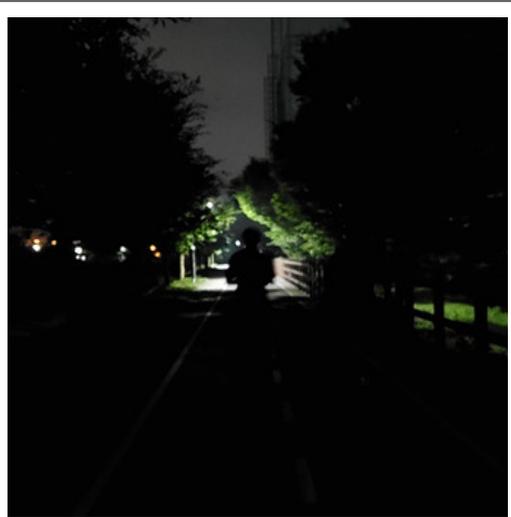
☒ 이 민원 지역 현황



 이 민원 지역 기존 설치된 태양광 가로등



가로등(기존) 있는 곳(PM11:00)



가로등 없는 곳(PM11:00)

쟁점

이 민원 지역 가로등 추가 설치 가능 여부

판단

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역 일원에 가로등 부족으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을 것이 예상되어 우선 언양읍에 이 민원을 이송한 후 언양읍에 할당된 신규 설치 보안등 10주 중 1주를 이 민원 지역에 우선 배정하여 신청인의 요구사항 일부를 반영할 것이라고 하였다.

나. 반면, 신청인은 보안등 1주 추가 설치만으로는 이 민원 지역을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객이나 산책을 하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우발적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일정한 거리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해 주기를 호소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2021년에 이 민원 지역 일원 내 어둠을 밝히기 위해 거리가 일정하지 않지만 태양광 가로등 6주를 설치하였고(사진 1 참조), 이어서 언양읍에서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오후 11시 이후 주변 골프 연습장의 영업 종료 후 골프연습장의 조명이 소등되면 가로등이 없는 구간에는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사진 3, 4 참조), 주민들이 이 민원 지역을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과 범죄 등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또한, 이 민원 지역은 자전거도로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야간에도 상당수의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어, 가로등이 없는 구간에 이르면 자전거 이용자들이 산책을 하는 주민들을 제때 발견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지리적·환경적으로 이 민원 지역의 이용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야간에 산책 및 운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다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기존에 주장하는 1주의 보안등 추가 설치로는 다수 이용객들이 심각하게 불편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 민원 지역에는 가로등 설치를 전면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함은 당연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기존 설치된 가로등 사이에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자나 산책 또는 운동을 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예방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의견표명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제3호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신청인은 언양 반천현대아파트에서 대암교 사이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일원에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조치결과 ⇒ 수용(2024년 당초예산 반영, 2024년내 가로등 설치 계획)

7 공중화장실 설치 요청

민원표시/의결일자	2023-고-0049 공중화장실 설치 요청 / 2023. 7. 24.
신청인 / 피신청인	○○○(울산 울주군) / 울주군수(건설과장)
결정결과	의견표명(주심위원 : 박호수)

■ 신청원인

울산시에서 백리대숲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산전다리에서 면허시험장 사이에 대나무를 식재할 때부터 수차례 화장실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설치가 되지 않아 산책로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이하 “이 민원 공중화장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달라

■ 피신청인 주장

- 가. 이 민원 화장실 설치를 요청하는 부지는 국가하천으로 건축법, 하수도법, 하천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상 건축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
- 나. 다만, 상북면 거리 1166번지 공원 내 신규 공중화장실을 설치 중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 다. 향후 울산 운전면허시험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 지정을 검토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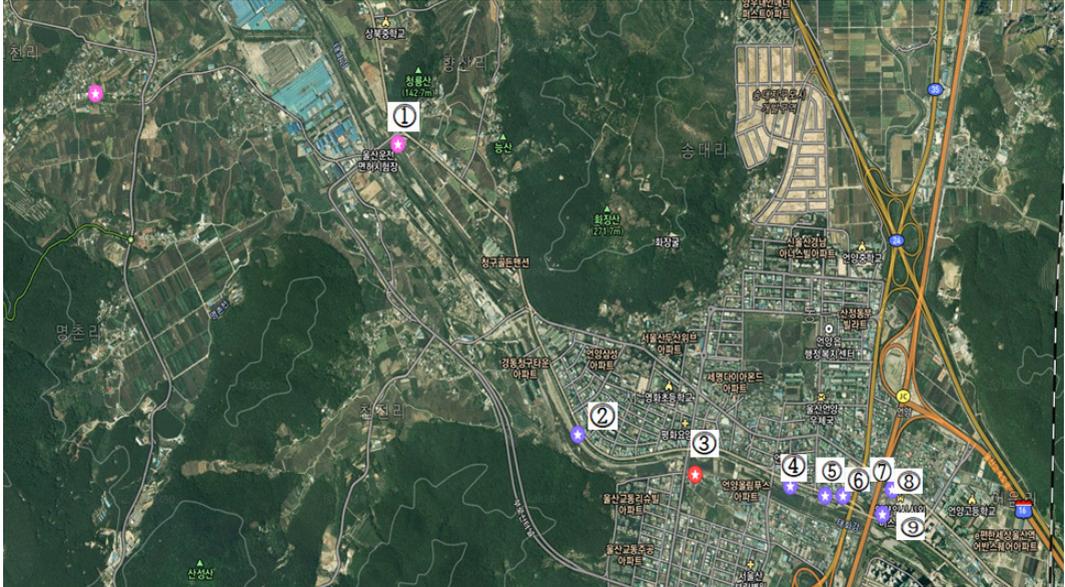
■ 사실관계

가. 그 간 이 민원 공중화장실 관련 민원처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월 : 지역회의 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신청
(내용)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1126-5번지 인근 이 민원 공중화장실 설치 요청
(답변) 부적합(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상 경관녹지 및 하천구역으로 건축협의 불가)
- 2023. ○○. ○○. : 고충민원 접수(제2회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상담)
(내용) 상북면 산전교 일원 이 민원 공중화장실 설치 요청
- 2023. ○○. ○○. : 고충민원 자료 제출(피신청인)
- 2023. ○○. ○○.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현장 조사

나. 언양·상북 일원 태화강 국가하천 인근 공중화장실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언양·상북 일원 태화강 국가하천 인근 공중화장실 현황 위치도



 언양·상북 일원 태화강 국가하천 인근 공중화장실 현황

연번	화장실명	주소	오물처리방식/설치년도
1	상북산책로변	상북면 향산리 603-80	수거식(포세식), 2015년
2	남천산책로	언양읍 서부리 395-137	수세식, 2019년
3	남천산책길	삼남읍 교동리 1499-283	수세식, 2022년
4	언양시장이동식	언양읍 남부리 320	수세식, 2008년
5	남부주차장1	언양읍 남부리 336-1	수세식, 2010년
6	남부주차장2	언양읍 남부리 336-1	수세식, 2010년
7	언양시장	언양읍 남부리 336-24	수세식, 1994년
8	공영주차장1	언양읍 남부리 82-27	수세식, 2017년
9	공영주차장2	언양읍 남부리 56-1	수세식, 2017년

☒ 언양·상북 일원 태화강 국가하천 인근 공중화장실 현황 사진



① 상북산책로변



② 남천산책로



③ 남천산책길(교동리)



④ 언양시장이동식



⑤ 남부주차장 1



⑥ 남부주차장 2



⑦ 언양시장



⑧ 공영주차장 1



⑨ 공영주차장 2

이 민원 공중화장실 설치 요청 위치도



판단

- 가. 울산광역시 백리 대숲 만들기 사업에 따라 대숲 옆으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평일과 주말에는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울산에서부터 상북면 석남사까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 나. 울주군 언양읍에서 상북에 있는 울산면허시험장까지 공중화장실 위치도를 보면, 사진 1과 같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따라 사이 사이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울주군 언양읍 언양시장 일원에 언양장터 주차장 공중화장실과, 1~2km를 지나 남천 산책로 제방 독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남천 산책로에서 약 1.8km를 지나면 울산면허시험장 인근에 상북 산책로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 태화강 상류부에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공중화장실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신청인은 울산면허시험장을 개방형화장실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답변하였으나, 기존 상북산책로변 공중화장실이 있고 울산면허시험장에서 6~7km를 지나서야 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주유소가 위치하고, 그 사이에 공중화장실은 없어 상북면 일원의 국가하천 일원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개선된다고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라. 피신청인은 울주군 상북면 거리 1166번지 일원 우물절 공원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우물절공원 공중화장실은 울산 면허시험장에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고, 더욱이 우물절공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0m 이상의 대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위험과 불편이 상존하는 장소에 위치해 있어, 종단으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공중화장실로 이용을 안내하는 것에는 다소 억지스러움이 있어 보인다.

마. 또한 상북면 일원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수도 적어서 자전거도로 이용자뿐만 아니라, 상북면 산전교에서 지현교 사이에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길천산업단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도 이 민원 공중화장실 설치의 필요하다 할 것이다.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상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울주군 상북면 산전교 인근에 이 민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태화강 국가하천 일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하는 상북면 주민과 시민들에게 편의 증진,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 의견표명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제3호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신청인은 울주군 상북면 주민과 시민들이 태화강 국가하천 일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울주군 상북면 산전교 인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조치결과 ⇒ 수용(2024년 당초예산 반영, 2024년내 공중화장실 설치 계획)

8 반천현대아파트앞 유실된 징검다리 복구 요청

민원표시/의결일자	2023-고-0050 반천현대아파트앞 유실된 징검다리 복구 요청 / 2023. 7. 17.
신청인 / 피신청인	○○○(울산 울주군) / 울주군수(건설과장)
결정결과	의견표명(주심위원 : 윤정록)

■ 신청원인

2016년 태풍 차바 이후 만들어진 반천 현대아파트 앞 징검다리(이하 “ 이 민원 징검다리”라 한다)가 홍수로 매몰, 유실되어 2022년 복구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여 이용이 불편하므로 지역 주민들이 예전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구하여 주기 바란다.

■ 피신청인 주장

가. 이 민원 징검다리 복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 협의 및 2022. 9. 태풍 힌남노 복구 등으로 업무가 과중하여 공사 시행이 지연 되었으며
나. 하천 내 공사로 장마기간 등 기상여건, 하천수위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성은 있으나 2023년 7월 중 공사를 재개하여 8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 사실관계

가. 그 간 이 민원 징검다리 공사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16. ○○. ○○. : 언양 태화강 징검다리 설치공사 준공
- 2021. ○. ○○. : 징검다리 정비 민원사항 추진계획 보고
- (주요내용) 하상정리 우선 시행 요청이 다수의 의견으로 수렴되었으며, 향후 징검다리 정비는 하상정리 후 추이를 지켜본 후 정비 시행 검토
- 2021. ○. ○○. : 언양 태화강 징검다리 일원 준설을 위한 장비임차 시행
- 2021. ○○. ○○. : 언양 태화강 하천정비공사 시행
(집중호우로 유실된 통행로에 징검다리 설치)

- 2023. 7월 현재 : 점용허가 이후 민원 등으로 현재까지 공사 미 추진

나. 그 간 이 민원 징검다리 민원처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20. ○. ○○. : 진정민원 접수(○○○, ○. ○. 회신)
 - (민원내용) 징검다리로 인해 퇴적토가 쌓여 수위가 올라가고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주변 농경지에 피해가 많으므로 철거 요청
 - (답변내용) 퇴적토는 긴급 장비임차로 조치 예정이며, 이미 설치된 시설물 철거는 주민불편사항을 고려하여 장기 검토하겠음을 답변
 - (조치사항) 2020. ○. ○. : 긴급장비임차로 징검다리 상류부 퇴적토 제거
- 2020. ○. ○. : 징검다리 철거 관련 주민의견 수렴(1차)
- 2020. ○○. ○. : 징검다리 보완요청 건의(○○. ○. 회신)
 - (민원내용) 퇴적토 제거, 징검다리 높이 및 간격조정, 콘크리트 포장 철거 등
 - (답변내용) 침수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중,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 정비 예정
- 2021. ○. ○○. : 주민의견 수렴(2차)
 - 존치요구, 철거시 재설치 민원발생 예상, 징검다리 일원 준설 요청
- 2021. ○. ○○. : 주민의견 수렴(3차)
- 2022. ○. ○○. : 징검다리 재설치 반대 다수인 민원 접수(○○○ 외 15인, 10. 21. 회신)
 - 다수의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한 징검다리를 반대 측 민원 제기로 철거하는 행위는 행정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징검다리 철거는 어려움을 회신
- 2022. ○○. ~ : 민원 접수(유선)
 - 징검다리 재설치 촉구 및 징검다리 재설치 반대 민원 다수
 - 징검다리 설치 반대 민원 해결을 위한 징검다리 간격 조정 등 검토

이 민원 징검다리 위치 및 현황도



이 민원 징검다리 설치완료, 침수·유실 사진



징검다리 설치완료 사진



징검다리 침수·유실 사진

☒ 이 민원 징검다리 침수현황 사진



☑ 이 민원 징검다리 공사 추진현황

- 공 사 명 : 언양 태화강 하천정비공사
- 위치 :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902-9번지(태화강)
- 기간 : 2021. 00. 00. ~ 2022. 0. 00. ※ 공사중지 : 2022. 0. 00.
- 공사내용 : 징검다리 설치
- 공 사 비 : 00백만원

판단

가. 피신청인은 2016년 00월에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반천현대아파트에서 총골마을로 건너 갈 수 있는 이 민원 징검다리를 태화강에 설치하였으며,

나. 신청인은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이 민원 징검다리가 침하, 매몰, 유실되어 2020년부터 신청인과 반천현대아파트 주민, 총골마을 경작자들이 수년에 걸쳐 불편함을 호소하며 복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징검다리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과 재설치를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을 접수하여 주민의견 수렴, 국가하천 하천관리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정비공사 정지 명령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이 민원 징검다리를 보수하지 않고 있어, 이 민원 징검다리를 이용해 왔던 주민들이 반천현대아파트에서 총골마을까지 약 2km를 더 걸어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다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징검다리가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주변 농경지에 피해를 유발한 다며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과 재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서로 대립하여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2020년 ○월부터 2021년 ○월까지 3차례에 걸쳐 언양읍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대다수 주민이 재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공사를 재개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하천점용허가 신청시 수리 검토로 “이 민원 징검다리로 인한 하천 수위 상승은 미미하다”는 결과를 도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 민원 징검다리가 반복적으로 침하, 매몰되는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은 다소 아쉬운 것으로 보여진다.

마. 또한 이 민원 징검다리가 설치된 지역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지역주민의 주장에 따르면 집중 호우시 태화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과 총골 마을에서 흘러 나오는 유수의 합류로 와류가 발생하고 토사와 골재가 퇴적되어 이 민원 징검다리가 침하, 매몰되는 것이라는 의견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이므로 평상시 유수 흐름과 수위를 고려하여 이 민원 징검다리의 높이와 간격을 적절히 조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바. 아울러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제4조, 제6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할 책임이 있다.

사.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징검다리 일원의 태화강 하천과 주변 현황, 유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① 이 민원 징검다리가 침하, 매몰되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와 간격으로 시공하고, ②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내 이 민원 징검다리를 복구하여야 할 것이다.

■ 결론 : 의견표명

따라서, 신청인의 민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신청인은 호우, 태풍 등으로 유실된 반천현대아파트 앞 태화강 징검다리를 빠른 시일 내 복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조치결과 ⇒ 수용(2024년내 하천점용협의, 주민의견 수렴 후 정비계획)

9 ○구 ○○공영주차장 이륜차 출입 요청

민원표시/의결일자	2023-고-0060 ○구 ○○공영주차장 이륜차 출입 요청 / 2023. 8. 28.
신청인 / 피신청인	○○○(울산 동구) / 동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결정결과	의견표명(주심위원 : 윤정록)

■ 신청취지

동구 ○○공영주차장(○구 ○○로, 이하 '이 민원 주차장'이라 한다)에 별도 이륜차 전용 주차 공간 부재 및 이륜차 번호판 인식이 불가능하여 요금 징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차장 내 이륜차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니 처리해 달라

■ 피신청인 주장

가. 현재 「주차장법」제6조의2(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주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하여야 한다.

나. 해당 지역은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이 아니므로, 이 민원 주차장 내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

다. 또한, 이 민원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이며,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주차요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 여건상 이륜자동차는 차량번호 인식기로 번호를 인식할 수 없어 요금부과가 불가능하므로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일반 차량과 형평성이 어긋난다.

라. 신청인 본인의 이륜자동차 번호를 등록 후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견에 대해, 이 민원 주차장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이므로 해당 이륜차의 출입 확인과 요금 징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관련 그간 추진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022. 00. : 00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관련 계획 수립, 공유재산 심의
- 2023. 00. : 00 공영주차장 운영계획 수립(무인, 유료 운영)
- 2023. 00. : 주차장 준공
- 2023. 00. : 시범 운영, 소유권 이전 등 공부 정리
- 2023. 00. : 00 공영주차장 내 이륜차 관련 전화 문의(신청인 → 피신청인)
 - 00공영주차장은 이륜차 주차 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무인 유료운영 예정이므로 이륜차는 차량번호 인식이 불가하여 현실적 문제로 이륜차 출입이 불가능함을 안내
- 2023. 00. : 본격 운영(무인, 유료 운영)

나. 이 민원 주차장 관련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주차장명 : 00 공영주차장
- 위치 : 동구 00동 0000000아파트 내
- 규모 : 지하 4층 / 연면적 6,000㎡
- 주차면수 : 156면(일반 129, 장애인 7, 경차 12, 친환경 4, 전기차충전 4)
- 운영방식 : 무인관제시스템, 유료운영(평일 유료, 주말·공휴일 무료)
- 주요내용 : 00동 일원 신축 대단지 아파트 형성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 건축 허가 조건에 따른 공영주차장 기부 채납(주00 → 동구청)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진입금지 표시(주차장 입구)



쟁점

이 민원 주차장 이륜차 출입 가능 여부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5호 및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 및 제19호를 살펴보면 이륜자동차를 자동차의 종류로 구분 및 정의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법」제2조제5호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로 「도로교통법」상의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있다.

나. 「주차장법」제2조제5호 개정 및 같은법 제6조의2(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신설 당시 입법 취지에는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주차장 시설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를 정의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는 이 법이 규율하는 노상·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서 제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도로 불법주차 행위를 방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까지 확대하는 한편, 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주차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에 있다.’라고 하였다.

다. 살피건대, 이는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주차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고, 이륜자동차의 도로 및 인도 위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여 도로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시민 보행권 확보 및 안전까지 담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차장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의 여건 상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어 요금부과가 불가능하므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일반 자동차와의 형평성을 들어 이륜자동차의 출입을 금하고 있으나, 「주차장법」제17조제2항에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제3항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 규정사항을 살펴봐도 이륜자동차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2023년 6월 30일 기준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87대로 울산광역시 전체 63,679대¹⁾의 39%를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4개 구·군 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동구에 ○○○○○이 있고, ○○○○○ 근무자들이 이륜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는 특성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볼 때 이륜자동차 이용자를 위한 제도 마련 또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일부 타 시도 지자체의 경우 공영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정하고, 입·출구 주차 관제기에 탑재되어 있는 호출 버튼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입·출차 시간 확인 및 주차 요금 징수를 하거나, 주차장 정기 등록을 유도하는 등 이륜자동차의 주차 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사. 따라서, 피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요금 부과 및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① 「주차장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개정 입법 취지, ② 「주차장법」,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이륜자동차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볼 수 없고, ③ 이륜자동차가 많은 지역 특성 ④ 올해 8월 1일부터 1분 이상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실시 ⑤ 공영주차장의 설치 목적 부합 등 위와 같은 사항을 검토해 보았을 때 피신청인의 이 민원 주차장 이륜자동차 출입 금지가 정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 결론 : 의견표명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제3호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신청인은 동구 ○○공영주차장 이륜자동차 출입 금지를 해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조치결과 ⇒ 수용(이륜자동차 출입 금지 해제)

1) 중구 9,213대, 남구 10,716대, 동구 25,087대, 북구 10,976대, 울주군 7,687대 (자료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10 북구 ○○동 장마철 대비 우수관로 설치 요청

민원표시/의결일자	2023-고-0086 북구 ○○동 장마철 대비 우수관로 설치 요청 / 2023. 12. 27.
신청인 / 피신청인	○○○(울산 북구) / 북구청장(건설과장)
결정결과	의견표명(주심위원 : 윤정록)

■ 신청원인

신청인의 거주지인 북구 ○○동 ○○○-○ 대 ○○○㎡(이하 '이 민원 거주지'라 한다)에 집중 호우 시 배수가 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해결하여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거주지 배수 문제는 호우 시 인근 주택, 산 등으로부터 지표수(地表水), 지하수(地下水) 등 물의 유입경로를 특정할 수 없어 판단이 어렵다.

나. 이 민원 거주지 인근에 시행 중인 ○○동 일원 도로개설 사업은 제출한 도면(배수계획도)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관련 ○○동 일원 도로개설 공사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업명 : ○○동 일원 도로개설
 - 위치 : 북구 ○○동 ○○초등학교 일원
 - 사업기간 : 2020. ~ 2024.(5년간)
 - 사업주관 : 울산광역시 북구청(건설과)
 - 사업비 : ○,○○○백만원
 - 소요항목 : 보상비 ○,○○○, 공사비 ○,○○○, 설계비 ○○
- ※ 도로 배수구 및 측구 병행 설치(산에서 내려오는 우수 처리)

■ 쟁점

이 민원 거주지 우수범람 피해방지 및 배수 불량 해소 방안

판단

가. 신청인은 ○○동 ○○○-○ 대지에 19○○. ○. ○.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거주하고 있으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신청인 주택 주변 토지에 지적분할과 토지 성토, 건축물 신축 등이 이루어져 이 민원 거주지가 저지대, 지적 상 맹지가 되어 집중호우 시 인근 산과 빌라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범람하여 이 민원 거주지를 덮쳐서 침수가 발생하여 생활안전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를 해소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거주지 배수 문제는 호우 시 인근 주택, 산 등으로부터 지표수, 지하수 등 물의 유입경로를 특정할 수 없어 판단이 어려우며, ○○동 일원 도로개설 사업이 완료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1항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피신청인은 그 책무를 다할 의무가 있다.

다. 피신청인은 ○○동 일원 도로개설 사업 배수계획에 따라 이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 예산 문제로 2023년 12월 현재 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설령 그 사업이 당장 추진 된다고 하더라도 인근 임야, 빌라와 주택의 지표수로부터 유입되는 우수를 완전히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라.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2023. 12. ○. 신청인, 피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확인 한 바, 집중 호우 시 우수가 범람하여 신청인 주택으로 들어온 흔적과 정황은 주변 물막이 모래주머니 비치와 구조물 벽면 침수흔적 등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으며, 신청인으로부터 지난 2016년 제18호 태풍 차바 당시의 우수 피해를 들을 수 있었다.

이에, 이 민원 거주지의 옆집처럼 신청인의 집으로 지표수가 몰려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빌라 앞 북구 ○○동 ○-○에 물막이를 설치하는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피신청인도 신청인의 고충을 해소하

기 위한 우수 배제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공감하였다.

마. 따라서, ① ○○동 일원 도로개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점, ② 도로개설 공사 배수계획 상 우수관 직경이 600mm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점, ③ 이 민원 주거지 여건상 주변 지표수가 물려드는 게 보이는 점, ④ 물막이 모래주머니 비치, 인근 빌라 주차장의 많은 빗물 통로 개설, 빌라 뒤 옹벽에 물이 넘어온 흔적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민원 거주지에 집중 호우 시 물이 찰 것이라는 점은 넉넉히 인정이 된다.

결론 : 의견표명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신청인은 북구 ○○동 ○-○에 물막이판 설치 또는 우수관을 매설하여, 집중 호우로 인한 신청인의 주택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조치결과 ⇒ 수용(도로개설 시 배수관로 설치로 침수 예방)

3. 합의·조정

1 ○○○ 주차장 공사로 인한 우수 피해방지 요청

민원표시/의결일자	2023-고-0065 ○○○ 주차장 공사로 인한 우수 피해방지 요청 / 2023. 9. 4.
신청인 / 피신청인	○○○(울산 울주군) / 울주군수(산림공원과장)
결정결과	합의(주심위원 : 윤정록)

■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인은 울주군 ○○면 ○○리 ○○○-○번지 건축물 소유자로 20○○년 ○월 건축 준공 이후 현재까지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인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장 인근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면 ○○리 ○○○번지 일원에 피신청인이 2023년 2월부터 “○○○ 주차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호우시 기존 배수관로에 우수가 집중이 되어, 신청인의 영업장 침수 피해 발생 우려에 따른 배수공사 개선 및 침수방지 대책을 요청

■ 피신청인의 주장

- 가. 배수로 정비 요청 관련은 다목적광장 조성 후 우수 영향 저감 예상, 상황 관측 후 범람 시 배수로 정비 적극 검토하기로 수차례 합의
- 나. 배수계획도 상 다목적광장 부지 내 대부분의 우수는 도로 우수관으로 배수 계획, 폭우 대비 일부 구간의 우수를 울주군 ○○면 ○○리 ○○○번지의 집수정으로 배수 계획하였으나, 민원인의 요구로 차단
- 다. 이전까지 우천 시 상황 관측 후 범람위험시 배수로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고, 7. ○○. ~ 7. ○○. 호우 시 배수로 범람위험이 있음을 2023. ○. ○. 현장 방문 시 민원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 배수로 개선공사 추진토록 합의
- 라. 2023. ○월 ~ ○월 : 배수로 개선 공사 추진

| 000 주차장 조성 사업 개요

- 사업명 : 000공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 위치 : 울주군 00면 00리 000-0 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다목적광장 조성 A=0,000m²
주차장 조성 82면
- 공사비 : 0,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2. 00월 ~ 2023. 0월

|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관련 그간 추진 상황

- 2022. 00. ~ 2023. 00. : 사업 설명차 방문(3~4차례), 사무실 방문(1차례)
- 우천 시 상황 관측 후 배수로 정비 적극 검토(민원인 합의)
- 2023. 00. 00. ~ 00. 00. : 호우(00면 183mm, 시간당 최대 44mm)
- 2023. 00. 00. : 현장 방문(민원사항 반영 합의), 민원인 자료 확인(사진)
- 2023. 00. 00. : 현장방문하여 배수로 정비 계획 협의(신청인 입회)
- 2023. 00. 00. : 현지조사(시민고충처리위원회, 피신청인, 신청인)

나. 민원 발생 경위 및 사실관계 설명

- 이 민원은 피신청인이 2023년 0월부터 울산 울주군 00면 00리 000번지 일원에 000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호우시 주차장 부지 주변에서 내려오는 우수와 주차장 부지 내 우수를 신청인의 영업장 옆에 매설된 기존 배수로로 흘러가게 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주차장 주변의 우수를 모아서 기존 배수로로 연결하면 통수단면(30cm)이 부족하여 우수가 범람할 수 있으니 별도의 배수 대책을 공사계획 협의 시부터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오던 중 지난 2023년 0월 00일 ~ 00일 내린 호우로 인해 배수구가 범람하여 신청인의 영업장 마당이 침수되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 없이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신청인은 주차장 배수로 공사로 인한 인근 영업장(00리 000-0번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공사 개선 및 침수방지 대책을 요청하고 있다.

☒ ○○○ 주차장 주변 호우시 영업장 앞 배수로 범람 현황사진(23. 7월)



쟁점

- 가. 호주시 ○○○ 주차장 조성공사로 인한 인근 영업장(○○리 ○○○-○번지) 침수 피해 발생 여부
- 나. 인근 영업장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로 설치 가능 여부

조사자의 의견

가.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법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우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6호에서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기반시설 공원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 다목적 광장 및 주차장 공사”에 따른 주차장 부지와 사업부지 주변의 우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여건을 무시한 채 주차장 부지에 대한 우수 대책만 수립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어, 오래 전부터 자연적으로 주차장 부지로 흘러 들어오는 주변 지역 우수에 대한 처리 대책이 부족해 보인다.

나.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우수유출 저감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

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형질변경을 동반하는 건축허가 시에 주변 지역에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우수에 대한 배수관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신청인도 영업장 건축허가 시에 600mm 배수관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정작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이 자신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법과 현장여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①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역의 주변 여건, 2.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3. 재해발생 빈도 및 규모, 4. 재해 저감 방법, 5.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규모 및 분담 계획, 6.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위치·구조 및 유지관리 방안, 7. 주변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8.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수해도 등 효과분석, 9.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10.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태풍, 집중호우의 강도 증가로 도심지 침수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어,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여 우수의 저류·침투기능이 저하되고, 우수가 일시적으로 빠르게 집중되어 도심지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홍수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우수유출저감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속적인 우수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외면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오던 중 지난 2023년 ○월 내린 호우로

주차장 부지 주변 우수가 범람하여 신청인의 영업장 마당이 침수되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사료된다.

라.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 사진과 동영상을 바탕으로 2023년 ○월 ○일 현장 확인한 바, 피신청인이 “○○○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주차장 부지는 성토되었고, 예전부터 자연적으로 주차장 부지로 흘러 들어와서 분산 흡수되던 우수를 인위적으로 제방을 설치하여 신청인의 영업장 방향으로 우수가 한 곳으로 모이게 배수가 되도록 시공중임을 확인하였고,

2023년 ○월 ○일 주차장 부지 조성 민원 현장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민원사항 청취 및 현장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은 주변 우수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신청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기로 협의하였으나,

협의 사항 중 울주군 ○○면 ○○리 ○○○번지상 기존 맨홀에서 ○○리 ○○○-○○번지 방향으로 상부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추가 관로를 설치하고자 하면, 신규 관로 매설공사시 신청인 소유의 ○○리 ○○○-○번지를 점유하여야 하는 바, 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합의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 합의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존 배수로와 연결하여 새로운 배수로를 확장하여 설치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리 ○○○-○번지를 관통하여 설치될 신규 관로매설 공사에 따른 토지사용을 승낙한다.

나. 별첨 합의서와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상호 합의하였으므로 이 민원은 해결된 것으로 종결하고자 한다.

|| [별첨1] 합의서

합 의 서

민원표시	2023-고-0065	주차장 공사로 인한 우수 피해방지 요청
합의일시	2023. 8. 30.(수) 10:30	
합의장소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실	

민원내용

다목적광장 조성 공사'로 인해 기존 상부에서 내려오던 물이 주차장 부지 성토 등으로 당초 우수 처리와 달리 상부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됨에 따라 주차장 부지 남서측 리 번지~ 번지 사이로 자연배수 되므로, 신청인의 영업장인 리 - 번지 앞 도로의 침수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방지 요청함

합의내용

<피신청인>

1. 주차장 조성공사 부지에서 리 번지로 설치해 놓은 원형수로 이중벽관 (D300mm)을 폐쇄한다.<현황도①>
2. 리 번지에 설치한 돌수로와 기존 맨홀을 연결하는 관로의 관경을 확대 (D600mm 이상)하여 재시공한다.<현황도②>
3. 리 번지상 기존 맨홀에서 리 - 번지 방향으로 상부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추가 관로를 설치한다.<현황도③>

<신청인>

1. 신청인 소유의 리 - 번지를 관통하여 설치될 신규 관로매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사용을 승락한다.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23. 8. 30.

신 청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면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림공원과장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부위원장

성명

성명 배도권 (서명)

성명 윤정록 (서명)

2 ○○○○아파트~국도○호선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마을진입로 구조개선 요청

민원표시/의결일자	2023-고-0075 ○○○○아파트~국도○호선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마을진입로 구조개선 요청 / 2023. 11. 13.
신청인 / 피신청인	○○○(울산 북구) / 울산광역시장(건설도로과장), 종합건설본부장(건설부장)
결정결과	합의(주심위원 : 윤정록)

■ 신청취지 및 이유

○○○○아파트~국도○호선 연결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가 개설됨에 따라 기존 ○○마을 진입이 불가하므로 회전교차로 설치, 비보호 좌회전 가능한 도로 개설 등 마을진입로 구조개선을 요청함

■ 피신청인의 주장

가. 건설도로과장

- 계획도로는 ○○·○○·○○동 일원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8천여 세대)에서 국도○호선으로 진입하는 최단거리 노선으로 교차로 설치 시 출·퇴근 시 많은 교통량으로 인한 혼잡 예상
- 도로개설에 따른 국도○호선과 ○○동 일원을 연결하는 ○○마을 진입로 기능 축소와, 그 기능을 대체하는 도로의 기능확보를 위한 현재 계획 노선 유지 필요
- 민원이 요구하는 단 구간 회전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설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평면교차로 설치 기준에 불부합함
※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책임에 대한 논란 야기
- ○○마을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유턴차로 확보를 위하여 당초 왕복 4차로 계획을 왕복 6차로로 변경(우회거리 300m 정도) 하여 설계하였음
- 향후 도로운영에 따른 교통상황과 주변지역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여건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도로체계 정비

나. 종합건설본부 건설부장

- 약 〇〇〇가구로 구성된 〇〇마을은 〇〇천의 주변으로 형성된 자연마을로 현재 〇〇〇와 접속하는 진입로가 〇〇마을의 주 진출입로의 기능을 하고 있음
- 폭 20m이상 도로의 개설은 시 건설도로과에서 실시설계(예산확보 포함)를 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보상 및 공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계획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반영된 사항이며, 현재 설계에 반영된 교통관련 계획(교통신호기, 신호등, 횡단보도, 노면표시, 좌우회전 차로 등)은 최종 확정계획이 아니며, 준공예정일 6개월 전까지 울산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
- 국도〇호선 인접 〇〇마을 진입도로 현재 설계안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 45조(일시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 대한 적용 특례), 제47조(기존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에 적용되나, 실제 도로체계상 이용불편이 예상되며 본 도로와 접속되는 〇〇마을 진입로 확보 등 보다 합리적인 통행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25(권한위임사무) 및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1(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따라 도로 폭원 20m미만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음
- 향후 추가 개선안(대체 도로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개설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권한이 있는 울산광역시(건설도로과)와 폭원 20m이하 집산도로·국지도로 시설결정 및 개설권자인 북구청간 협의 결과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토록 하겠음

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평면교차로(비보호 좌회전 가능한 연결도로) 개설 관련은 도로개설공사 시행청인 울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와 우리 구 건설과의 대안노선 검토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필요시 검토
- 주민수해도, 교통량, 주변여건 등을 감안할 때 주민건의(안) 평면교차로(비보호 좌회전 가능한 연결도로) 개설 보다 〇〇공원 앞 4지 교차로 개선(마을안길 확장)하여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사실관계

가. ○○○○~국도○호선 연결도로개설 사업

사업 개요

- 위치 : 북구 ○○동 ○○○○아파트 일원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0.5km, B=25m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4년)
- 사업비 : ○○,○○○백만원
- 보상 ○○,○○○, 공사 ○,○○○, 감리 ○,○○○, 기타 ○○○

1) 추진상황

- 2020. ○.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 2022. ○. ○. :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 착수(완료 '23. ○.)
- 2023. ○. ○. : 실시계획(변경) 고시 및 사무 인수인계
- 2023. ○. ○. : 업무 이관(건설도로과→종합건설본부)
- 2023. ○○. ○○. : 현재 : 보상 추진 중(총 ○○필지 대상)

2) 향후계획

- 2024. ○○월 : 공사 착공
- 2025. ○월 : 도로 구조물(옹벽 및 석축) 설치
- 2025. ○월 : 토공 및 우수관로 매설
- 2025. ○○월 : 보도 및 도로 포장
- 2025. ○○월 : 공사 준공 및 개통

나. 이 민원 관련 그간 추진 상황

- 2023. ○. ○. : 의원간담회
 - ○○○○아파트~국도○호선 연결도로 조기개설 간담회
- 2023. ○. ○○. : 다수인 민원 접수(시 건설도로과)

- 국도○호선과 50m 이격거리에 좌회전 인입도로 개설 요구
- 2023. ○. ○○. : 다수인 민원 접수(북구청 방문)
 - 울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비보호 좌회전하여 마을과 연결되는 진입로 개설요청
- 2023. ○. ○○. : 다수인 민원 회신
 - 단구간 평면교차로 설치는 주행속도 저하 및 용량 감소로 도로기능이 저하되고 차량 엇갈림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야 함.
 - 도로개설에 따른 ○○마을 진입로 기능 축소와 그 기능을 대체하는 개설도로의 기능확보를 고려한 도로접속계획 수립, 반영한 설계안임.
 - 도로운영에 따른 교통상황과 주변 지역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 여건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도로체계 정비 검토 계획임.

다. 민원 발생 경위 및 사실관계 설명

- 민원 발생 경위
 - ○○·○○·○○동 일원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지역과 국도○호선 연결도로의 조기개설을 염원하는 주민요구에 따라 개최된 간담회에서 도로개설에 따른 ○○마을 기존 진출입로 이용이 제한되는 사실을 확인한 주민들의 이의제기 발생
- 사실관계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설 기준 불부합에 따른 도로 안전 및 기능상의 문제점으로 민원사항 수용 불가

쟁점

- 가. 회전교차로 설치 가능여부
- 나. 평면교차로(비보호 좌회전 가능한 연결도로) 개설 가능여부
- 다. 기존 ○○마을 진입로(○○○길)~○○로 연결 가능여부

조사자의 의견

가. 신청인은 2023. ○. ○○. 피신청인1, 3에게 다수인 민원(신청인 외 ○○○인)을 제출하였으나 진정민원이 해소되지 않아, ○○ ○동의 제○통장으로서 이 민원 도로와 관련하여 민원 대표로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출하였다.

피신청인이 이 민원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난 수십년간 국도○호선(○○로)에서 ○○마을로 바로 들어오던 진입도로를 차단하고, ○○○○아파트앞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여 마을안길로 진입하거나, 유턴 후 마을안길을 이용하여 진입하도록 설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므로 “회전교차로 설치, 비보호 좌회전 가능한 도로 개설 등” 국도○호선(○○로)에서 ○○마을에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나. 이에 피신청인 2(종합건설본부장)는 국도○호선 인접 ○○마을 진입도로 현재 설계(안)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45조(일시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 대한 적용 특례) 및 제47조(기존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에 적용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도로체계상 이용 불편이 예상되며 이 민원 도로와 접속되는 ○○마을 진입로 확보 등 보다 합리적인 통행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설계에 반영된 교통관련 계획(교통신호기, 신호등, 횡단보도, 노면표시, 좌우회전 차로 등)은 최종 확정 계획이 아니며, 준공예정일 6개월 전까지 울산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향후 도로운영에 따른 교통상황과 주변 지역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여건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도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또한 신청인이 요구하는 회전교차로 설치, 비보호 좌회전 가능한 도로 개설 등으로 ○○로에서 ○○마을에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제에 대하여

- 1) 피신청인 1(건설도로과장)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면교차로 간의 간격은 ①차로 변경에 필요한 길이, ②대기 자동차 및 회전차로의 길이, ③다음 평면교

차로에 대한 인지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계획구간의 교차로 최소간격은 100m 이므로 교차로 설치기준 불부합하여,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사항 검토사항-1

- ① 진출·입 차량의 엇갈림에 따른 안전성 고려
※ 엇갈림이 적은 경우 도시지역, 2차로, 설계속도 50km/h 기준 최소간격 100m
- ② 인접한 평면교차로의 대기 자동차로 인한 주행속도 및 용량 감소에 따른 도로 기능성 확보
- ③ 운전자의 교차로에 대한 관찰이나 정보수집을 위한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인한 안전성 영향

2) 피신청인 2(종합건설본부장)는 금회 개설 예정인 이 민원 도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에 따른 도로 규모별 “대로3류”, 도로 기능별 “보조간선도로”로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로 교통 주행성(이동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보조간선도로의 적정 교차로 간격은 250~500m이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서, p359)〈별첨2.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해 도로의 교차로 최소간격은 100m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따라 “도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설치하여야 하나, ○○로와 50m 이격된 교차로는 위 시설 기준에 맞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3) 도로교통공단 울산지소와 울산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자문 결과, 단구간 평면교차로 설치 시 주행속도 저하 및 용량 감소로 도로 기능이 저하되고 차량 엇갈림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라. 그리고 검토안 중 “③기준도로 ○○로 연결”과 같이 기존 ○○마을 진입로(○○○길)를 ○○로에 바로 연결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피신청인 1, 2와 도로교통공단 울산지소, 울산경찰

청 교통과, 교통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 결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주간선도로의 무분별한 도로 연결로 인한 교통기능 저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도로를 기능별로 분류하고, 상위 기능에서 하위기능으로 순차적인 도로 배치와 간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시안은 주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연결로 도로의 위계 및 배치간격 기준 불부합하기 때문에 ○○로(주간선도로)에 접속되는 보조간선도로(이 민원 도로)와 근접하여 별도의 접속도로를 개설은 불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쟁점사항 검토사항-2

- 도로의 기능별 분류
 - 주간선도로(광로) > 보조간선도로(대로) > 집산도로(중로) > 국지도로(소로)
- 도로의 기능별 배치 간격
 -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 : 1,000m내외
 -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 500m내외
 -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 : 250m내외

마. 그렇다 하더라도 금회 개설 예정인 이 민원 도로의 설계안은 수십년간 마을 주 진입로로 이용되어 오던 기존 ○○마을 진입로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도로 계획도면을 살펴보면 <그림2. 설계안 문제점>과 같이 피신청인 1(건설도로과장)이 위 “다”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로 사거리에서 ○○마을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울산방면으로 진출하려면 거리가 짧아서 좌회전 차선에 진입해서 대기하기가 불가능하므로 마을입구에서 대기하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이 민원 도로로 나오면, ○○○○아파트에서 나와서 경주로 가려고 하는 우회전 차량과 엇갈림 현상이 발생하여 충돌이 우려되며, 또한 ○○○○아파트 사거리는 기형적인 사거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마을로 진입하려면 좌회전 신호에서 마을안길 입구까지 50m정도 거리를 회전하여 진입하여야 하며, 마을안길은 폭이 좁고 단차이가 있어 교행이 불가하고, 신호 대기선과 마을진입로 사거리가 너무 멀어서(50m) 교

차로 내 혼선으로 인한 신호 지연과 충돌 현상이 우려된다.

바. 따라서 제반 교통 규정을 고려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차량 엇갈림 현상이 없는 안전한 마을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로 사거리에 근접하여 연결되는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여 ○○로 사거리에서 어느 정도 이격하고, 최초 신청인이 요구하는 좌회전 가능한 평면 교차로가 아닌 좌회전 불가능한 마을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마을로 진입하는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계획으로 이 민원 도로의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고, ○○마을에서 울산 방향으로 ○○로 진입시 차량 엇갈림 현상 없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하여 합의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 결론 : 합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차량 엇갈림 현상이 없는 안전한 마을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로 사거리에 근접하여 연결되어 있는 기존 마을진출로(○○○길) 선형을 변경하여, ○○로 사거리에서 어느 정도 이격하여 마을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마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민과 협의하여 합의하였다.

- 가. “피신청인은 진출입로에 필요한 토지확보가 가능한 경우 울산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원활한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적극 협조한다”
- 나. 별첨 합의서와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상호 합의하였으므로 이 민원은 해결된 것으로 종결하고자 한다.

3 ○○면 ○○마을 상수도 인입 요청

민원표시/의결일자	2023-고-0093 ○○면 ○○마을 상수도 인입 요청 / 2024. 1. 22.
신청인 / 피신청인	○○○외 20인(울산 울주군)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울주사업소장), 울주군수(도로과장)
결정결과	합의(주심위원 : 윤정록)

■ 신청취지 및 이유

울주군 ○○면 ○○마을 31가구 주민들은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나, 지하수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상수도 공급을 해 달라(이하 '이 민원'이라 한다)

■ 피신청인의 주장

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울주사업소장)

- 1)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 부설공사 편입 토지조서 중 “사유지 저촉 부분 제외하고 우회하여 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수관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보수 작업을 위해 중장비 투입이 가능한 도로를 통해 매설해야 하며, 도로가 아닌 대지 등의 경우 사유지인 토지가 더 많으므로 기존 노선을 통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 2) 사유지 “동의(협약)가 성립되지 않고 공사가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도법」 제44조(수도시설등의 매수)는 개인 소유가 아닌 일반수도사업자 소유의 수도시설 및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법령으로 본 사항과 무관하다.
- 3) 또한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제1항에 기초한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나,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제3항에 따라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을 요청한 것은 시설권 또는 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자료

중 하나이다.

- 4) 이와 관련한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7325 판결」에서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 등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이 사건 사용 부분에 대한 원고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하여 성남시에 이 사건 급수공사 시행을 신청하면 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고, 따라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본 배수관 부설공사 구간이 경유하는 사유지에 대한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승소 판결을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 5) 향후 신청인에게 배수관 부설공사 구간이 경유하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승소 판결을 제출하는 경우, 배수관 부설공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안내하겠다.

나. 울주군수(도로과장)

☒ 농어촌도로 현황



■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관련 사업

- 사업명 : ○○면 ○○리 ○○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 사업기간 : 2023. ○. ~ 2023. ○○.
 - 총사업비 : ○○○,○○○천원 (설계비: ○○,○○○천원 포함)
 - 주요내용 :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 (D=100mm, L=1,500m)
- ※ 마을상수도 수질 악화 및 수량 부족에 따른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불편 사항 해소

나. 이 민원 관련 그간 추진 상황

- 2022. ○. ○○. :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수도정비기본계획 1단계 계획대상지)
 - 2022. ○○월 : 2023년도 당초 예산 확보 (○○○,○○○천원)
 - 2023. ○. ○○.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3. ○. ○.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3. ○월 : ○○면 ○○리 이장(신청인)에게 토지 사용승낙서 제출 요청
 - 2023. ○월 : ○○면 ○○리 이장(신청인)에게 유선상 2차례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요청 및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추후 공사 진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안내(피신청인1→신청인)
 - 답변내용 : ○○면 ○○리 마을이장 및 마을대표자들의 회의 결과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이 불가하여 공사 진행을 희망하지 않음(신청인→피신청인1)
 - 2023. ○○. ○○. : 2023년 제4회 추경예산 “○○면 ○○리 ○○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감액 편성(반납) 요구(울주사업소→상수도사업본부)
- ※ 반납 요구사유: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였으나 사업구간 토지사용 동의가 어려워 사업추진 불가

다. 민원 발생 경위 및 사실관계 설명

- 피신청인1은 ○○면 ○○리 이장(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면 ○○리 ○○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구간이 경유하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을 요청함

- 신청인으로부터 유선상으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이 불가하며, 배수관 부설공사 진행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음
- 피신청인1이 배수관 부설공사 구간이 경유하는 사유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마을 주민대표인 신청인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오도록 요청했으나, 신청인이 이를 받지 못하여 피신청인1은 이 민원 사업비를 반납하였다.

쟁점

○○면 ○○마을 시 상수도 공급 가능 여부

조사자의 의견

가. 피신청인1은 언양에서 경주 방향으로 상수도 공급망을 확대 구축해 감에 따라 울주군 ○○면 ○○리 ○○마을 주민의 숙원사업 이자 “수도정비기본계획 1단계 계획대상지”인 ○○면 ○○리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2023년도 당초 예산을 확보(○○○,○○○천원)하여 ○○,○○○천원을 들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설계도까지 작성하였으나, 상수도 공급용지 중 사유지의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반납 요구하고 사업을 취소하였다.

신청인과 ○○면 ○○마을 주민들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마을진입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사유지에 대하여 주민들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설계까지 한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요구하며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나. 이제는 공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와 함께 찾아온 가뭄과 지진 등으로 인해 수원이 말라 가고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므로, 옛날처럼 하천수와 지하수 등에 의존한 마을 간이상수도를 활용하여 식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여지며, 상수도의 공급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 차원의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가치라고 보여진다.

다. 또한 「수도법」 제2조(책무) “제2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중략) 제6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도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도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급수의무) “제1항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상수도 공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십년 전부터 마을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사유지에 대하여 주민들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시설계까지 완료한 사업을 취소하고 당해연도에 예산을 바로 반납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원망을 초래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라. 피신청인1은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제3호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경유하여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마을 주민 대표인 신청인에게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마을입구에서 개별 가정으로 설치하는 급수관 설치공사가 아니라, ○○대로에서 마을입구까지 부설하는 배수관 부설공사 구간에 있는 사유지이므로 엄밀히 따지면 마을주민 대표를 상기 조례 시행규칙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제3호에 따른 신청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마을주민 대표인 신청인에게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마. 배수관 부설공사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전체 토지 조서상 총 29개 필지 일시점용 2,534㎡(영구점용 119㎡) 중에 국·공유지는 15개 필지 일시점용 2,242㎡(영구점용 102㎡)이며, 사유지는 14개 필지 일시점용 292㎡(영구점용 17㎡)로 전체 29개 필지 중 14개 필지이지만 군도 ○○○호선에 포함되는 8개 필지는 울주군 도로과에서 미불용지로 보상을 약속하였으므로 사업추진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며, 군도 ○○○호선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구간에 위치

한 필지 중 〇〇면 〇〇리 〇〇〇-〇번지(〇〇〇 외 5인 소유)는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하므로 마을 주민들과 협력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노력을 기울여도 불가피할 경우에는 〇〇면 〇〇리 〇〇〇-〇번지(울주군 외 4인 소유)로 선형 변경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피신청인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 〇. 〇〇. 시 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 급수팀장과 울주군청 도로과 도로보상팀장이 참석하여 1차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울주군 도로과에서는 군도 〇〇〇호선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에서는 이미 설계가 완료된 사업인 만큼 사업구간내 토지사용승낙서를 득하고 다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〇〇면 〇〇리 〇〇〇-〇번지에 대해서는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2024. 〇. 〇〇. 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 급수팀장, 울주군청 도로과 도로보상팀장, 신청인 등 주민 대표 3명이 참석하여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조정서 작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 결론 : 조정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 울주군청 도로과,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이 민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 가. 피신청인1은 〇〇마을 상수도 인입에 필요한 사유지 토지사용승낙, 배수관로 선형 검토와 상수도 인입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로 〇〇마을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나. 피신청인2는 〇〇마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〇〇마을 상수도 인입에 필요한 〇〇선 등 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등에 적극 노력한다.
- 다. 신청인은 〇〇마을 배수관 부설과 관련하여 상수도 인입에 필요한 사유지 토지사용승낙 등 공사추진에 적극 협조한다.

| [별첨1] 조정서

조 정 서

민원표시	2023-고-0093 면 마을 상수도 인입 요청
조정일시	2024. 1. 16.(화) 10:30
조정장소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

민원내용

울주군 면 마을 31가구 주민들은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나, 지하수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상수도 공급을 해 달라

조정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한 사항을 조정한다.

<피신청인1>

1. 피신청인1은 마을 상수도 인입에 필요한 사유지 토지사용승낙, 배수관로 선형 검토와 상수도 인입을 위한 소요 예산 확보로 마을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피신청인2>

1. 피신청인2는 마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마을 상수도 인입에 필요한 () 등 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등에 적극 노력한다.

<신청인>

1. 신청인은 마을 배수관 부설과 관련하여 상수도 인입에 필요한 사유지 토지사용승낙 등 공사추진에 적극 협조한다.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24. 1. 16.

신청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명	
	마을 노인회장	성명	새마을지도자
피신청인	1.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 급수팀장	성명	이종을 (서명)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과 도로보상팀장	성명	최민영 (서명)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부위원장	성명	윤정록 (서명)

4. 조사중 해결

1 태풍 피해 복구 및 하천 편입부지 보상 요구

민원표시/의결일자 2023-고-0006 태풍 피해 복구 및 하천 편입부지 보상 요구 / 2023. 2. 21.

신청인 / 피신청인 ○○○(울산 남구) / 울주군수(건설과장, 안전총괄과장)

결정결과 조사중 해결(주심위원 : 윤정록)

■ 신청취지 및 이유

울주군 ○○면 ○○리 ○○○-○번지 일원 농지가 2022년 한남노 태풍피해로 하천 토사 및 물이 유입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며, 관리청이 하천을 관리하지 않아 재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 요청과 빠른 시일내 원상복구 및 정비로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 관련은 소하천정비사업을 통해 시행하여야 되는 사항으로 정비 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보상 추진은 불가함.
- 나. 소하천정비사업의 경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토대로 하천 정비의 시급성, 주민 수혜도,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하천별 사업 투자순위 등을 선정 후 사업구간 확정, 사업비 확보 등 사업추진이 결정되는 사항이며,
- 다. 농경지 및 하천 주변에 유입된 토사의 경우 상반기중 하천 준설 및 하상정리 사업을 통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사실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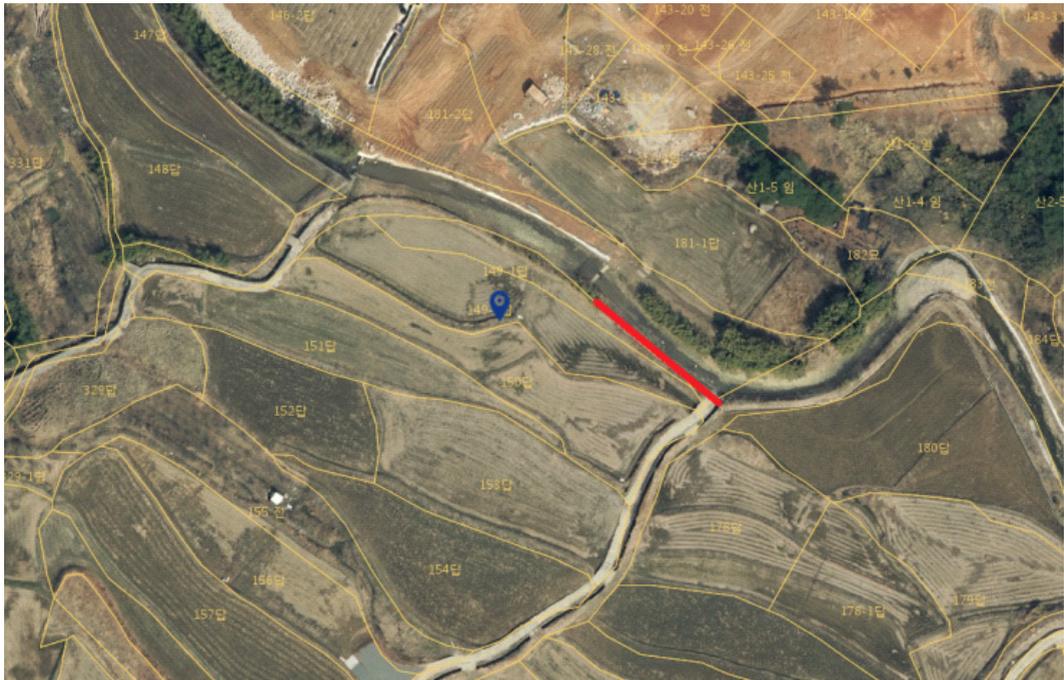
- 가. 이 민원 관련 그간 추진 상황
 - 2022. ○○. : 태풍 피해 구간 응급복구
 - 2022. ○○. : 울주군 민원 접수(유선 전화)

-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 상류에서 토사가 밀려와 ○○리 ○○○-○번지 상 석축 앞뒤로 토사가 쌓여있고, 논에 물을 대는 배수로가 막혀있어 해당 구간 정비 요청함.
- 2023. ○○. ○○. : 현장 방문 및 향후 조치계획 직접 전달
 - 상반기에 하천 준설 및 하상정리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 시행 시 민원인 요청 구간 포함하여 진행하겠다고 안내함.
- 2023. ○○. ○○. : 고충 민원 접수
- 2023. ○○. ○○. : 민원 현장 확인
- 2023. ○○. ○○. : 울주군에 자료 제출 요구
- 2023. ○○. ○○. : 민원현장 현장 합동회의 (고충처리위 2, 울주군 3)

나. 민원 발생 경위

- 2022. 9. 태풍 힌남노 발생으로 인한 하천 범람에 따라 토사 농경지 유입, 농업용 용수로 막힘 현상 발생

 민원현장 위치도(○○면 ○○리 ○○○-○번지)



쟁점

- 소하천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
- 원상복구, 하천 정비 등 추가피해 방지

☑ ○○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용지도)



☑ 현장사진(농지 및 호안 응급복구 완료)



판단

- 가. 이 민원은 2022년 9월 13일 태풍 힌남노로 하천(○○천)이 범람하여 울주군 ○○면 ○○리 ○○○○번지 신청인 소유 농경지(답)에 토사와 하천수의 유입으로 인한 ① 농작물의 침수 피해 보상, ② 농경지의 매몰 유실에 대한 원상복구 및 항구적인 피해 방지 대책과, ③ 하천 편입 토지(123㎡)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 ○. ○○. 현장 확인 후 2023. ○. ○○. 울주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울주군의 태풍 피해 민원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신청인 소유 농경지(답)에 토사와 하천수의 유입으로 인한 농작물의 침수 피해 보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경작자에게 2022년 ○○월 ○○일 지급 되었음을 확인 하였으며,
- 다. 농경지의 매몰 유실에 대한 원상복구 및 항구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2023년 ○월 ○○일 울주군과 합동으로 현장회의를 개최하여, 울주군에서 2023년 상반기 중으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능복원사업으로 하천준설 및 하상정리 작업을 시행하여, ① 매몰 농경지의 원상 복구, ② 하천수의 원활한 통수 단면 확보 및 지천 합류로 인한 월류 방지벽 설치, ③ 유실 제방 복구를 약속하고, 신청인에게도 유선통보 하였으며
- 라. 또한 하천 편입 예정 토지(123㎡) 보상은 현재 하천에 편입된 정확한 면적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 시점에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소하천정비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2017년 7월 20일 수립된 ○○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향후 소하천정비법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 계획 수립 이후 정비사업 추진시 정확한 편입 면적을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 : 조사중 해결

- 가.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울주군에서 실경작자에 대한 피해 보상금 지급과 응급복구는 완료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복구공사는 2023년 상반기 중 완료하기로 협의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며
- 나. 하천 편입 예정 토지(123㎡) 보상은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 계획 수립 후 정비사업 추진시에 정확한 편입 면적을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울주군에 소하천(○○천)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조사중 해결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2 국유재산(도로) 용도폐지 요청

민원표시/의결일자	2023-고-0011 국유재산(도로) 용도폐지 요청 / 2023. 2. 27.
신청인 / 피신청인	○○○(대구 달서구) / 울산광역시북구청(건설과장)
결정결과	조사중 해결(주심위원 : 이상일)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울산시 북구 ○○동 ○○○-○번지 외 2필지에 대형자동차정비 및 타이어 전문점 영업을 위해, 같은동 ○○○○-○○ 도(이하 '이 민원 국유재산'이라 한다) 일부 국유재산 용도폐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북구청에서 용도폐지를 해주지 않고 있어, 막대한 금융 이자 부담과 정신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하여 달라.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민원 관련 그간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20. ○○. ○○. :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
- 2021. ○○. ○○. :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 불가 통보(북구청 건설과-○○○호)
- 동해남부선 철도이설 사업 준공 후 폐선부지 사업제안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 가능 예정
- 2022. ○○. ○○. : 국유행정재산 실태점검(부산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호)
- 2023. ○○. ○○. : 실태조사 후속조치 요청(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호)
- (1단계) 전부용도폐지, 대장정리 : 2023. ○. ○.(월)까지

나. 이 민원은 신청인이 울산 북구 ○○ 동 ○○○-○, ○○○-○, ○○○-○번지 토지 소유자로 경북 ○○에서 운영 중인 카센터를 울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신청인 토지 내 국유지에 대한 임대 계약을 하고 농작물을 재배 중 카센터 운영을 위한 건축허가 및 차후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국유지 용도폐지가 우선 되어야 함을 알고 2020. ○○. ○○.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서 제출 이후 수 차례 면담 및 용도폐지를 주장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지번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광로3류 및 철도(저축) 지역의 잡종지로 시에서 추진 중인 ○호선 확장공사와 더불어 2022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동해남부선 철로 이설에 따른 폐선

부지 사업 제안 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 가능 예정 사유로 용도폐지 불가 통보한 것이다.

다. 본 민원을 조사하던 중 피신청인은 상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도 하반기 국유 행정 재산 실태점검’(조달청 실시)에 이 민원 국유재산을 용도폐지하기 위해 의견등록을 한 상태였고, 이에, 조달청은 2023. 〇〇. 〇〇.자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〇〇〇〇호(실효 도시계획시설 국유 행정재산 실태조사결과 알림 및 후속조치 요청)를 통해 피신청인에게 2023. 〇. 〇. 〇〇.까지 후속조치(용도 폐지와 대장정리 등) 기한으로 실효 국유행정재산 이외에 유휴로 판단한 재산에 대한 의견이 없을 시에도 「국유재산법」제2조에 의거 직권 용도폐지한다는 내용을 시달한 바 있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민원 국유재산을 용도폐지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신청인은 그동안 민원 처리를 위해 수 차례 관련 기관을 방문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해결의 지를 보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담당자와의 갈등으로 감사 요청까지 하게 되어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만큼, 민원인의 요청 건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며 이제라도 해결되어 감사하다고 말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그동안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지속 민원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상기 민원을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지만, 이번 기회에 국유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신청인과는 면담을 통해 이 민원에 대해 조속히 처리해 주기로 협의를 하였다.

■ 결론 : 조사중 해결

따라서 신청인의 고충 사항이 해소되었으므로, 이 민원을 종결하고자 한다.

3 앞집 상가 연기 발생 불편 해소 요청

민원표시/의결일자	2023-고-0018 앞집 상가 연기 발생 불편 해소 요청 / 2023. 4. 11.
신청인 / 피신청인	○○○(울산 울주군) / 울주군수(위생과장, 환경자원과장)
결정결과	조사중 해결(주심위원 : 윤정록)

신청취지 및 이유

울주군 ○○읍 ○○리 ○○○-○ 소재 음식점에서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를 배출하기 위한 환풍구가 신청인 집 앞에 설치가 되어 있어 악취 등 생활 불편이 따르고 있으니 처리하여 달라.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울주군수(위생과장)

- 해당 식당의 환기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 기준에 부합하므로, 환풍구 방향 이동 가능 여부는 업소 측에 확인 요청할 사항이다.
- 해당 식당 환풍구 방향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지도 가능 유무의 여부는 「식품위생법」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8호)에 따른 적법한 시설이므로 환풍구 방향에 대한 강제적인 행정지도는 불가하다.

나. 울주군수(환경자원과장)

-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만 개선명령, 개선권고와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 음식점은 「악취방지법」제2항 제2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
- 따라서, 음식점 냄새에 대해서는 명령적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음식점 관계자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사실관계

이 민원 관련 그간 추진 상황 및 민원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2022. 00. 00. 민원 접수(유선) 후 현장 방문(환경자원과)

- 영업주에게 민원 사항 전달, 연돌 위치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나. 2023. 0. 00. 민원 접수(유선) 후 현장 방문(위생과)

- 특이점 미발견, 영업주에게 민원신고 사항 전달, 배기 시설 관리 행정 지도

다. 2023. 0. 0. 민원 접수(방문) 후 현장 방문(위생과, 환경자원과)

- 환기 배관이 민원인 거주지와 인접하여 연기 및 악취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영업주에게 신고사항 재차 전달, 환기 배관 방향 조정 등 배기 시설 관리 행정 지도

라. 2023. 0. 00. 진정 민원 접수 후 현장 방문(환경자원과)

- 연기 발생 미확인, 영업주에 민원사항 전달, 피해 최소화 행정 계도

마. 2023. 0. 00.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접수에 따른 현장 방문(위생과)

- 환기시설에서 냄새와 연기 발생 확인, 환기 배관이 민원인의 거주지와 인접하여 연기와 악취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영업주에게 주변 주거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환기 배관의 방향을 조정하는 등 악취해결 방안 모색 권고하였으며, 이에 긍정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음

■ 쟁점

가. 환풍구 악취로 인한 민원 피해 유무 파악

나. 「식품위생법」 및 「악취방지법」등 기타 법령에 따라 해당 식당 환풍구 방향 이동과 행정지도가 가능한지 여부

■ 판단

가. 이 민원은 2022년 00월 경 신청인 집 앞에 “0000 00 00”라는 식당이 개업하면서 조리장 환풍구를 신청인 주택 앞으로 설치하여 연기를 배출함으로 인해 냄새와 음식 조리 시 연기 등으로 여름에 창문도 열지 못하고, 빨래를 말릴 수도 없는 실정으므로, 환풍구의 위치를 변경하든지 업종을 변경해서 생활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피신청인 등에 요청하였다.

나. 피신청인들도 2022년 ○○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현장 확인을 통해 식당의 환풍구가 신청인의 주거지와 인접하여, 악취와 연기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① 해당 음식점 환풍구는 「식품위생법」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8호)에 따른 적법한 시설이므로 환풍구 방향에 대한 강제적인 행정지도가 불가하며, ② 또한, 「악취방지법」제2항 제2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고, ③ 음식점 냄새에 대해서는 명령적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음식점 관계자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4 업종별시설기준에 “① 영업장은 연기 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리장은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음식점 영업 허가나 변경 허가 시 영업장과 조리장의 내부 환기시설도 중요하지만, 배출되는 연기 유해가스 등으로부터 주변의 주거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고려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피신청인 1이 이런 점을 단순 간과하여 해당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 ○. ○○. 1차 현장 확인 후 같은 해 ○. ○○. 울산광역시 식의약 안전과와 관련 회의를 가진 후 울주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같은 해 ○. ○○. 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 울주군 위생과와 합동으로 2차 현장 방문하여, 해당 식당 영업주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영업주는 신청인의 불편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으나, 식당 사정으로 인해 당장 개선은 어렵고, 올해 4월 중에 신청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환풍구 방향을 바꾸는 등 시설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에게도 유선으로 연락하여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신청인도 이에 동의 하였다.

■ 결론 : 조사중 해결

가.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음식점 영업주가 ○월 중에 시설개선을 약속했으며, 신청인도 이에 동의 하였으므로, 조사중 해결로 종결하고자 한다.

나. 아울러 신청인과 영업주간의 행정을 통한 간접적인 약속이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울주군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점검을 촉구하고자 한다.

4 허리수술 전 검사 비용 지원 요청

민원표시/의결일자	2023-고-0021 허리수술 전 검사 비용 지원 요청 / 2023. 4. 11.
신청인 / 피신청인	○○○(울산 남구) / 남구청장(복지지원과장)
결정결과	조사중 해결(주심위원 : 강승모)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인은 동사무소에서 허리 수술비용이 지원된다고 하여, 수술을 위해 사전검사를 받았는데, 이후 동사무소에서 수술비용이 전액 지원 안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음. 본인은 수술비용 차액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수술을 받지 않고, 수술전 받은 검사 비용(60만원 정도)은 지원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의 경우 『2023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입원 중에만 신청 가능하며, 입원 전에 진단을 위해 받은 검사비용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

이 민원 관련 그간 추진 상황 및 민원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 ○○. : 민원인이 ○○동 담당자에게 의료비 지원 안내 요청

- 민원인은 병원 검진을 사전에 받은 상황으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적용 받을 경우 약 400만원 정도의 병원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나. ○○. ○○. : ○○동 담당자가 민원인과의 통화를 통하여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

- 긴급지원 원칙상 입원 전 진단을 위한 검사비용은 지원되지 않음을 안내함
- 입원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최대 300만원 까지 가능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생활실태에 따른 추가지원 검토 가능

- 긴급의료비 지원의 경우, 결론적으로 입원 중 제출한 객관적 자료에 따라 진단명, 수술명, 병원비, 보험여부, 타기관 지원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입원 전에 의료비 지원 여부를 확정적으로 안내해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
- 다. ○○. ○○. : 병원비 전액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술할 생각이 없으므로 수술 전에 검사(mri)받은 비용을 지원해 달라며 민원 제기
- 라. ○○. ○○. : 민원인 가정 방문하여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 재안내 및 소액의료비 발생에 대한 생계비 지원 연계 검토 안내
- 마. ○○. ○○. : 민원인에게 공동모금회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으로 50만원 지급 완료

쟁점

수술 전 검사비 지급 가능 여부

판단

가. 신청인의 민원은 신청 취지와 같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에 사전에 받은 검사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다.

나. 우선, 「긴급복지지원법」 및 『2023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긴급지원이 결정된 경우 ‘입원시로부터 퇴원시’까지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입원 전 사전에 검사한 비용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이 민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한 이후, 피신청인측에서 신청인의 여러 사정(고령인 점, 관련 안내를 오해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생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모금회 생계비 지원 사업으로 연계하였으며, 해당 사업에 따른 지원이 결정되어 지원금 50만원이 2023. ○○. ○○일자로 신청인에게 지급이 완료되었다.

결론 : 조사중 해결

따라서 신청인의 민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조사 중에 해결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민원을 종결한다.

5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수리 및 돌레길 청소 요망

민원표시/의결일자	2023-고-0024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수리 및 돌레길 청소 요망 / 2023. 5. 1.
신청인 / 피신청인	○○○(울산 동구) / 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공원녹지과장, 자원순환과장)
결정결과	조사중 해결(주심위원 : 박호수)

신청취지 및 이유

울산과학대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고장, 대왕암공원에서 슬도에 있는 소리체험관으로 이어져 있는 돌레길 바닷가에 파도로 인해 밀려온 쓰레기가 인근주민 및 돌레길을 걷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주1회 정도 청소하고 재활용품과 관련하여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홍보 및 의식을 변환할 수 있도록 계도 요구

피신청인 주장

가. 화정주공아파트 앞(27123) 버스승강장 내 온열의자 보수요청은 고장 신고로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온열 의자 설치사업 중 현장 여건상 직접 전기인입이 불가하여 보조 전주를 설치하는 과정에 한전측 작업지연으로 그 동안 미작동 하고 있었고 2023. ○. ○.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신주설치 및 계량기 설치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나. 대왕암공원에서 소리체험관으로 이어진 돌레길 해안가에 바닷가에서 밀려온 쓰레기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편 초래는 해당구역 기간제 근로자가 1-2일에 한 번 돌레길 청소를 하고 있으나 오후 4시까지 근무시간이라 이후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여서 저녁 시간대까지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중에 있으며, 추후 근무 시작 시 최대한 청소 근로자의 공백시간이 짧도록 하여 쾌적한 해안가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 최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하며, 이에 따른 재활용품이 다량 발생함에 따라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 요구되며,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배달용기 및 1회용컵 등의 1회용품 사용 등이 급증하며, 1회용품 저감 및 올바른 분리배출 시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공공 민간부문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민간부문에 대하여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 중입니다.

- 공공 · 민간 부문 전반적인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 수립
 - (공공) 1회용품 사용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권장 추진
 - (공공) 자체 점검 및 교육 시행을 통해 부서별 참여 유도
 - (민간) 부문 주민 맞춤형 교육 및 홍보 시행으로 자발적 참여 유도
- 공공일자리 등을 활용한 재활용 분리배출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 홍보
 - 재활용 분리배출 민원지역 확인 및 오배출 대면 안내 · 홍보 실시
 - 매주 1회 1회용품 사용 규제 업소를 방문하여 홍보 추진
- 자원순환활동가를 활용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홍보 및 캠페인 시행

■ 사실관계

가. 버스 승강장 전열의자 수리 요청은 피신청인이 한파저감시설사업으로 총사업비 〇〇,〇〇 〇천원으로 사업기간 2023. 〇. ~ 2023. 〇. 사업내용 울산 동구일원 버스 승강장 내 온열의자 설치 사업에 착수하였다. 2023. 〇. 〇〇. 온열의자 조달구매를 하였고 2023. 〇. 〇 〇. 버스 승강장내 전기인입 공사를 착수하였다. 신청인이 버스 승강장내 온열의자 고장신고 수리 요청은 당해 버스 승강장[화정주공아파트 앞(27123)]전기인입을 위한 보조 전신주 설치공사가 지연되어 사용할 수 없었고 보조 전신주 추가 및 계량기 설치가 2023. 〇. 〇. 완료되어 현재는 한파저감시설사업을 마무리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대왕암공원에서 소리체험관으로 이어진 둘레길 해안가에 바닷가에서 밀려온 쓰레기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편 초래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유원지 환경정비 사업으로 2023. 〇. 〇.

~ 2023. 00. 00. 6개월간 총사업비 00,000천원으로 유원지 환경정비 및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사업을 추진 중으로 연안 폐기물 작업단, 바다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및 1회용품 사용저감 대책은 총사업비 000,000천원으로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폐전지, 종이팩, 폐형광등 교환보상제는 연중 시행, 과대포장 행위 지도점검 및 홍보 실시는 연 2회 실시, 1회용품 사용점검 및 홍보 실시는 연 4회, 재활용품 다량 배출사업장 점검 및 홍보 실시는 연 2회,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추진은 연중,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는 운영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쟁점

- 울산과학대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고장수리 요구
- 대왕암공원에서 슬도 소리체험관으로 이어져 있는 돌레길 쓰레기가 인근주민 및 돌레길을 걷는 관광객들에게 불편 초래, 주1회 정도 청소요청
- 재활용품과 관련하여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시민 홍보 및 계도 요구

판단

가. 동구 관내 버스승강장내 온열의자 설치 사업인 한파저감시설설치사업은 2023. 0. 0일경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울산과학대 버스정류장(화정주공아파트 앞)은 보조전신주 추가 설치로 지연되었다가 2023. 0. 0일 설치 완료되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 대왕암공원에서 슬도에 있는 소리체험관으로 이어지는 돌레길 주변에 쓰레기로 인하여 인근 주민 및 돌레길을 걷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지역 이미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2023. 0월부터 시작되는 유원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근무시 다른 사업 기간 제 근로자와 합동하여 1일 2회 오전, 오후로 시행하여 쾌적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다.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 1회용품 저감 및 올바른 분리배출 시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피신청인도 공감하여 공공, 민간부문 전반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계획에 있고, 민간부문에 대하여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즉 세부 실천 방법으로는 과대포장 행위 지도 점검 및 홍보실시 연 2회, 1회용품 사용점검 및 홍보실시 연 4회, 재활용품 다량 배출사업장 점검 및 홍보실시 연 2회 등을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자 한다.

■ 결론 : 조사중 해결

따라서, 본 신청 민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사이 대립되는 쟁점은 없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사 기간 해결되었거나 처리 중에 있으므로 조사중 해결로 종결 처리.

6 복구 ○○○○체육센터 문제점 수정 요청

민원표시/의결일자	2023-고-0040 복구 ○○○○체육센터 문제점 수정 요청 / 2023. 7. 10.
신청인 / 피신청인	○○○(울산 복구) / 울산광역시 복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정결과	조사중 해결(주심위원 : 강승모)

신청취지

복구 ○○○○체육센터 회원 모집 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방문 접수만 할 수 있는데, 인터넷 접수로 인원이 마감될 경우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니 시정해주고, 헬스장 입구에 오픈형 공용 신발장을 설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한 접수 방법 변경 가능 여부

- 변경 가능 여부 : 유
- 변경 방식 : 인터넷 접수와 방문 접수 병행
- 실제 현장 상황 : 인터넷 환경 상에서 결제가 불가한 고객(인터넷 취약 계층)들이 인터넷 접수 기간 중이라도 안내데스크로 와서 요청 시 센터 직원이 컴퓨터로 인터넷 접수를 도와 드리고 있음.

나. 헬스장 입구 오픈형 공용 신발장 설치 가능 유무

- 현재 헬스장 입구와 다목적실 입구에 공용 신발장이 충분히 있으나, 민원인은 개인 전용 신발장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추가 설치 불가

사실관계

이 민원 관련 그간 추진 상황 및 민원 발생 경위

-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신청인은 매월 인터넷 접수 시간에 센터에 방문하여 현장 접수를 하여 왔으나, 올해 5월에는 헬스장 인터넷 접수 기간(인터넷 접수 및 방문 접수 기간) 후에 접수를 하러 왔으며, 잔여 인원이 없는 관계로 접수를 하지 못하였다.

☑ 신청인의 그간 헬스장 접수 현황

구분	인터넷 접수기간	민원인 접수일	비고
2월	1/20 ~ 1/26	1/26	접수
3월	2/21 ~ 2/25	2/23	접수
4월	3/23 ~ 3/28	3/24	접수
5월	4/21 ~ 4/26	4/28	방문접수기간에 접수
6월	5/23 ~ 5/27	5/30	접수못함

▮ 쟁점

- 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한 접수 방법 변경 가능 유무
- 나. 헬스장 입구 오픈형 공용 신발장 설치 가능 유무

▮ 판단

- 가. 신청인의 민원은 위 신청 취지와 같으며, 그 중 문화누리카드 이용 관련 민원에 관해, 아래 보고서와 같이 인터넷 취약 계층의 경우 인터넷 접수와 방문 접수를 병행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 나. 또한, 7월 정기회원 모집 안내 문자 발송 시에도 ‘인터넷 결제불가 고객 인터넷 접수 기간 중 방문 접수 병행 실시(예 문화누리카드 인터넷 결제 미신청자)’라고 별도로 안내를 함으로써 피신청인이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다. 한편, 우리 위원회가 2023. 00. 00. 울산 0000체육센터에 방문 조사해 본 결과, 아래 사진과 같이 헬스장 입구 쪽으로 공용 신발장이 충분히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와 관련한 신청인의 오픈형 공용 신발장 증설 요청은 이유가 없어 보인다.

📷 헬스장 입구 공용 신발장



■ 결론 : 조사중 해결 및 심의안내

따라서 이 건 민원 중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와 관련한 요청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 중에 해결이 되었으며, 오픈형 공용신발장 증설은 헬스장 입구 쪽으로 공용 신발장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이를 이용해 주실 것을 신청인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종결하고자 한다.

7 거주지 앞 벤치 철거 요구

민원표시/의결일자	2023-고-0070 거주지 앞 벤치 철거 요구 / 2023. 9. 11.
신청인 / 피신청인	○○○(울산 남구) / 울산광역시남구청장(도시창조과장)
결정결과	조사중 해결(주심위원 : 이상일)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 설치한 벤치를 철거해달라고 남구청에 요청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고, 사생활 침해, 주차자 소란 및 쓰레기 투기 등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므로 조속히 벤치를 철거해 줄 것을 요구

피신청인의 주장

○○동 골목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소로3류(8m 미만인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상 휴게공간 조성 및 기존 “수목보호벤치”에서 “평벤치”로 교체됨(사진1)에 따른 벤치 이용자 증가로 인한 문제로 판단되는 바, 민원인 거주지 앞 벤치를 포함하여 벤치 4개소 철거 필요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관련 그간 추진 상황

- 2019. ○. 경. : 설치 공사 업체에 의견 제시
- 내용 : 거주지 앞 도로에 벤치 설치 반대
- 2021. ○○월 : 남구청 도시창조과 철거 요청 방문(담당 계장 및 담당자 면담)
- 내용 : 거주지 앞 벤치로 사생활 침해 및 주차자로 인한 고통 호소
- 2023. ○. ○○.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접수
- 내용 : 거주지 앞 벤치 철거 요구
- 2023. ○. ○○. : 현지조사(권익인권담당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피신청인, 신청인)

나. ○○동 골목공원 조성사업 개요

- 위 치 : 남구 ○○로 ○○○번길, ○○○번길 일원

- 공사기간 : 2019. ○. ○. ~ 2019. ○○. ○.
- 공사내용
 - 골목공원 조성 2개소(L=65m, B=5m~6m, A=392㎡)
 - 노후 포장재 철거(보도블록 199㎡, 아스콘 168㎡)
 - 인조화강석블록 포장(282㎡)
 - 휴게공간 조성(벤치 설치 및 관목 식재)

▮ 쟁점

신청인 거주지 앞 도로에 설치된 벤치 철거 가능 여부

▮ 조사자의 의견

가. 이 민원 “○○동 골목공원 조성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월에 준공되었고, 남구 ○○로 ○○○번길, ○○○번길 일원 등 2개소에 노후 포장재 철거 및 인조화강석블록 포장, 벤치 설치 및 관목 식재 등 휴게공간 조성을 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동 내 오래전에 지어진 집들이 대부분으로 관리가 잘 안되어 있었고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진행된 사업으로 주민들의 휴식 공간 및 정원 조성을 통해 도심의 공간을 재정비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제기 이전 수 차례 피신청인 사업부서 담당자를 만나 벤치를 철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으며, 현장에서 공사 착수되던 2019. ○월경 조성사업 시에도 설치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제기하였음에도 현장 시공하는 공사 관계자는 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면서 신청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벤치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다. 이로 인해, ○○동 골목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된 2019년 ○○월 이후부터 신청인의 거주지 바로 앞 공원에 설치된 벤치에서 많은 이용자가 거주지 창문을 마주보고 앉아 있어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등 사생활 침해의 피해를 당하여 왔고, 주차차 소란 및 쓰레기 투기 등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상당한 기간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고 하니 그 고통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으로 보여진다.

라. 이에, 우리 위원회가 2023. ○. ○○. “○○동 골목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조사해 본 결과, 골목공원 인접한 상가에서도 벤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고, 공원 내 총 4개소에 설치된 벤치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철거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마.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셉테드) 가이드라인이 지자체별로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고, 피신청인 또한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2019년 12월)(그림2)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도시 및 건축공간 설계시 범죄 기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적용)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생략) 4. 그 밖에 구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 정비사업, 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공원 조성사업, 공공시설물 건축물 등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피신청인이 조성한 “○○동 골목공원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휴게공간이 기존 건축물(주택가)의 안전한 생활환경에 유해 요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택가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유해요소인 벤치를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여진다.

바. 또한, 2023. ○. ○○. 현장간담회시 피신청인도 ○○동 골목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소로3류(보행자전용도로) 상 휴게공간 조성 및 기존 수목보호벤치에서 평벤치로 교체됨에 따른 벤치 이용자 증가로 인한 문제로 신청인의 불편함을 공감하였고, 신청인 거주지 앞 벤치를 포함하여 골목공원 내 벤치 4개소를 조속히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통지하였음(2023. 9. 7. 철거완료).

☒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1. 가이드라인 개요

① 가이드라인 수립 목적 및 활용방안

[수립목적]

- 울산 남구의 지역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필요
- 울산 남구 지역의 도시디자인 및 도시재생사업 진행 시 적용할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보급 및 운영방안 제시
- 가이드라인 보급을 통해 실무 담당자의 이해 증대와 디자인 체크리스트 활용

[적용범위]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울산 남구의 공무원, 설계자, 남구민 등이 도시디자인 및 도시재생사업의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활용
- 울산 남구의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공공공간과 시설물에 적용 : 가로, 공원, 주차장, 건축물, 공공 및 방범시설물 등
- 개별 건축물 및 시설물의 신규 조성 시 지역의 방범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용
- 지역민의 방법의식 고취, 방범시설의 신규설치 및 업그레이드, 건축물의 신축과 리모델링, 대규모 단지개발, 공공장소 안전증진 등 남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활용 가능

[활용주체 및 방법]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활용주체는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기획 및 설계자, 심의 및 평가위원, 남구 주민 등으로 구분

[표 3-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활용주체 및 방법

활용주체	활용방법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공공사업(도시디자인, 도시재생 사업 등) 추진 시 사업내용에 활용 ·설계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사에 가이드라인 제공 ·설계 결과물에 대해 체크리스트 적용 ·범죄예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공무원 및 주민교육에 활용
기획 및 설계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계 기준으로 활용
심의 및 평가위원	·건축/경관/디자인 심의 등 관련사업의 평가 시 검토 기준으로 활용
남구 주민	·지역의 공공사업 진행 시 가이드라인 반영 요구 ·주민참여 방법활동 및 환경관리의 기준으로 활용

결론 : 조사중 해결

이 민원 관련 요청 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고충민원 현장간담회를 통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민원사항에 공감하여 원만히 해결된 사안으로 조사중 해결되어 민원을 종결하고자 한다.

8 도심지 내 쓰레기 불법소각방지 및 교육을 통한 계도 요청

민원표시/의결일자 2023-고-0076 도심지 내 쓰레기 불법소각방지 및 교육을 통한 계도 요청 / 2023. 10. 30.

신청인 / 피신청인 ○○○(울산 북구) / 북구청장(자원순환과장)

결정결과 조사중 해결(주심위원 : 박호수)

신청취지

북구 ○○마을 내 주민들의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니, 지속적인 단속 및 교육을 통한 환경개선 계도를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제기한 ○○마을 인근 현장 방문 및 행위 추정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연료용 또는 난방용으로 목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폐기물관리법」 상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순수 목재를 제외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지도하였음

나. 또한, 불법소각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10월 중 ○○마을 내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 후 수시 순찰을 통해 불법소각을 적의 모니터링하여 주민불편 해소 도모

다. 동절기 소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을 내 불법소각 예방 현수막 설치 및 통장회의 시 불법소각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여 소각에 대한 주민들의 자율적 인식 개선을 유도할 예정임

사실관계

이 민원 관련 그간 추진 상황 및 민원 발생 경위

- 2023. 00. 00. :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야간 불법 소각 단속 요청)
- 2023. 00. 00. : 민원관련 현장 확인 및 계도(자원순환과-20554호)
 - 현장 방문 시 불법 소각 미발견
- 2023. 00. 00. : 통장회의 시 불법소각 금지 요청 공문 발송(자원순환과-20966호)
- 2023. 00. 00. : 소각민원 관련 인근 순찰 및 계도(자원순환과-23972호)
 - 현장 방문 시 불법소각 미발견
- 2023. 00. 00. : 통장회의 시 불법소각 금지 요청 공문 발송(자원순환과-23724호)
- 2023. 00. 00. : 불법소각 특별단속 계획 수립(자원순환과-26047호)
- 2023. 00. 00. :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 순찰(북구 전역 민원 다발 지역)
- 2023. 00. 00. :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 순찰(하나로마트, 울산공항, 북구문화원 인근)
- 2023. 00. 00. :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 순찰(농소2동 00마을 인근)
- 2023. 00. 00. :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 결과보고(자원순환과-27621호)

불법소각 특별단속 추진계획

<div style="text-align: center;">  새희망 이어도시.영동북구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 10px 0;"> <tr> <td style="width: 25%;">연월일</td> <td style="width: 25%;">연월일</td> <td style="width: 25%;">연월일</td> <td style="width: 25%;">연월일</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불법소각 특별단속 추진계획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 10px 0;">2023. 10.</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순환과) </div> <div style="margin-top: 10px;"> <p><input type="checkbox"/> 조치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소각 금지 안내 현수막 게시 및 홍보 ○ 주민계도 및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div>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불법소각 특별단속 추진계획 </div> <p style="font-size: small;">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새벽·저녁시간대 불법소각 행위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소각 민원 발생을 줄이고자 함.</p> <div style="margin-top: 10px;"> <p><input type="checkbox"/>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무기금지 등) <p><input type="checkbox"/> 단속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자 : 2023. 10. 19.(목) ~ 10. 25.(수) 새벽·저녁시간대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지 역 : 불법소각민원 다발 지역 중심으로 관내 전지역 ○ 단속인원 : 3개 반 10명 ○ 단속내용 : 생활폐기물,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p><input type="checkbox"/>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장 및 사업장 불법소각 지도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시간 : 2023. 10. 24.(화) ~ 10. 25.(수) 07:00 ~ 08:00 - 단속지역 : 송정지구 건설공사장, 진장명훈동, 맥곡동 단지역 등 - 단속내용 :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여부 확인 및 지도 등 ○ 도농 경계지역 불법소각 지도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시간 : 2023. 10. 19.(목) ~ 10. 23.(월) 08:00 ~ 09:00, 17:00 ~ 20:00 - 단속지역 : 차일마을 등 관내 도농 경계마을 - 단속내용 :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여부 확인 및 과태료 부과사항 안내 </div>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 불법소각 특별단속 결과보고

등록번호	서울 순환로 77021			
등록일자	2023. 10. 26.	주무관	폐기물관리담당관	작성승인일자
관리일자	2023. 10. 26.	연		2023. 10. 26.
관리역무	대역민 관계	주		

새원앙 미래도시.영동북구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 결과보고

2023. 10.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순환과]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 결과보고

관내 불법소각 민원다발지역에 대하여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새벽, 저녁시간대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특별단속 결과 보고임

□ 단속개요

- 장 소 : 폐기물 불법소각 민원 다발지역
- 기 간 : 10. 19. ~ 10. 25. 목 단속서진 새벽 저녁시간대
- 단 속 반 : 자원순환과장(총반), 특별단속반 편성(3개소, 10명)
- 단속방법 : 순찰을 통한 폐기물 불법소각 민원 다발 지역 단속

□ 단속결과

- 순찰일시 및 지역

일시	순찰지역
10. 20.(금) 18:30~20:00	북구 권역 민원 다발 지역
10. 24.(화) 07:30~09:00	히나로마트 휴먼힐 인근 경작지 → 휴먼힐 인근 경작지 → 순천동 울산북구문화원 인근 경작지
10. 25.(수) 17:00~19:00	동소2동 화정마을 인근

- 순찰 결과 폐기물 소각 흔적이나 행위를 발견치 못한.
- 도농 경계지역의 경작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소각 금지 안내문 배부

□ 향후계획

- 폐기물 불법소각 민원 다발 지역 중심으로 수시순찰을 통해 쓰레기 불법 소각, 영농부산물 및 논밭 소각 행위 사전 방지
- 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연수학 개시,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주민 계도
-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조치

붙임 1. 폐기물 불법소각 민원다발지역 현황 1부.
2. 현장사진 1부. 끝.

붙임1 폐기물 불법소각 민원다발지역 현황

폐기물 불법소각 민원다발지역 현황(총 9개소)

(2023.10.12.기준)

동 별	연 번	소 계 지
농소1, 2, 3동 (2개소)	1	화정마을(삼우아파트) 인근
	2	일지리버아파트-쇠부리체육센터 사이 밭
	3	대안동 효원아스콘(주) 인근
효문동, 송정동, 강동동 (6개소)	4	달곡마을
	5	울산공항 인근 경작지
	6	효암로 103 인근
	7	원연암마을 효암로 인근
	8	진장동 메가마트 인근 동천강변
염포동, 양정동 (1개소)	9	염포운동장 인근 경작지

붙임2 사진대장

삼우아파트 인근

효암로 103 인근

염포운동장 인근

대안동 효원아스콘(주) 인근

📷 불법소각 금지 안내 현수막 게시 및 홍보



쟁점

가. ○○마을 내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 및 환경개선 계도, 주민 교육 가능 여부
 나. 쓰레기 불법소각에 따른 주민 불편 개선 방안

판단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제기한 북구 ○○ ○길 ○○ 및 북구 ○○ ○길 ○○ 인근 현장에 방문하여 폐기물 불법소각 환경순찰 및 행위 추정자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연료용 및 난방용으로 목재를 소각한 적은 있으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행위는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피신청인은 환경 순찰 시 만약 순수 목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상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지도하였으며,

다. 동절기 불법 소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을 내 불법 소각 예방을 위한 현수막을 설치(사진1 참조)하였고, 통장회의, 경로당,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불법소각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교육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인식개선 유도하고 홍보를 하는 등 폐기물 불법 소각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고,

라. 또한, “불법소각 특별단속 추진계획”(문서1 참조)을 별도로 수립하여 수시 순찰 및 야간 순찰을 통해 불법 소각을 적의하게 모니터링하여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결론 : 조사중 해결

신청인이 요청한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 및 환경개선 계도, 주민 교육 요청’에 대한 건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조사중 해결된 것으로 하고, 불법 폐기물 소각 민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민원을 종결하고자 한다.

9 ○○ 동 행정복지센터앞 교차로 관로 정비 요청

민원표시/의결일자 2023-고-0081 ○○ 동 행정복지센터앞 교차로 관로 정비 요청 / 2023. 11. 13.

신청인 / 피신청인 ○○○(울산 복구)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건설부장), 복구청장(건설과장)

결정결과 조사중 해결(주심위원 : 박호수)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인은 복구 ○○ 동 행정복지센터앞 교차로(○○동 ○○○-○) 일원 도로에 태풍이나 폭우시 도로가 침수되어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관로 정비(측구 우수받이)를 요청함

피신청인의 주장

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건설부장)

- 폭우 시 상습 침수되는 도로로 지속적인 배수로 준설이 필요하며, 추가로 우수받이 설치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여 민원해결하고자 함.
- 현재 개설된 우수받이 준설 작업 실시 요청하고, 원활한 배수를 위한 우수받이 3개소 정도 추가 설치 검토 계획임.<그림2. 시공지시서>

나. 울산광역시 복구청장(건설과장)

- 복구 ○○동 ○○○-○번지 일원, 침수 민원 1차 접수(23. ○. ○○.)되어 우수받이 토사준설 및 나뭇가지 제거 등 조치 완료하였으나, 2차 접수(23. ○. ○○.) 당시 우수관로 점검 확인결과 관로 단절로 인한 준설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 측구(우수받이) 오수받이 오점, 관로 단절, 본관 연결 단절 등 불량 확인

- '24년 우수관로 정비 예산으로 ○○로 보도구간 우수관로 부설공사 추진 예정(복구 건설과 하수팀)

■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관련 그간 추진 상황

- 2023. 00. 00. : 1차 민원 접수(복구 건설과 유선)
 - 00 0동 행정복지센터 입구 삼거리(0000 앞) 3차선 침수 신고
- 2023. 00. 00. : 나뭇가지 제거 등 긴급 조치 완료
- 2023. 00. 00. : 2차 민원 접수(복구 건설과 유선)
- 2023. 00. 00. : 현장출동
 - 긴급준설 시도하였으나, 관로 단절 및 오점으로 인해 준설 불가능
- 2023. 00. 00. ~ 00. 00. : 민원사항 유선 전달(복구→시 종합건설본부)
- 2023. 00. 00. : 공문 발송(복구→시 종합건설본부) <그림1>
 - 동일 민원 지속적 발생에 따른 우수받이 정비 요청

나. 민원 발생 경위 및 사실관계 설명

- 2023. 0. 00. 오전 집중호우로 인해, 00 0동 행정복지센터 입구 삼거리(0000 앞) 3차선 침수 신고(당직실, 건설과 등)
 - 긴급준설 시도하였으나, 관로 단절 및 오점으로 인해 준설 불가능

■ 쟁점

태풍이나 폭우시 도로 침수에 따른 관로 정비(측구 우수받이) 가능 유무

■ 조사자의 의견

가. 신청인은 복구 00 0동 행정복지센터앞 교차로(00동 000-0)일원 도로에 태풍이나 폭우시 침수되어 사고위험 및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민원으로 관로정비(측구 우수받이 정비)요청한 건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바 폭우가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확인은 불가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비가 필요한 지역임

시공지시서 원부			시공지시서(복구완료보고서)										
지시번호	계 복구 - 6호		지시번호	계 복구 - 6호		다음과 같이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시일자	2023년 10월 25일		위	도로명	동 번지 1개소		2023년 10월 25일						
담당자			치	위 치	불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공정	울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 인					
지	도로명	동 번지 1개소	시	지시일자	2023년 10월 25일		사용 자재						
시	위 치	불임 참조		현장도착	시	월	일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내	공 정	우수측구 준설 등	공	작업완료	시	월	일						
용			결										
세부공정	우수측구 준설 우수받이 신설 등		과	구분	세부공정		수량		단위		비고		
신고유형	국민신문고 등		보	1									
세부위치	불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고	2									
상기와 같이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5일 울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 인			조치결과 (복구내용)	3									
				4									
				5									
				6									
			위와 같이 복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대표										

나. 고충민원으로 접수되어 복구청에 통보하니 2023. ○. ○○일자로 민원이 복구청에 1차 민원을 접수한 상태이며 당일 우수받이 토사준설 및 나뭇가지를 즉시 제거 조치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빗물이 고이는 것을 확인하고 2023. ○. ○○일 우수관로를 재 점검한 확인한 결과 우수받이 관로가 오점으로 관로가 단절된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준설작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 복구청에서는 관리부서인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연락하여 우수받이 오점 및 관로단절에 대한 상태로 우수받이 연결이 필요한 것으로 공문 통보(그림1. 공문 발송(복구→시 종합건설본부))하였고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우수받이 오점 및 관로단절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여 2023. ○○. ○○일자로 (주)○○○○에 배수로 정비공사 단가계약 시공 지시(그림2. 시공지시서(시 종합건설본부))를 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정비공사 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 시행토록 조치하였으므로 조사중 해결로 조치하고자 함.

결론 : 조사중 해결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1(시 종합건설본부장)이 우수측구 준설 및 우수받이 신설 공사 등으로 이 민원은 해결되었으며, 피신청인에게 향후 지속적인 도로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게 도로 관리하도록 협조요청하며 이 민원을 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10 중구 ○○ ○길 집앞 보안등 설치 요청

민원표시/의결일자 2023-고-0084 중구 ○○ ○길 집앞 보안등 설치 요청 / 2023. 12. 19.

신청인 / 피신청인 ○○○(울산 중구) / 중구청장(건설과장)

결정결과 조사중 해결(주심위원 : 박호수)

■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인은 중구 ○○ ○길 ○○-○ ○○연립 앞에 5~6년 전 보안등이 철거된 후 다시 설치 되지 않아 주변이 어둡고 우범지역으로 되어 안전에 취약하므로 보안등 설치를 요청함

■ 피신청인의 주장

가. 중구 ○○ ○길 ○○-○ ○○연립 앞 골목은 전주 4개가 있으며, 4개의 전주 중 변압기가 설치된 2개의 전주는 보안등 설치가 불가함

- 보안등 설치 후 재개발 구역이 아닌 이상 거의 철거하지 않으므로, 해당 위치에 보안등이 있다가 없어졌다는 민원에 대하여는 기존 보안등이 구청에서 설치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하며, 구청에서 설치한 보안등이라 하더라도 현재 신청인이 요구하는 해당 전주는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어 변압기를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 울산지사에 확인한 결과, 보안등 설치 불가함
- 해당 골목은 내리막길로 “○○ ○동 ○○” 보안등<그림1. 위치도 ①보안등>을 LED 2등용으로 교체 후 LED 1등을 골목으로 비추는 것이 최선의 조도 개선 방법이라고 판단됨

- ○○ ○길 ○○-○ 앞 전주에는 “○○ ○동 ○○” 보안등<그림1. 위치도 ③보안등> 1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다른 주택의 눈부심 민원으로 차광막을 설치한 상태로 더 밝은 LED로 교체는 불가한 실정임

나. 자체 폴대를 세워 보안등을 설치하기에는 차량 충돌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개별 보안등 설치는 어려움

다. ○○연립 다동(노란색 건물) 옆 지주는 통신주로 통신장애 유발 가능성이 있어 보안등 설치는 불가함

■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관련 사업

- 사업명 : 분기별 보안등 설치 및 교체 공사
- 사업기간 : 분기별 진행
- 총사업비 : 1분기(○○,○○○천원), 2분기(○○,○○○천원), 3분기(○○,○○○천원)
- 주요내용 : 밝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보안등 교체 및 신규 설치

나. 이 민원 관련 그간 추진 상황

- 2023. ○○. ○○. : 다른 민원인의 동일 민원 접수(유선)
 - (주요내용) 중구 ○○ ○길 ○○-○ ○○연립 앞 전주에 예전에는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철거된 이후 민원을 넣어도 신규 설치를 해 주지 않는다. ○○연립 다동 앞이 어두운데 바로 앞에 전주가 있으니 보안등을 신규 설치해 달라
- 2023. ○○. ○○. : 민원사항 현장확인을 하고 유지보수 업체에 “○○ ○동 ○○” 보안등<그림1. 위치도 ①보안등>등기구를 LED 2등용으로 교체 지시
 - 해당 구역 유지보수 업체가 LED 교체 중 “지금까지 눈부신데도 참고 살았는데 더 밝게 바꾸면 잘 때 너무 괴롭다”라는 눈부심 민원 발생
 - 해당 골목의 남쪽은 주택의 북쪽 방향으로 대부분 벽이라 주택 내부로 보안등 불빛이 들어가지 않으나, 해당 골목의 북쪽은 주택의 남쪽 방향이므로 큰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 보안등을 밝게 할 경우 눈부심 민원으로 이해충돌이 있음
 - 눈부심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에게 해당 상황을 안내하고 차광막을 설치하여 민원사항을 절충

☒ 위치도



☒ 전주①, ②



전주 ③, ④



조치 전·후



①보안등(○○ ○동 ○○) 교체 전



①보안등(○○ ○동 ○○) 교체 후



③보안등(○○ ○동 ○○) 교체 전



③보안등(○○ ○동 ○○) 교체 후

 한전주② 협의 공문



한국전력공사



수신 울산광역시중구청장(건설과장)
 (경유)
 제목 보안등 설치 가능여부 검토 결과 회신

1. 평소 전력사업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과- (2023-) 관련으로 한전 소유 배전전주에 귀 기관의 보안등 설치가능 여부를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설치개소 : 길 (전주번호)
 - 나. 검토결과 : 설치불가(기기주 불가)

붙 임 : 보안등 배전전주 기술 검토 결과 1부. 끝.

울 산 지 사 장



대리	팀장	부장	전결 2023. 11. 21.
협조자			
시행 울산지(고객)-	(2023.)	접수 건설과-	(2023.)
우 44688	울산 남구 돌길로 181		/ http://www.kepco.co.kr
전화번호 052-	팩스번호 052-	/	/ 대한민국 공개

쟁점

중구 〇〇〇길 〇〇-〇〇〇연립 앞 보안등 설치 가능 여부

조사자의 의견

가. 신청인은 울산광역시 중구 ○○ ○길 ○○-○ ○○연립 앞에 예전에는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보안등 철거 후 재설치를 해 주지 않아 어두운 밤길에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에게 안전상 위험이 있다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보안등을 설치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설치해 주지 않아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기존에 보안등이 있었는데 철거 후 재설치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보안등 설치 후 재개발지역이 아닌 이상 철거하지 않으며, 해당 위치에 보안등이 있었다가 없어졌다는 것이 피신청인이 설치한 후 철거한 것인지는 사실 확인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다. 본 민원에 대하여 2023. ○○. ○○. 위원회와 신청인, 피신청인이 현장에서 함께 확인한 바, 중구 ○○ ○길 ○○-○ ○○연립 앞 소방도로 약 90m 구간(그림1. 위치도) 전주 4개가 존재하고, 4개의 전주 중 ○○ ○길 ○○-○ 앞 전주(그림3. 전주③) 보안등과 ○○ ○길 ○○-○ ○○연립 위 (그림2. 전주①)에 보안등이 2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보안등 설치 간격이 50m 정도 떨어져 있어 중간에 보안등 설치가 필요한 지역임을 확인하였고, 피신청인 또한 보안등 추가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라. 어두운 골목길을 개선하기 위해 중구 ○○ ○길 ○○-○ ○○연립 위 전주(그림2. ①)에 2023. ○○. ○○. LED 2등용으로 교체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눈부심과 수면장애 등의 민원이 있어 보안등에 차광막을 설치하였다.

한편, 주거지역 내 보안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안등 설치에 따른 주거지 눈부심과 수면장애 등 여타의 불편이 발생하므로 추가 보안등 설치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 민원이 제기된 소방도로에는 4개의 전주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은 기존 보안등(① ~ ③)사이에 설치된 한전주(○○ ○길 ○○-○)(그림2. 전주②)에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보안등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 2023. ○○. ○○. 한국전력공사

울산지사에 보안등 설치에 대한 가능 여부를 조회한 결과<그림5. 한전주② 협의 공문> “일부 한전주(②, ④)에는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바. 이에 ①~③ 기존 보안등 설치 구간(50m) 중간에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는 변압기가 설치된 한전주에는 보안등 설치가 불가하여 “보안등 전용주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자체 보안등 전용 지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근에 통행차량과 주차 차량으로 인한 차량충돌 사고우려, 차량충돌 시 시설물 파손 및 전기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추가 보안등 설치 지점 선정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사.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 〇〇. 〇〇.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함께한 현장간담회에서 상호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 1) 중구 〇〇 〇길 〇〇-〇 〇〇연립 위 “〇〇 〇동 〇〇” 보안등<그림1. 위치도 ①보안등>을 LED 2등용으로 교체 후 LED 1등을 〇〇연립 방향 골목으로 비추도록 조정한다.
- 2) “〇〇 〇동 〇〇” 보안등<그림1. 위치도 ③보안등> 1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LED 2등용으로 교체 후 LED 1등을 〇〇연립 방향 골목으로 비추고, 눈부심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차광막을 설치한다.

아. 기존 보안등의 LED 등기구 교체 및 조도 조정 후에도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보안등 전용주를 설치하기로 협의하였고, 2023. 〇〇. 〇〇. 신청인과의 협의에서 현장에서 절충한 보안등 설치로 현재는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고충이 해소되었음을 확인하여 조사중 해결로 이 민원을 종결코자 한다.

■ 결론 : 조사중 해결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 현장간담회를 통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고충사항에 공감하고, 보안등 추가 설치와 조도 조정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된 사안으로 조사중 해결되어 민원을 종결하고자 한다.

11 북구 ○○동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산책로 정비 요청

민원표시/의결일자 2023-고-0085 북구 ○○동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산책로 정비 요청 / 2023. 12. 27.

신청인 / 피신청인 ○○○(울산 북구) / 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결정결과 조사중 해결(주심위원 : 박호수)

■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인은 북구 ○○동 ○○○-○번지 공원내 소나무 사이 산책로가 울퉁불퉁하여 장애인 전동 휠체어 이동이 어려워 불편하므로, 장애인 휠체어 이용이 원활한 산책로로 정비를 요청함

■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요청한 A구간은<그림3. 이 민원 세부내용> 현재 진행중인 “2023년 하반기 도시숲 관리사업”을 통해 판석 포장을 코르크 포장으로 변경 시공할 예정이므로, 추후 장애인 휠체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B구간의 전체 정비는 상기 사업에 미포함된 사항으로 현재 사업비가 부족하여 향후 사업비 확보시 검토 가능함

■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관련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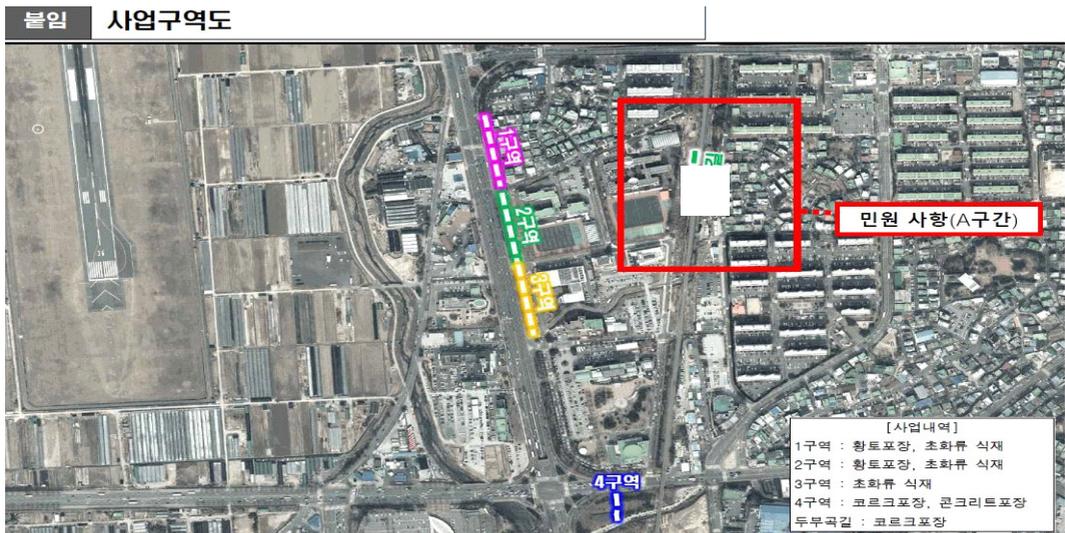
- 사업명 : 2023년 하반기 도시숲 관리사업
- 사업기간 : 2023. ○○. ~ 2024. ○.
- 총사업비 : ○○○,○○○천원
- 주요내용 : 도시숲(녹지) 내 관리사업을 통한 주민 생활 환경 개선

나. 이 민원 관련 구간 추진 상황

- 2023. ○○. ○○. : 고충민원 현장 확인(시고위, 신청인)
- (민원내용) 북구 ○○동 ○○○-○번지 일원 내 산책로 바닥 포장·지장물 정비 및 진입 경사로 통로 확보 요청

- 2023. 00. 00. : 민원인 통화(민원 관련 안내 통화)
 - (주요내용) 고충을 호소한 A구간은 현재 진행중인 2023년 하반기 도시숲 관리사업을 통해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B구간 전체 정비는 사업비 확보시 검토하여 민원인의 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음을 안내함
- 2023. 00. 00. ~ 2024. 0. 0. : 2023년 하반기 도시숲 관리사업 공사

☒ 복구 하반기 도시숲 관리사업계획



붙임 | 현장사진 및 사업계획도



📷 A구간 공사 중 사진



쟁점

- 가. 북구 〇〇동 〇〇〇-〇번지 일원 공원 내 산책로 정비 가능 여부
- 나. 공원내 산책로 지장물 정비 및 진입 경사로 통로 확보 가능 여부

이 민원 세부내용



통행로 내 지장수목 정비



진입로 확보(주차차단봉)

■ 조사자의 의견

가. 신청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동 ○○○-○번지 ○○○길 옆 공원(완충녹지) 내 산책로에 산책인과 장애인 전동 휠체어 이용이 원활하도록 포장 변경, 수목 정비 등을 통하여 진입로 및 통로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나. 2023. ○○. ○○. 신청인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바, 일부 구간<그림3. 이 민원 세부내용(B 구간)>은 코르크 포장이 되어 있어 통행이 원활하고, 일부 구간(약 80m)<그림3. 이 민원 세부내용(A구간)>은 판석으로 되어 있어 전동 휠체어 등 산책인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고, 일부 구간은 산책로 주변에 기울어진 나무가 있어 사실상 통행 불편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민원 구간의 포장 변경 및 수목 정비를 위해 피신청인과 협의한 바, 피신청인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 ○○. ○○일 자로 약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2023년도 하반기 도시숲 관리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계획에는 A구간 산책로 마감을 변경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신청인의 고충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 결론 : 조사중 해결

신청인의 고충은 피신청인의 “2023년도 하반기 도시숲 관리사업”에 반영된 공원 내 산책로 정비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이 민원을 조사중 해결로 종결하고자 한다.

202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

발행일	2024년 4월
발행처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http://www.ulsan.go.kr
편집	울산광역시 권익인권담당관(052.229.3931~4)
디자인·인쇄	인쇄박사 052.224.5100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울산광역시에 있습니다. <비매품>